국제협력동향

2005. 3

한국국제협력단

| 목 차 |

Ⅰ 논단

원조조정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 ····· 11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 원조조화, 일치, 개발결과 관리 논의동향 ····· 35
 -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에 관한 포럼결과 ····· 63

2. 공여국 원조동향
 - 이태리 원조현황 ····· 66
 - 미국 USAID의 과테말라 원조동향 ····· 81
 - 대페루 원조동향 ····· 87
 - 대스리랑카 원조동향 ····· 94
 - 쓰나미 재난복구지원 동향 ····· 96

3. 수원국 원조동향
 - 필리핀 천년개발목표 진전보고 ····· 104
 - 베트남 원조동향 ····· 107
 - 원조공여국 회의결과(베트남, 중국, 인니, 필리핀) ····· 117

Ⅲ 기타

1. 지역연구 : 인도네시아 ····· 147
2. 개발 NGO 소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173

Ⅰ. 논단

원조조정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

장현식 (KOICA 협력정책반장)

I. 서 론

개발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도국 정부나 조직,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조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도국민들은 자신들의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여국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여국들의 수원국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 절차, 예산, 시기 및 경쟁심,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 또한 수원국의 공여국과의 조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1]. 현재 많은 원조기관들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인의식과 참여에 기초하여 수원국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기 위해 원조조정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선진 원조기관들은 수원국에 거주하는 자체 해외사무소에 좀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원조조정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수원국들은 강도는 다르지만 외부의 원조기관들과 자신들의 전략수립 및 조정과정에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한다. 원조조정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개도국 스스로 자신들의 개발전략 및 적절한 사업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Stephen Browne는 원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기술적인 면, 재정적인 면, 그리고 인적자원적인 측면으로 대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Univ. Pres, 1990), p139.

2) Hyun-sik Chang, Arthur M. Fell and Michael Laird(1999),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OECD, p.30

위에서 언급한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조정 외에도 원조조정의 측면을 공여국내 ODA관련 기관간의 일관성제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개 공여국에서 ODA담당기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조정이 용이하다고 한다. 이는 ODA 관련 부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내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 현재 선진국 원조기관들은 국내조정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원조조정 체제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OECD/DAC는 파트너쉽과 원조조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1960년 창설 시부터 원조조정을 주요한 업무로 여겨 왔으며, 원조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조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수원국에 있다고 명시하였다[3]. 또한 '98년에는 관련 주제에 관한 포럼을 주최하여 파트너쉽에 관한 11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으며, 2003년에는 DAC의 원조관행 특별작업반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및 효과적 원조집행을 위한 로마선언을 마련하였다[4].

본 소고에서는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원조조정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또한 현행 선진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조정체계를 비교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의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원조조정의 개념과 종류

원조조정은 원조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각 관련 기관간에 원조정책, 전략 및 특정사업에 관해 사전에 조율을 실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크게 국내적 조정과 국제적 조정으로 대분할 수 있다. 국내적 조정은 국내 관련기관간의 업무조정을 의미하는 반면, 국제적 조정은 아국과 타 국가간의 조정이라 할 수 있는데, 동 조정은 정책수준별로 다시 정책대화(Joint Consultation), 사업별 조정(Concertation) 및 프로젝트(Operational Coordination) 조정으로 대분할 수 있다[5].

1. 국내적 조정

현재 각 공여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국내 원조정책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ODA 담당부처가 자신의 원조방법 및 수단을 고집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현재 원조사업에 대한 조정은 OECD/DAC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DAC회원국중 15개국이 포함된 EU회원국들이 가장 활발하게 원조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원조기관들도 양자간 원조기관과의 원조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원조실시기관간의 원조 조정은 대개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많이 존재할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 진다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이며, 미국, 호주, 카나다와 같이 대다수의 원조업무를 외무성이나 외무성의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이며 이때 대내조정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원조담당부처가 많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내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 원조 담당부처가 많을 경우, 각료회의와 같은 가장 고위급레벨에서 원조사업에 관한 조정이 실시되지만 사업 성격 및 절차의 차이 때문에 쉽게 의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7].

본고에서는 미국, 프랑스, 덴마크,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경우[8]

미국의 경우 '98년 외무 개혁과 구조조정 법안의 실행에 따라,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이 원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과 경제 원조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국무부와 USAID 두 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향상하기 위한 단계가 (정책, 프로그램, 예산, 실행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주제별(아프가니스탄, 부채, 재난 구호 등)로는 수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실용적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획, 예산조정, 혹은 특정 기관간 실행 협정 등에 대한 빈번한 협력으로 인해 목표대상 기관들이 최소한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의 단계가 미리 설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 기관들(관리 예산부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이 서로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비평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조정 기관들이 미국 정부의 기관간 개발 조정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상호적인 조

3) OECD/DAC,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Guiding Principles for Aid Coordin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p.25.

4) 로마선언은 "ownership, country by country approach, 협력수단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3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조 공여국들의 집행방식에 조화를 기함으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자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5) Browne, Stephen, "Foreign Aid in Practice"(New York Univ. Press, 1990), pp.137-138

6) 현재 원조사업에 대한 조정은 OECD/DAC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DAC회원국중 15개국이 포함된 EU회원국들이 가장 활발하게 원조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UN,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원조기관들도 양자간원조기관과의 원조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7)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 원조 담당부처가 많을 경우, 각료회의와 같은 가장 고위급레벨에서 원조사업에 관한 조정이 실시되지만 사업 성격 및 절차의 차이 때문에 쉽게 의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8) OECD(2002), DAC Peer Review of United States

정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회의의 안건이나 결과는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만 달려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사무적인 안건에만 집중하고, 개발 공동체의 비 공직 인사들은 초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가안보위원회는 행정부 전반에 걸쳐서 기관간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무를 가진다.

ODA 실시현장(수원국)에서의 ODA 실시기관간의 조정은 그 지역의 미 대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사관들은 "국가 팀(Country Team)" 구조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넓은 시야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한다. 지역의 상황이나 인력에 따라서, 국가팀은 분과조로 나뉘기도 하고, 임무수행계획에 따른 전략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한다.

나. 프랑스의 경우[9]

프랑스의 경우 범부처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범 부처간 국제개발협력 위원회(CICID: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담당하며 국무총리의 주최로 일년에 한번씩 회의가 열린다.

CICID에는 국제 협력의 임무를 맡은 모든 각료들과, 대통령 비서가 참여한다. 외무부와 재정경제산업부는 공동으로 위원회에게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임무만을 담당하는 전임직원을 배치하지는 않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자주 만나지는 않으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각 부처들이 협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CICID 회의 전에 범 부처간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위원회 자체는 이러한 조정의 결과를 비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절차의 평가나 조화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도 설립되었다.

CICID와는 상관없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정특성을 가진 구조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선연대기금(FSP: Priority Solidarity Fund)의 전략가이드 위원회는 프로젝트 위원회와 함께 범부처간 정책 관리를 촉진한다. 반면 외무부 및 재정경제산업부 대표, 국외영토 사무국, 의회, 경제와 재정 전문가로 지명된 인사, AFD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AFD의 '감독 이사회(Supervisory Board)'는 개발국(AFD)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C2D 프로그램(부채 감소와 개발에 대한 계약, C2D: Contracts for Dept Reduction and Development)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NGO와의 조정은 HCCI(국제협력을 위한 고위위원회: High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외에도, 다른 많은 기관에서 시민사회 기구들과의 조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DGCID 내에서는 '비정부협력과'가 시민사회의 파트너들과 프랑스 중앙정부 하위레벨 부처들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AFD역시 'Clup de OSI' 라고 불리는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코포니와 협력 국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개발 협력 위원회'라는 합작 협의 기관의 형태 안에서 시민 사회 기관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시민사회 기구의 대표와 개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포함된다.

9) OECD(2004), DAC Peer Review of France

다. 덴마크의 경우[10]

덴마크 개발협력의 특징은 중앙집권적이고 잘 짜여진 조직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점이다. 다른 DAC 회원국의 원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덴마크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덴마크의 정부가 거의 모든 ODA에 대한 책임 및 전략과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반면에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서 NGO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덴마크 정부 안에서 모든 리더쉽이나 운영은 외무부 내부의 세 부서 중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세 개의 주요 행정부서는 북 그룹(North Group), 남그룹(South Group), 덴마크 통상위원회(Danish Trade Council)이고, 이들 모두는 행정 서비스 사무국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

덴마크 개발협력의 주안점은 남그룹에 있고, 이 그룹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태평양과의 양자간, 다자간 개발협력을 담당한다. 남그룹은 외무부 장관에게 직접보고를 하는 장관급의 공무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으며, 두 명의 차관급이 전체적으로 양자, 다자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지역부서(남부 아프리카, 동서중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라틴아프리카와 북부 아프리카의 5개부서)와 각각의 대사관이 동시에 남그룹에서 원조 책임을 진다. 현재 덴마크는 원조의 책임을 현장으로 많이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부서의 직원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으로 업무를 전향하고, 기술고문서비스(TSA: Technical Advisory Services)팀에 속한 기술직 직원은 점차 각 대사관의 요구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라. 일본의 경우[11]

새로운 ODA 대강(大綱)은 'ODA에 관한 부처간 협의 포럼'을 활용하여 ODA 관련부처와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ODA에 관련된 기관간의 조정의 목적은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외무성에 ODA 관련 기구들을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배정되어 있지만, 경제통상산업성 또한 통상과 투자에 대한 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협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농림수산성은 많은 ODA관련 부처의 하나로서 국내의 식량과 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개발운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림수산성은 개발 프로젝트와 국내 정책의 이익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는데, 주로 국내 정책의 이익에 주안점을 둔다.

10) OECD(2003), DAC Peer Review of Denmark
11) OECD(2004), DAC Peer Review of Japan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세 부처 중에서 외무성이 핵심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고, JICA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무 장관은, 각 부서의 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외무관련 사무국의 운영책임을 지고 있다. 경제협력국(ECB: Economic Co-operation Bureau), 다자협력과(Multilateral Cooperation Department), 경제국(Economic Affairs Bureau), 지역별 사무국이 개발관련 운영의 책임을 진다.

경제협력국(ECB)은 ODA 정책형성과 ODA 예산절차에 있어서 기구간 조정 등을 담당한다. 최근 ECB의 개발기관 간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있었으나, 인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ECB 운영은 원조 방법 (무상원조, 기술협력, 차관와 개발협력 부서)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강조는, 외무성 지역별 사무소-운영기관-현장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적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JICA와 JBIC는 국가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ECB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많은 공공 기관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본 개발협력 시스템 안에서 관리조직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다. 도쿄내의 기관에서 조정기구가 거의 모든 행정 수준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정부 내의 새롭고 야심찬 조정 체계는 사무국과 부서 차원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며, 외무성은 최근 다른 ODA 부서들과의 협력도 공고히 하였다.

〈범부처간 조정〉

기 구	책 임	참 여 자	비 고
해외경제협력관련 각료회의	기초 경제개발정책	관방장관이 의장, 8개의 경제 협력관련 부처 장관 참여	2000년 12월 설립 필요할 때 회의개최
ODA에 대한 범부처간 회의	ODA에 관한 주요 이슈들 논의	ODA사무국의 장, 내각, 외무성 장관이 의장	2000년 3월 설립 필요할 때 회의개최
ODA에 대한 범부처간 회의를 위한 사무국 회의	범부처간 회의를 위해 ODA 제안 협상	12개의 ODA 부서장, 외무성 장관이 의장	범부처간 회의보다 자주 회의개최
기술협력 전문가 회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견해를 교환, 협력	12개의 평가 부서의 장, 옵서버 : 학자, 전문가, NGO	1997년 4월 설립
ODA 평가 전문가 회의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평가결과 검토	외무성, 재무성, 경제통산성, JICA, JBIC, 일본무역보험 재정협력 부서의 장	2001년 7월 설립
재정협력 전문가회의	무상원조, 차관, OOF, 수출차관에 대한 논의 및 조정	외무성 장관이 의장, 시민사회 참여	2002년 11월 설립
전체적 ODA 전략이사회	ODA 전략 이슈에 대한 외무성 공공 자문 위원회	외무성 장관이 의장, 부대신, 시민사회 참여	2002년 6월설립 목표대상 국가 결정의 역할

출처 : OECD/DAC Peer Review of Japan, p50

수원국에서의 ODA 담당기관간의 조정으로는 모든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ODA 타스크포스"를 모든 대사관이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 임무조직에서는 전문가, NGO, 현장에서의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적인 역할은 정보 수집, 전략 개발, 지역의 정부와의 협상, 다른 공여국과의 협상이다. JBIC나 JICA와 같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는 현장으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맥락에서, 일본의 원조 조정 절차의 분권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마. 우리의 경우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외원조사업 관련 기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회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무상 원조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기구가 없는 실정이다[12]. 그 결과, ODA 정책목표와 기본 방침의 불명확성이 도출되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13].

반면에 ODA 관련법을 제정하여 원활한 원조조정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외교부는 2004년 유.무상원조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조자 하였으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일본처럼 무상과 유상원조,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실시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조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4]. 특히 유·무상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부와 재경부간에 원조관련 조정이 사업 성격의 차이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상으로 유·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들간의 ODA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적 조정

가. 정책대화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정책대화는 다자간 조정체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잘 알려진 다자간 조정체계는 매년 혹은 반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World Bank의 CG(Consultative Group)와 UNDP의 Round Table이라 할 수 있다. 이 포럼은 수원국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많은 회의 결과를 잘 수

12)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KOICA 이사회가 있지만 유.무상 원조계획, 유.무상 원조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 유.무상 원조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2004, 12)

13) 현재 무상원조는 매년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유상원조는 지원 guideline하에 사업별로 심사, 추진여부가 결정되어 유.무상간 상호 연계성과 원조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14) Kim, Sang-Tae & Seddon, David, ODA Policy and Practice: The Republic of Korea (2004) pp.347-348

용하고 있다. 또 다른 조정체계를 살펴보면 특정지역을 위한 SPA(Special Programm of Assistance for Africa), 그리고 특정분야를 위한 CGIAR(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를 들 수 있다. 반면 다자간 원조조정체계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OECD/DAC는 정책적인 면에서 사업에 관한 회원국간의 원조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U(European Union)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원조 정책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1) World Bank Consultative Group(CG) Meetings

World Bank는 1963년부터 CG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동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여국과 개도국간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CG회의를 통해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확인한 재정적 규모를 감당하도록 약속을 받아내고, 수원국의 일반적인 경제 및 개발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취급되는 의제는 분야별 계획 그리고 참여적 개발과 좋은 통치(PDGG)에 관련된 것이다.

CG회의는 World Bank에서 이끌어 가지만, 가끔씩 관련 수원국의 책임자가 담당하기도 하며, 대부분 회의는 파리에 있는 World Bank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회의는 위싱턴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국가를 위한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수원국에서 더 많이 개최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수원국의 국회의원, 민간분야, 민간기업 및 NGO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UNDP Round Table (RT)

최빈국과의 정책대화 및 재원조달을 위한 UNDP의 주요한 수단으로 Round Table을 들 수 있다. 동 회의는 '7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UNDP의 협조로 수원국들의 노력으로 확대발전 되었다. RT는 World Bank의 CG회의와는 달리 수원국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반면에 UNDP는 동 회의가 결과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각 공여국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우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RT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개최장소는 제네바이고, 공여국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도움이 요구되는 장기적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분야별 RT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수원국 자체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최근에 RT에 민간기업 및 NGO까지 참여폭이 확대되었으며, 재원조달에 더 많은 강조점을 주고 있다.

3) SPA(Special Programme of Assistance for Africa)

World Bank의 SPA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sub-Sahara 아프리카 지역에의 원조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럼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동 회의의 목표는 경제개혁을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재원조달과 공여국 원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SPA 의제는 경제개혁의 개발맥락 속에 이를 지지하는 특별한 주제를 위한 작업반의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다. SPA는 또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원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고안, 시간별 절차 그리고 실행 방법을 알고자 한다.

4) CGIAR(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은 '71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여국과 개도국들의 모든 공적, 민간 조직간의 비공식적 결합체라 할 수 있다. CGIAR은 16개의 국제 농업연구센타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센타들은 농업, 식량정책, 천연자원관리에 관한 전략 및 응용 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있다. CGIAR의 목표는 이와 같은 분야의 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적 농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다. 현재 CGIAR에는 FAO, UNDP, UNEP 및 World Bank등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5) OECD/DAC

OECD/DAC은 양자간 회원국들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원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DAC는 다음 4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권위를 가진 정책지침서를 채택하고, 둘째, 회원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동료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셋째,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회원국들에게 관심이 있는 정책 및 관리적인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도국에게 공여되는 ODA나 다른 재원에 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6) EU(European Union)

현재 22개 DAC회원국 중 15개 회원국(그리스포함)이 EU의 회원국이며, EU의 마스트리히조약(1993)은 EU Commission과 EU 회원국들이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에 대해 조정할 것과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간 자문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 현재 EU Commission과 회원국간에 정책 및 실시 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조조정은 여러 레벨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국에 거주하는 자국의 해외사무소간, 회원국 정부의 원조기관간, 그리고 원조담당 장관간의 대화 등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다.

나. 사업별 조정 및 프로젝트 조정

사업별 조정이나 프로젝트 조정은 정책대화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정을 의미하며, 현재 공여국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상 여러 형태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1) 협조융자(Co-financing)

협조융자는 양자 혹은 다자 공여국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파이낸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각 공여국들이 자신들의 파이낸싱에 대해 통제권한을 가진다. 또한 공여국들은 World Bank와 협조융자를 하기도 한다. 협조융자의 장점은 첫째, 재원의 고갈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둘째, 개도국들에게 가능한 한 다양한 재정지원기관에 접할 수 있어 개발전략 상 우선적인 순위를 갖는 사업을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셋째, 공여국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과 함께 참가토록 함으로써 개도국에 제공하는 차관에 따르는 위험을 줄 일 수 있다[15].

2) 합동융자(Joint financing)

여러 양자기관이나 혹은 다자간 원조기관들이 함께 재원을 합쳐서 파이낸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 기관이 된다. 동 융자의 장점으로는 첫째, 한 종류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보다 총 지원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양허적 조건의 융자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개도국에게 적당하며, 셋째, 시장의 재정조건보다 유리하며, 넷째, 일부는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

둘 이상의 공여국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협력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공여국들은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공여국은 인프라를 제공하며, 다른 공여국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Multi-bi Project

공여국이 다자간 원조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공여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 지원뿐이며, 다자간 원조기관의 사업실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KOICA에서 UNDP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할 때, 이때 KOICA는 단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모든 사업 실시는 UNDP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15) 김석호, "개발협력의 조정에 관한 연구" pp.156-157, 국제협력연구 1호(한국국제협력단, 1993)

5) Associate Experts

공여국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다자간 원조기관에 파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KOICA에서 ESCAP에 행정경비를 포함한 제비용을 제공하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6) Integrated Experts

어떤 공여국의 전문가가 다른 공여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7) Ad hoc Collaboration

정부간 혹은 지역간 협력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8) 공여국 그룹(Donor Group)

노르딕국가(덴마크, 핀란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스웨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으로 재정적 지원(Nordic Development Fund)을 실시한다. 또한 소위 'Like-minded Group'(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the Netherland, Norway, Sweden)은 개발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에 대해 토의한다.

9) 합동 평가(Joint Evaluation)

둘 이상의 공여국 혹은 다자간 원조기관들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III. 향후 추진 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의 향후 바람직한 조정방향을 살펴보고자한다.

1. 국내적 조정

국내조정은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ODA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적인 통합을 실시하거나, 둘째, 관련기관간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법적인 측면에서 ODA정책의 정책방향과 목표설정이 포함된 ODA관련 전략틀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조정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DA 담당기관의 통합

먼저 ODA 담당기관간의 조직적 통합방안을 살펴보면 우리와 원조조직 및 형태가 유사한 일본이 유 · 무상 원조조직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원조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유 · 무상 원조조직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점을 고려시 향후에 무 · 유상을 실시하는 기관간의 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합 방안으로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가 향후 개발협력의 나아갈 방향인 바 통합된 원조정책의 수립은 외교부, 그리고 집행기관은 KOICA로 일원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 정책대화 강화

우리의 경우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정책수립, 집행은 KOICA가 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의 경우 정책수립은 재경부, 집행은 수출입은행으로 이원화되어있다. 또한 부처간의 ODA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및 통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합된 원조조직을 가지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합 전이라도 무.유상 원조실시 정책상의 조정 및 타 정책과 원조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회의는 참석범위별로 고위급과 실무급으로 나누고, 고위급에는 원조의 목표, ODA규모 확대 등 전략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실무급에서는 국별배분 방안, 유.무상연계 방안 등 좀더 실시적인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반면 수원국에서의 ODA 관련부처간 정책대화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체제를 고려시 관련 회의를 우리 대사관에서 주관하고 KOICA, KOTRA, 수출입은행, 개발 NGO 등이 참석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KOICA도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 ODA 전략틀 수립

또 다른 방안으로는 ODA관련 전략틀을 제정하여 원활한 원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선진 원조국들은 자체의 대외원조 전략틀 (strategic framework)인 원조헌장을 가지고 있다. 원조헌장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원조실시기관이 많을 경우 각 부처의 원조정책 수립 및 조정시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수원국 및 타 공여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나아가야 할 원조방향 및 분야를 알게 하여 이들과의 정책대화 및 원조조정회의 시 요구분야와 제공가능 분야간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형태로는 의회에서 비준되어 법으로 존재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원조헌장을 선언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원조집행 부처의 내부 정책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원조헌장에 자신들의 대외원조관련 기본목표, 세부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16]. 먼저 의회에서 비준하여 법으로 정해진 경우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강하며, 개도국에서 자국의 원조에 대한 의지표명, 또한 법으로 원조의 목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수립되기 때문에 원조정책의 일관성,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조의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원조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정부차원의 원조헌장 선언의 경우 정부의 원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첫 번째 유형보다 원조정책의 신축적인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 유형의 경우, 정부 및 의회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에 맞게 원조정책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외원조정책에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의 경우 원조헌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 국회 및 국민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사태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헌장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원조의 기본목표와 원조규모, 국별배분, 원조수단 및 분야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 방향이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적 조정

가. 정책대화

우리나라는 수원국과의 정책조정을 위해 원조공여국 회의[17]에 참석하고 있으며, 공여국과는 원조정책 협의회[18]를 개최하여 원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개 World Bank나 UN이 주최하는 다자간회의 형식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와 수원국간의 양자간 경제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원조정책에 관한 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원조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 · 다자간 원조기관에서 개최하는 수원국 원조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9].

16) 현재 법의 형태로 전략적 틀을 가진 나라는 미국,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들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으로 선언한 국가는 일본, 카나다, 영국 등이고, 특별한 형태가 없이 원조기관내의 내부정책의 형태를 가진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을 들 수 있다.

17)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12개국에 대한 원조공여국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의는 다자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8) 원조정책 협의회는 일본과 1-2년을 주기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스웨덴과는 2년주기로, 카나다와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 다른 수원국과의 조정방안으로는 동 국가에 대한 국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ming)을 실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국별 원조계획은 해당 수원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에 가장 적합한 중.장기적 원조정책의 수립 및 실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각 공여국은 기존의 프로젝트별 원조를 지양하고, 국별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0]. OECD/DAC회원국들의 국별 원조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수원국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심층분석, 관련 국가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개발 우선순위 파악, 이를 근거로 한 자국의 원조 전략 및 문제점, 타 공여국의 원조공여 실태분석이며, 차이점으로는 어떤 회원국은 국별계획에 중.장기적 구체화된 원조사업,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원조규모를 명시하기도 하며, 어떤 회원국들은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기 전 수원국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21].

KOICA의 경우 ODA예산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 프로젝트 원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원조 등 비프로젝트 원조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점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를 통해 수원국과의 원조정책 협의시 수원국의 필요분야와 함께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도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수요중심방식(Demand driven)이 아닌 협의방식(Consultative basis) 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원조기관간의 협의 강화

타 공여기관과의 정책대화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 방안은 크게 정책레벨과 사업레벨로 나눌 수 있다. 정책별로는 공여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이나 스웨덴과는 정기적으로, 카나다와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회의에서는 KOICA와 JICA간의 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되기도 하였다[22].

19) DAC회원국들은 현재 개도국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비조건화(untied)비율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비조건화 하려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공여국들이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젝트사업이 공여국자체 기업이 아닌 국제입찰에 의해서 결정됨을 의미하며, 특히 해외건설, 토목사업에서 높은 노하우 및 기술을 지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0) '90년대 이전의 원조전략은 프로젝트형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분야별로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실시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문제점으로는 각각의 프로젝트가 종합적인 국별개발계획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90년도 이후에는 각 공여국은 국별원조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수원국에 대한 개개별 프로젝트가 종합 개발계획과 연계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1) 스위스의 경우 의회에서 4년마다 원조항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스위스는 원조항목을 만들기 전 수원국과의 원조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반영케 하고 있다.

22) 2004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원조정책협의회에서는 KOICA와 JICA간 공동연수의 지속적 추진 및 확충, 사업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및 양 기관간 직무연수 상호추진이 합의되었다.

사업별로는 공여국간 원조협의회에 참석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혹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동평가의 경우 평가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다자간 원조기관이나 양자간 원조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평가회의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자간 원조기관의 경우 평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세계은행이나 UNDP, 양자간 원조기관으로는 우리나라와 원조형태 및 수단이 유사한 일본과의 협력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또 다른 협력방안으로는 KOICA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강화되어 수원국에 파견된 공여국들의 공식모임인 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정책대화를 강화하거나, 또는 봉사단 사업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단원과의 network 강화, 공동 프로젝트 실시,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게 되면 공여국간의 조정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여국의 원조사업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OECD/DAC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회원국간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국제협력의 흐름을 잘 관찰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도 우리의 효율적인 원조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23].

IV. 결론

이번 인도네시아 해일사태는 원조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수원국정부에서 ownership을 가지고 조정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공여국과 공여기관, 국내외 NGO, 시민단체들이 원조공여 의사를 밝혔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여되는 원조액과 수단을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는 가에 원조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 사태 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원조공여국간의 조정은 UN이 맡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자간 및 양자간 기관간의 조정, 또한 수원국과의 조정이다.

원조조정은 원조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DAC는 원조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조실시에 있어서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제원칙을 만들고, 정책조화성에 대한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조조정이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소고는 원조조정의 개념, 종류 및 선진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의 현

23) 장현식(2000), 아국의 OECD/DAC 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pp.41-42

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국내적 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ODA 수행기관의 통합, ODA 담당기관간의 정책대화 강화, 그리고 ODA 관련 원조헌장(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제적 조정으로는 UN이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원조공여국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아니면 원조 공여기관간 양자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동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시기에 OECD/DAC에 가입하여 회원국간 원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국과의 양자간 협의도 강화하여 수요중심이 아닌 협의중심적인 원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 Country Programming을 실시하여 수원국별 차별화 원조방식을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 OECD/DAC 개도국과의 원조조정(Aid-C●●rdinati●n) 원칙 ■■

1. 동 원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활용되어야함. 그리고 이 원리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국제적 원조 조정이 필요한 개도국에게 적용되어야 함. DAC 회원국은 원조정책과 우선순위조정의 모든 책임과 원조조정 업무는 개도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선진국의 협력으로 개도국이 투자와 지출을 위한 정책의 향상과 평가력의 향상을 도와야 함.

2. 개도국은 그들의 자체 및 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조정된 사용을 위해 잘 고안된 정책과 신중하게 심사된 투자 및 지출 프로그램이 요구됨
3. DAC회원국은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체계화에 있어서 World Bank/ IMF의 중요성을 인지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최근의 방향을 환영함. 그들은 또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형평과 소득분배문제를 고려해야하며, 교육, 보건, 인구 및 환경과 같은 인력 관련 주제가 예산 배분 및 전략수립에 있어서 고려되기를 원함.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민간자본이 개도국으로 유입되기 양호한 조건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인식함
4. DAC회원국은 개도국이 스스로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고안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분석적 관리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진원조기관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회원국들은 개도국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고비용인 분석적 준비 작업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양자간 원조 기관들이 더욱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함. 다자간 원조기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양자간 기구도 그들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5. 회원국들은 신중하게 심사되었고 생산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이 원리를 계속 실시함의 필요성을 강조. 이 프로그램이 국제재정기관의 충고와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되고 논의될 경우 원조배분에 있어서 유용한 기조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의 정기적 심사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교환과 진행사항의 점검기회를 제공. 이것은 또한 원조조정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6. 회원국들은 현재 정책향상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에게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적 도움의

■■ 참고 : OECD/DAC 개도국과의 원조조정(Aid-C●●rdinati●n) 원칙 ■■

중요성을 인지함. 이것은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분야의 재정적 수요를 위해 빠르게 제공될 수 있는 기금마련을 필요로 함. 공여국들이 개도국에게 중.장기자금 제공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그들의 구조조정노력을 가속화함

7.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재활과 기존의 역량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시보다는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함. 회원국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와 정비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지금의 필요성을 인지함.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개도국의 자조능력 향상에 대해 서로 합의하면서 시행해야 함
8.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분야별 프로그램의 협조융자에 있어서 많은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특별한 장점이 있음을 인지. 이와 같은 경우 양자간기구나 다자간기구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에 의해 평가 작업이 주도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됨
9. 수출신용은 특별한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원조의 목적과 투자프로그램이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개발 원칙이 지켜져야 함
10. 외채에 대한 의무는 개도국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침. 파리클럽이 주도하는 빚의 경감에 있어서 개도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과 요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원조조정의 향상된 기획을 위한 후속조치들

– 공여국, 수원국, 국제 기구들간의 협력

11. 회원국들은 진정한 의견일치에 기초하여 시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 하기 위한 국제적 원조조정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 다자간 원조기구 및 다른 원조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12. 회원국은 수원국 정부와 국제기구간의 밀접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양 측이 정책 및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공여국들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함
13. 공여국간 그리고 공여국 및 개도국간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모든 그리고 솔직한 정보교환이 성공적인 원조조정이나 효율적인 원조집행의 필수적임을 인지함

◆ 협의그룹과 라운드 테이블

(Consultative Groups and Round Tables: CGRT)

14. 회원국들은 CGRT의 최근의 향상을 치하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원조기관이 다음의 방향으로 추구하기를 원함
15. 가능한 지역별 그룹을 이용하여 CGRT전의 상담회의에 양자간 원조기관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함. 이들의 참석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일치를 끌어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임
16. 핵심 사업이나 정책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CG의 형태를 수정함. 이러한 노력은 또한, 분야별 정책과 투자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수원국의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수원국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원조의 의미에 관한 논의하고, 수원국의 무역추세 및 채무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개도국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고려하기 위함임
17. 재정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것으로 기술 원조를 강조하며 기술원조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판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고양함
18. CGRT에서 결정된 결론을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으로 기록할 것, 그리고 개도국의 조정에 참여하는 그룹을 포함하여 이에 관심을 가진 조직이 편람가능하게 함
19. CGRT에서 도출되는 행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실현하며, 특히 분야 및 개도국 내부에서의 자체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정책개혁의지의 천명과 원조제공에 대한 공여국의 명확한 의도가 나타나야함
20. 회원국들은 특히 UNDP가 최근에 주도한 RT 강화에 고무를 받음.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 권장, 정책개혁의 강조, UNDP 인력 강화, 개도국 및 참석자의 선택에 효율적인 접근, 분석력 개선과 개도국 내 후속조치, World Bank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RT 준비, 개도국 및 공여국의 적절한 대표의 선정 장려, UNDP에 의한 회의 주도 등을 통해서, UNDP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
21. 또한 RT의 두번째 단계인 당사자급의 회의를 강화하여 개도국 정부가 자신들의 조정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천명할 기회, 선진국이 그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는 것을 공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참고 : OECD/DAC 개도국과의 원조조정(Aid-C●●rdinati●n) 원칙 ■■

◆ 지방별,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22. 회원국들은 개도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단체간의 강력한 연계를 설치하기위해 또한 이들 간의 원조 조정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 중앙조정장치는 지방/분야별로 담당할 이슈를 구별함으로써 지방 및 분야간의 조정에 주도권을 주어야 함. 정책대화는 지방 및 분야별 원조조정에 본질적인 요소이여야 하며, 중앙 정부는 이러한 절차의 중심에 있어야 함. 개도국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 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분야별 원조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기획담당직원의 참여가 중요함
23. 최근에 수원국내에서 원조조정의 확대가 이뤄짐. 이를 통해 정보교환, 중복프로젝트의 회피, 그리고 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짐. 그러나 신중하게 심사되고 검토된 투자사업 그리고 분야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향상되어야할 여지가 남아있음. 회원국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효율적 감독, 조정기구의 설립을 환영함. 그리고 이와 같은 수원국내의 조정기구는 분명한 설립이유와 근거가 필요함
24. 회원국들은 신중하게 심사를 받은 투자 및 지출 사업에의 지지와 준비, 자본과 경상비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예상을 고려하여 개선된 분야별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효율성을 고양하고 절차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원조를 분야별로 분류해야할 필요성을 강조. 협조융자장치가 이를 달성하기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5. 회원국들은 지역발전은행이 정책대화와 특히 분야별 차원에서의 개혁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이 은행들이 거시적 경제 정책틀 안에서 UNDP나 World Bank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
26. 아프리카에서 CILSS/Club du Sahel 과 SADCC와의 틀 안에서 지역 맥락에서의 원조 수요을 고려하여 지역협력을 장려하였던 것처럼, 조정의 지역적 접근법은 국별조정 과정에 중요한 보완을 할 수 있음

◆ 조직별 그리고 직원별

27.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행정능력의 과부하를 피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함. 원조의 집행을 능률화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수원국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여러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원국의 원조수행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의 기회를 찾고자함. 이것은 의회 및 행정부에 의한 요구사항의 수정을 수반하기도 함
28. 회원국은 이 과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수원국에서의 정책대화 및 원조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수원국 내에 공여국 원조기관에서 파견된 정책전문 직원의 참여가 필요. 이를 위해 원조기관들에게 있어서 현지에 자체직원들의 증원, 직원들의 재훈련 및 직원 충원 정책 조정, 민간 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의미함
29. 회원국들은 수원국이 스스로 효율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시 및 그들의 발전과정의 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함. 능력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존재는 효율적인 정책틀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야별, 지방단체별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제도적 발전노력이 필요함. 제도발전을 위해 민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민간분야의 잠재력과 능력도 고려되어야 함

◆ 실시 및 후속조치

30.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정한 원칙을 실시하기위해 자체의 조직 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실시해야함

■■ 참고 문헌 ■■

· 권율(199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연구원

· 장현식(1999), OECD/DAC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장현식(2000), 아국의 OECD/DAC 가입 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한국국제협력단(1999), 21세기 한국개발 NGO의 활동 전략

· 한국국제협력단(1999), 국제협력의 범세계적 이슈와 우리의 정책방향

· 한국국제협력단(2001), 한국국제협력단 10년(1991-2000)

· UNDP 한국대표부(1998), 빈곤퇴치

· Browne, Stephen(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hang, Hyun-sik, Arthur M. Fell and Michael Laird(1999),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 AC Members,* OECD

· Kim, Sang-tae & Seddon, David, ODA Policy and Practice: The Republic of Korea (200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2002),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1992),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OECD(2002), DAC Peer Review of United States

OECD(2003), DAC Peer Review of Denmark

OECD(2004), DAC Peer Review of France

OECD(2004), DAC Peer Review of Japan

· UNDP(1998), *UNDP Poverty Report 1998: Overcoming Human Poverty,* New York,

· UNDP(1999),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DP(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arthscan

· World Bank(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University Press

Ⅱ. 개발협력동향

원조조화, 일치, 개발결과 관리 논의동향[23]

Ⅰ. 주요 개념

① 원조조화(harmonisation) : 공여국 – 공여국간 조화

· 원조공여국간 상이한 원조집행방식이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집행방식에 조화(조율)를 기함으로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자는 개념

②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 공여국은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할 수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수원국은 실행가능한 빈곤감소전략(PRS) 수립등 개발계획수립관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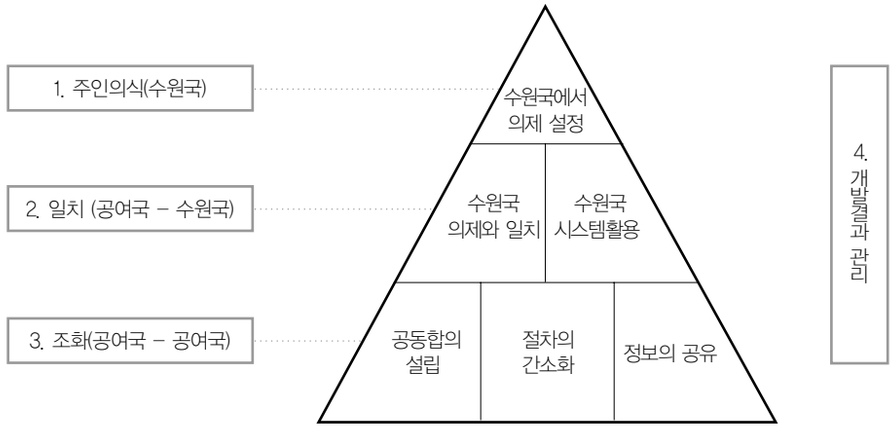
③ 원조일치(alignment) : 공여국 – 수원국간 조화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④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수원국은 개발전략 수립과 개발과정 전 단계에서 개발결과 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공여국들은 상호

23) '원조조화, 일치, 개발결과관리'는 2005.2.28~3.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OECD 회원국 및 개도국 등 91개국 대표, 26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 포럼'의 주요의제임.



공조하여, 수원국의 전략에 기초한 개발원조 제공에 노력해야 함

· 수원국이 우선 개발결과 달성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면, 공여국은 그에 맞추어서 수원국측 전략에 지원전략을 일치시키고 수원국의 체제에 의존하여 원조를 제공함. 이 단계에서 역량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래 피라밋의 하단 부분관련, 공여국들은 공통의 조치마련, 원조절차 간소화, 정보공유 등 조치를 통해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를 추진함

· 원조의 모든 단계에서 개발결과의 관리는 필수적임. 수원국의 개발 전략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이라는 달성목표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함

Ⅱ. 원조조화관련 추진 경과

1. 배경

· 1990년대 후반, 막대한 개발원조비용을 인식한 국제개발공동체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 공여기관과 수원국 측은 원조정책과 절차를 조화(harmonise)시키기 위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모범관행원칙(good practice standards or principles)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3월)[24]와 로마선언(2003.2월)을 통해 개발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하기로 함

· 아울러, 국제개발공동체는 MDGs 달성을 위해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에 주목

 – 개발결과 관리는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impact) 등을 목표치까지 보다 잘 달성토록 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전략(management strategies)을 의미

 – 이를 위해 개발활동 주체들은 각자가 기울이는 노력의 총체적 파급효과(collective impact)에 주목하고, 원조지원의 상호공조, 원조조화 및 개발원조기관 내에 개발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노력

· 이와 관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이 다음과 같이 개최됨

 – 제1차 원조조화 고위급포럼(2003년 2월, 로마) : 국가차원의 모범관행 적용 계획 마련

 – 제2차 개발결과관리 라운드테이블(2004년 2월, 모로코 마라케시) : 개발결과관리 원칙에 관해 상호 이해 도출 및 향후 조치 논의

 – 제2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HLF Ⅱ, 2005년 3월, 프랑스 파리) : 로마 선언과 마라케시 메모랜덤에서 행한 공약 이행 점검. 원조조화와 일치 및 개발결과 관리에 대한 발전상을 평가하고 그 실행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공약 제시

2.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 2003.2월 로마에서 개최된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로마선언을 채택함

 – 원조공여국의 정책 · 절차 · 관행을 수원국 시스템과 조화

 – 공여국의 대수원국 요구사항 간소화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

 – 수원국의 원조조정 ownership 강화 및 능력배양 지원

 – 빈곤감소전략(PRS) 등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원조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대한 원조공여국들의 기여

 – ICT 활용 및 동료간 압력을 통한 원조조화 촉진 등

· DAC 산하 '원조의 효율성 및 공여국 관행에 관한 실무그룹(WP-EFF)'[25] 의 '원조조화와 일치에 관한 Task Team'[26]이 로마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조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점(focul point)으로 활동하고 있음

24) 2002.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 · 선진국간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과 파트너쉽(partnership) 구축이 중요하다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합의. 동 컨센서스는 개도국은 ownership에 의거하여 governance, 제도,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자국의 개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는 ODA 확대, 무역개방 및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서 국내재원 동원, FDI, 무역, ODA, 외채탕감, 국제금융 및 무역체제의 일관성 향상을 강조.

· 동 Task Team이 2004.2월 로마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회의에서는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한 그간의 진전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 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전상황

– 원조조화에 대한 공여국, 국제개발기구 및 수원국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DAC 회원국 과반수 이상 및 몇몇 국제개발기구들이 이미 원조조화를 위한 내부적 프로세스를 준비하였음

– 베트남, 이디오피아, 피지 등에서 공여국과 국제개발기구들은 수원국 주도의 개발전략에 자신들의 원조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고 있음

· 도전과제

–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한 진전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된 수원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원조조화 및 일치에 관한 진전 미미

– 원조기관 본부와 수원국 현지사무소간의 원조조화 및 일치에 대한 인식격차 상존

– 원조조화 및 일치와 관련한 모범 수원국에 대한 안정적 개발재원 제공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재

■ 로마선언 세부내용

①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여기관의 운용정책, 절차 및 관행을 수원국(partner country) 시스템과 조화(harmonise)시키는 것이 중요

② 원조 추진시 공여국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개도국에게 비생산적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거나 제한된 능력을 저하시킴

③ 수원국의 원조조정과 관련한 강력한 리더쉽 역할이 요구되며 공여국은 그러한 능력을 배양토록 지원 필요

④ 공공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개발결과도 향상시키면서 공여국의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조화시켜 관련 비용을 감소시킴이 긴요

⑤ 조화를 향상시킬 활동들

– 개발원조를 빈곤감소 등을 포함한 수원국의 우선순위(priority)에 따라 추진

– 개별기관이나 국가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조화를 촉진시키기위한 관례를 재검토

– 공여국의 조사단, 검토, 보고기능을 축소하고 조건성(conditionality)을 간소화하고 서류를 단순화하고 조화시킴

– 개발원조 추진시 특정 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여 좋은 관례기준 또는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

– 국별협력을 강화하여 국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별 담당직원들의 업무 재량권(flexibility)을 증가

– 증가된 원조효과 관련 조화된 이익을 관리자와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유인(Incentive) 개발

– 정부의 강한 리더쉽 역할과 개발 결과에 대한 주인의식 능력 강화

– 필요시 개도국의 예산, 분야, 또는 국제수지 지원

– 범지구적 및 지역적 프로그램에 조화된 접근방법 (harmonized approach) 사용

⑥ 조화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가 원조운용정책, 절차, 및 관례에 대한 준비 또는 수정작업 중 정보공유를 증가시키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⑦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대한 원조공여국들의 기여를 모니터링하고 사정하는데 있어서의 글로벌 작업의 인지가 긴요함

⑧ 현대의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조화를 촉진하는 잠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함

⑨ 수원국들은 개발원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제안을 제시한 공여국 그룹과 협의하여, 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을 설계토록 장려함. 양자 및 다자기관들도 국가차원에서 조화를 지지할 행동들을 마련하여야 함

⑩ 조화에 관한 동의를 집행해나갈 동료들의 압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를 활용하고 강화하여야함

⑪ 2004년 OECD/DAC에서의 검토회의에 이어 2005년 초에는 그간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조집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적회의(stocktaking meeting)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원조조화를 위한 모범 관행 또는 원칙

⑫ 투명한 공공재무관리절차시스템을 통해 개도국과 그 국민간의 증진된 책임관계가 긴요

⑬ 공공부문 재무검토와 관련하여 개도국 정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러한 협의 결과를 빈곤완화 전략, 공여국의 국별 프로그램, 수원국 및 공여국 모두의 의사결정 사이클에 통합하는 것이 긴요함. 재무검토에는 국가의 초기여건, 국제 표준, 코드 및 접근방법, 이러한 표준과 코드에 부합되는 능력구축 등이 고려되어야함. DAC는 국제회계사연합(IFA)에 요청하여 개도국 및 공여국과의 협의하에 2004년까지 개발원조를 위한 회계표준을 준비토록 요청한 바 있음

25) WP-EFF: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 (DAC 산하기관)

26) Task Team on Harmonization and Alignment

⑭ 재무보고 및 감사에 관한 간소화되고 조화된 접근방법의 범위에는 재무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재무보고 기간, 감사 표준, 감사자와 기관의 질, 감사기관의 선정과 계약,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⑮ 개도국의 구매능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입찰서류를 개발 중임

⑯ 환경정책과 절차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평가, 문서화, 모니터링시 중복을 제거할 국제표준과 원칙 수립이 긴요함

⑰ 공여국들은 60,000여 개가 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여국들이 요구하는 각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기에 개도국의 능력이 제한적임. 따라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개별적 절차와 체제를 간소화하여 공통의 형식과 내용으로 작업토록 함이 바람직함

3. 마라케시 공동 메모렌덤

· 2004.2월 세계은행 총재, 4개 지역개발은행[27] 총재 및 DAC 의장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발결과 관리를 위한 global partnership 형성에 관한 공동 메모랜덤 채택

· 보다 나은 개발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 실행 및 평가 과정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관리 시스템과 역량이 요구됨

· 2002.3월 UN 개발재원국제회의(몬테레이) 이래 국제원조사회(development community)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쉽을 천명한 바 있음

 – 개도국은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및 행동 추진 강화

 – 선진국은 원조확대 및 보다 효과적인 원조 제공과 아울러 보다 일관성 있는 무역 및 기타 개발관련 정책 추구를 통한 개도국 개발 지원

· 이러한 파트너쉽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이 개발결과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획, 책임관리, 통계,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여기관들이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마라케시 메모랜덤은 결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5개 핵심원칙과 행동계획을 부속 문서로 제시

■ 개발결과 중심의 관리를 위한 5개 핵심원칙

① 원조의 계획, 실시 및 완료 등 모든 단계에서 파트너국가, 개발관련 기관, 다른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dialogue)를 중시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행위가 합의된 기대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치(alignment)

③ 결과 보고체제를 가능한 단순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사용자 중심으로 유지

④ 결과 중심의 관리: 중간 목표 및 지표 설정을 통하여 결과 지향 관리

⑤ 결과 자료를 보고와 책임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학습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

■ 개발결과 관리를 위한 7개 행동 계획

① 상기 핵심원칙을 승인

② 개발 결과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체제 정비에 중점

③ 거시적 차원에서 협력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개발결과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

④ 결과보고의 조화(harmonizing)

⑤ 개발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통계체제의 정비

⑥ 개발기관(development agencies)의 평가: 납세자 및 이행당사자에 대한 신뢰 구축

⑦ 모범사례의 전파

Ⅲ. 제2차 원조효과증진 고위급포럼(HLF Ⅱ)

· 2004년 12월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tsunami)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원조 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

· 2005년.2월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 증진을 위한 제2차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Ⅱ)' 은 원조조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대응의 일환으로서,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와 원조조화 로마선언(2003) 및 마라케시 메모랜덤(2004)에서 이루어진 각종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원조 관리방식에 있어 대폭적인 개혁조치를 요구하는 '파리 선언문' 을 채택함

· DAC는 원조효과성 제고관련 성과를 평가할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게 될 일련의 행동 계획들을 승인함

 – 동 지표는 단순히 성과평가 기능뿐 아니라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지를 고려하는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함.

· 동 파리선언에서 명시된 조치들의 이행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2008년에 개도국에서 다시 회합하여, 발전사항을 평가 예정

27)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파리선언문 주요내용

(1) 선언문 개요

· HLF 운영위원회(WB, 주최국 프랑스, ADB, EC, UN, 개도국, DAC 회원국, OECD 사무국 대표로 구성)가 초안 작성

· 선언문 명칭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부제 : Ownership, Harmonization, Alignment and Results

(2) 선언문의 구성 및 내용

· 총3부(section), 54개항(para), 12지표(indicators)로 구성

· 제1부(Statement of Principles)는 총14개항으로 구성되어, 포럼의 개최배경, 원조조화 로마선언문 재확인, 향후 이행심사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

· 제2부(Partnership Commitments)는 총 40개항(para)으로 구성되어, 수원국 및 공여국이 로마선언문 이행을 위하여 4개 이슈(Ownership, Alignment, Harmonisation, Managing for Results)에 대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술

· 제3부(Indicators of Progress)는 4개 이슈별로 세부사항(총12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설정

(3) 주요 내용

· 수원국은 건실한 개발정책을 정의하고 개발행동을 조정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의제와 일치,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을 강화

· 수원국은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개발 역량을 강화

· 수원국의 공적자금운영 능력 강화

· 수원국의 건실한 조달시스템 구축

· 언타이드 원조 확대

· 공여국간 원조를 조정하고 원조 절차를 간소화

· 성과가 큰 분야 또는 사업으로 원조를 집중화, 공여국간 상호 보완성 강화

· 공여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인센티브 강화

· 취약국가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 분야별, 국가별 건실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 성과중심의 원조 결과관리 체계 구축

· 개발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DAC는 파리선언 제3부에 명시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목표의 성과를 평가할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이행시한을 명시함

■ 파리선언문 세부내용

(1) 원조효과 증진을 위한 공약사항(Partnership Commitments)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 수원국은 개발전략의 입안 및 실행시 리더쉽을 행사하고, 성과 지향적인 개발전략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공여국과의 협의시 주도적으로 상호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토록 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리더쉽을 존중하고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역량강화를 지원함

◆ 원조일치(Alignment)

· 공여국은 수원국 개발의제에 원조전략을 일치

– 공여국은 모든 지원 제공 및 원조조건 부과시에 수원국측 개발전략에 기초하는 한편, 자금제공에 관한 각종 조건 및 지표는 공여국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이용

· 공여국은 수원국의 체제를 이용하고 강화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상호협력하여 수원국 성과평가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마련하고, 진단보고서 및 성과평가틀을 수원국측 역량배양전략에 통합

– 수원국은 자국 체제 및 절차에 대해 믿을만한 평가를 제공하는 진단평가(diagnostic review)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국 원조관리 체제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필요한 개혁조치를 취함. 또한 공공재정 개혁과 같은, 지속적인 역량개발 과정을 촉발시키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개혁조치를 추진

– 공여국은 원조제공시 가능한 한 수원국의 체제를 활용. 수원국 체제 활용이 어려울 때는 수원국 체제강화에 도움을 주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이미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도 공여국이 원조프로그램을 위해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삼가는 한편 수원국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조화된 수원국 체제평가 틀을 도입

· 수원국은 공여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역량을 강화

– 수원국은 역량배양이 공여국이 아니라 수원국 자신이 할 수 밖에 없는 일임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역량개발 목표를 국가개발전략에 통합시키고 그 이행을 추구함

– 공여국은 역량강화 지원을 수원국 측의 역량개발 목표와 전략에 일치시키고 이것이 수원국 주도의 역량배양 전략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 공공재정 관리역량을 강화

– 수원국은 주도적으로 국내자원의 동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보고서를 간행

– 공여국은 다년도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원조제공을 공약하고 합의한 스케줄에 따라 적시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함. 아울러 수원국의 투명한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적시에 예측가능하게 예산지원을 제공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조화된 진단보고 및 성과평가를 추진

· 수원국의 정부조달 시스템을 강화
– 정부조달 개선이 원조자원 활용 효율성을 제고함을 인식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정부조달 개선과정에 있어 상호 합의된 표준과 절차를 활용하고 중장기 차원의 정부조달 개혁 및 역량강화를 충분히 지원하며 권장할 만한 조치들에 대해 상호 피드백 공유
– 수원국은 정부조달체제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이 상호합의한 표준 및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수원국 정부조달 체제에 점차 의존토록 함. 수원국 체제가 상호합의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공여국이 수원국 체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조화된 접근방식을 채택

· 원조를 언타이드화
– DAC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2001년 원조 언타이드화 권고안이 권장하는 바 원조 언타이드화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함

◆ 원조조화(Harmonisation)

· 공여국은 공동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조절차를 간소화
– 공여국은 로마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실행키로 한 공여국 행동계획을 추진
– 또한 공여국 원조활동 및 원조흐름에 관한 공통의 합의사항을 실행.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 활용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됨
– 공여국 간에 따로따로 행해지거나 서로 중첩되는 현지 프로젝트와 진단평가의 수를 줄이도록 상호 협력하고, 경험 공유 및 관행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동 훈련을 장려함

· 상호보완성 : 공여국간에 효과적인 상호역할분담 추진
– 수원국은 개발전략에 있어 어느 공여국이 비교우위를 갖는지, 그리고 국별수준과 섹터 수준에서 어떻게 공여국간 상호보완(complementarity)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
– 공여국은 각종 프로그램 등의 실행에 있어서 선도 공여국들에게 권한을 양여함으로써, 공여국들이 서로 갖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상호 협력하여 개별적인 원조절차를 상호조화 시킴

· 공여국들은 상호공조를 가능케 하는 유인 마련
– 공여국과 수원국 공히 원조기관 임직원들이 원조조화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혁하고 유인을 강화함

· 취약국가에 효과적으로 원조 제공
– 수원국은 국내 치안과 안보, effective governance, 기초사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이용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틀을 확립하는 한편, 공여국과의 대화를 통해 간단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함. 또한 국내의 다양한 관련당사자를 개발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함
– 공여국은 공여국간 취약국가 원조활동을 상호조화 시키는 것이 특히 긴요히 요구되며, 취약국가의 특수성을 고려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원조일치 방식을 취해야 함. 또한 수원국 제도구축을 저해하는 활동을 삼가함

· 건전한 환경평가를 장려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평가에 있어서 전략적 환경 평가를 위한 공동의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함. 아울러서 환경분석 및 환경관련 법률 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개발원조 결과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 개발결과 달성의 관리 및 보고
– 수원국은 개발전략과 예산편성과정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원조 성과보고 및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 동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측정지표를 활용함
– 공여국은 수원국과 협력하여 수원국의 모니터링 및 보고시스템에 최대한 의존할 수 있도록 함
– 공여국의 모니터링 및 보고요건을 상호조화시킴. 공여국이 수원국 체제에 온전히 의존할 수 있을 때까지 공여국과 수원국은 가능한 데까지 주기적인 실태보고에 대한 공동의 포맷을 마련토록 합의함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상호 협력하여 개발성과 관리 역량 배양을 위해 노력

◆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 개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 수원국은 개발전략 및 예산 마련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함. 아울러 개발전략 수립 및 동 전략 이행상의 발전상 평가시 광범위한 개발 파트너들을 제도적으로 참여케 하는 참여적 접근법 강화
– 공여국은 원조흐름에 관해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원국 정부가 자

국 입법부와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예산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마련되어 있으며 더욱더 객관적인 수원국 차원 메커니즘(country level mechanism)을 통해 원조효과성에 관해 합의된 공약사항의 공동 발전성과를 함께 평가함. 여기에는 이 파리선언의 파트너쉽 공약사항 이행 성과도 포함됨

(2) 원조효과성 발전 지표(Indicators of Progress)

	1. 수원국의 주인의식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1	수원국은 실제 이용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 중기 재정지출 체제와 연계되어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고 연간예산에 반영되는 국가개발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number)	최소한 수원국의 75%*
	2 . 원조일치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 정부조달 및 공공재정관리 체제를 갖춘 수원국의 수(number). 이 체계는 (a)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범관행을 준수하거나 (b) 동 모범관행 실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2005.10월까지 발전목표(target for improvement) 설정
3	원조유입이 국가개발전략과 일치 – 수원국 정부부문에 유입되는 원조 비율(percent). 동 원조는 수원국 예산계획에 보고된 것	수원국 국가예산계획에 보고된 원조유입의 85%*
4	원조지원 상호공조를 통한 역량강화 –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수원국 국별개발전략과 양립하는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비율(percent)	2005.10월까지 발전목표 설정
5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 수원국의 정부조달 및 공공재정체제를 이용하는 공여국 및 원조흐름의 비율(percent). 이 체제는 (a)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범관행을 준수하거나 (b) 동 모범관행 실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2005.10월까지 발전목표 설정
6	중복되는 원조실행체제 마련을 피하여 수원국의 역량 강화 – 국가당 설치된 특별 원조실행부서(units)의 수	2005.10월까지 발전목표 설정
7	원조의 예측가능성 증대 – 연간 또는 다년 프레임워크 하에 사전 합의된 스케줄에 따라서 제공된 원조지출의 비율(percent)	최소한 사전합의에 따라 지출되는 원조의 75%*
8	원조의 언타이드화 – 언타이드된 양자간 원조의 비율(percent)	지속적으로 개선
	3. 원조조화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9	공동의 제도와 절차(arrangements and procedures) 활용 – 프로그램(programme-based)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개발원조의 비율(percent)	최소한 원조의 25%*
10	공동분석(shared analysis) 장려 – (a) 현지사업(field missions) 그리고 (또는) (b) 국별분석 작업(공동 진단평가 포함)의 비율(percent)	2005.10월까지 발전목표 설정
	4. 개발결과 관리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11	결과지향적 체제 – 국가개발전략과 섹터별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위한 투명하고 모니터링 가능한 성과평가 체제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를 마련한 국가의 수(number)	수원국의 75%*
	5. 상호책임성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12	상호책임성 – 원조효과성에 관한 합의된 공약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해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를 실시하는 수원국의 수(number)	2005. 10월까지 발전목표 설정

※ *는 2005. 9월 UN MDG+5 회의에서 최종확정 또는 수정될 수치임.

Ⅳ. 의제별 세부 동향

1. 주인의식(Ownership)

· 국가의 개발이란 해당 국가(수원국)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가.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PRS) 마련

· IMF와 World Bank는 원조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수원국이 빈곤감소전략(PRS)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이 PRS에는 개발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달성시한을 설정한 개발정책조치를 명시해야 함

· 발전성과(Progress)

- 2004.10월까지 40여개 수원국들이 IMF와 World Bank에 PRS제출함. PRS 작성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관여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개도국 주인의식의 기반이 넓어지고 있음

· 원조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 MTEF 도입

- 개발원조 자원이 중요한 개발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확실히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당면과제 중 하나임
- 이와 관련, 중기 예산지출 프레임워크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에 따라 개발자원을 중기(medium-term) 차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널리 권고되고 있음
- MTEF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의 뒷받침과 함께, 우선순위 개발프로그램을 정부예산 편성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재 41개 수원국에서 MTEF 도입이 추진중임

· PRS에 개발결과 관리 반영

- 개발결과 관리 이슈가 최근에 대두되어 아직까지 PRS에서 동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나, 점점 더 많은 수원국과 공여기관들이 개발결과 관리를 배려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음
- 이 경우, 달성코자 하는 개발성과(results) 및 수단(means)이 명료하지 않으면 개발결과 관리를 제대로 행하기 어려움

나. 기타 수원국 주인의식 및 리더쉽관련 발전성과

· 원조조화 행동계획(Harmonisation Action Plan)

- 일부 수원국들은 원조조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기관과 공여국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중. 행동계획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남(섹터 또는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원조조화 추진 등)
- 베트남의 경우,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트너쉽 그룹(PGAE)을 결성, 정부와 공여기관들이 베트남 정부가 직접 마련한 원조조화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노력중임.

· 일부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로마선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 활동을 발전시켜옴.
- 모잠비크의 경우 각종 원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공여국 상호공조 체제를 지속으로 발전시켜옴
- 일부 수원국들(특히 중소득국)은 원조조화와 일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이슈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공동 국가 학습 및 평가과정(Joint Country Learning and Assessment process, JCLA)
- DAC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 테스크팀이 도입한 실험적인 제도
- 목적 : 수원국 주도의 원조조화 및 일치 프로세스를 학습, 평가 및 원활화하기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 EC와 UNDP가 DAC 사무국 및 일본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이며 니카라과에서 최초로 시도
- JCLA는 두 개의 기술위원회(missions), DAC 국별조사서(survey), JCLA 초안보고서, 그리고 원조조화 및 일치 행동계획 마련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DAC 의장이 주도하는 고위급 위원회가 개최됨
- 니카라과 정부는 JCLA이 수원국과 공여국들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과 관련, 자국내 개발원조 관련당사자간 상호 대화 및 컨센서스 수립의 촉매역할을 하여, 원조조화 행동계획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JCLA를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다 강력한 원조관리 리더쉽 행사
-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 어젠다를 설정하고자 할 때, 수원국은 개발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함. 해외원조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공여국이 준수토록 요구하는 확고한 규칙을 기꺼이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원조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해외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됨.(예 : 아프간)

다. 당면과제와 향후 개선 사항

· 개발전략에서 주인의식을 더욱 심화, 확장,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개발전략의 개선발전
- PRS상에서 개발우선순위 등을 더욱 명료화 (MTEF를 PRS에 포함하는 등)
- PRS 추진을 위한 주인의식이 일부 담당자뿐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에 공유되도록 함
- 기존에는 거의 배제되었던 입법부와 시민사회를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토록 함.

· 원조제공시 부과하는 조건(conditionality) 개선
- 공여국들은 원조자금 제공시 원래 의도한 대로 사용되도록 하고자 통상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
 (예) IMF/World Bank는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조건, 양자 원조기관은 정치분야와 관련한 조건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원조조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원조조건상의 상호모순, 수원국 주인의식과 불양립성 등)
- 이에 대하여 공여국들은 원조조건을 붙일 때 다음 4가지 원칙을 준수 하기를 요망함
 (a) 꼭 필요한 조건만을 제시하고 조건의 수를 제한
 (b) PRS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춤
 (c)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조조건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일을 삼감
 (d) 수원국 정부와 상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원조조건을 개선, 발전

·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확보
- 원조효과성과 관련, 수원국과 공여국은 국가차원에서와 아울러, 수원국과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들에 대한 하향적 책임성(downward accountability)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은 원조유입(aid flow)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국은 국내외 원조자원 이용에 관한 정부재정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다루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동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

·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지원
- 공여국들은 수원국이 개발전략을 수립, 이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효과적인 원조관리 관행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발원조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unpredictable), 수원국은 개발 프로세스에서 효과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렵게 됨. 그 결과, 개발기회 상실 및 성장 및 빈곤감소에 장애가 되는 등의 문제발생.
- 따라서 공여국은 개발원조 예산제공과 관련, 수원국과 명확히 의사를 교환하는 한편, 개발재원이 예측 가능한 스케줄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토록 함
- 다년주의 프레임워크(multi-year framework)로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원조자원 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
- 원조가 보다 더 예측가능해 지도록 원조조건을 조정하고, 이것이 충족된다면 원조를 처음 제시한 스케줄에 따라 제공할 것을 공약함.

2. 원조 일치(alignment)

· 5년전만 해도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드문 상황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공여국들이 원조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수원국 개발전략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추세임.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90% 이상의 수원국이 동 국제기구가 수원국의 우선 분야를 중시한다고 답변했음

·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존중하는 공여국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하지만,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시켜, 원조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시스템 활용관련, 이행도 더딘 추세임

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일치

· 원조일치를 고찰하는 방식은 원조제공방식을 살펴보는 것인데, 현재 주요 원조방식중 하나인 사업지원의 경우 모범관행원칙(Good practice principles)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수원국측의 개발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원조공여 접근방식(Approaches to the Provision of Aid)

(1) 분야별 접근법(Sector-wide Approaches, SWAp)

- 분야별 접근법은 다음 5가지 특징을 갖는 개발원조 방식임
 a) 명료한 분야별 정책 b) 공여국들의 공조 프로세스를 공식화
 c) 중기차원의 재정계획 d) 개발결과 중심 모니터링 체계
 e) 공통의 프로그램 실행체계
- SWAp는 원조조화 및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중저소득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고, 수원국 정부체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프로젝트 및 예산지원을 조화롭게 운용, 개발프로그램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점차 그 중요성과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26개 수원국이 SWAp을 실행하고 있거나 마련중이며 UN에서도 SWAp 수립 및 실행에 관여하고 있음

(2) 예산지원(Budget Support)

- 예산지원은 개발재원을 수원국 정부에 제공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높아짐
- 예산지원이 효과를 거두려면 수원국측 세입,세출과정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이 필요
- 모잠비크 등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예산지원 성과척도를 고안하고 있으며, IMF/World Bank는 재정지원 패키지를 제공. 일부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 대해서는 다수 공여국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형태로 예산지원을 제공함

(3) 문제점

- SWAp의 경우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착수비용이 막대하며 추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반면, 예산지원의 경우 수원국에 매우 엄격한 요구조건(conditionality)을 요구하게 되며 무거운 보고(reporting) 부담을 지우게 됨

· 원조조화 추진에 대한 공여국들의 유보(Reservation) 현상

- 일부 공여국들의 경우 여전히 수원국 개발전략을 제한적으로만 지지하고 있음. 그 이유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개발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따라서 공여국이 여전히 원조의 여러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되고 있음
- 또한, 공여기관의 본부와 현지사무소간 정보격차(lags in information) 때문에 원조조화와 일치 활동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나. 수원국 체제의 활용(Use of Country System)

· 공여국이 제공하는 재원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수원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물적,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야만 원하는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현재까지의 성과

(1) 개발프로젝트 자금제공 분야

수원국 체제 활용은 원조조화와 일치 이슈에서 가장 발전이 더딤. WP-EFF에서 실시한 14개국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의 30%만이 수원국 체제를 이용하고 있음. 대다수 공여국들이 지금까지는 수원국 체제이용 의사가 높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점차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2) 예산지원 분야

예산지원은 프로젝트 자금지원보다는 상황이 나은편으로 대다수의 공여국이 수원국 예산편성시점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의 예측가능성도 높은편임

◆ 수원국 체제활용관련 개선방향

가능한 한 다수의 공여국과 수원국들이 합의가능한 감독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수원국 체제의 국제표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한 표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1) 가능한 방안들(Possible Approach)

공여국은 수원국 시스템 활용도 증대를 위해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 정책 및 법적 변화, 그리고 역량 개발 계획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우선 시험적 노력을 거치고, 제도 개발과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진전이 더딘 공여기관 및 수원국을 식별하고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임

(2) 수원국 체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발전

수원국 체제를 보다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히 합의된 체제평가 기준이 필요함. 다음 3개 이슈에서 평가기준 마련문제는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임

-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 현재 IMF/World Bank, EU 및 양자공여국들이 참여하는 PEFA(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에서 평가지표를 개발 및 개선중에 있으며 2005년 상반기중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조달(Procurement) :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조달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on Procurement)에서 위에 언급한 PEFA와 PFM 지원을 위해 수원국 조달 시스템 강화전략을 마련함
- 환경(Environment) : 다자금융기관의 환경 실무반 (Working Group on Environment)은 로마선언을 전파하고 후속조치를 발굴하기 위한 다수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3) 수원국 체제평가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Assessing Country Systems)

수원국 체제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체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함. 공여국이 그에 의존하여 개발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하는 공여국의 수 등 일련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원조 일치관련 향후 개선사항

· 원조일치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원국은 개발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마련, 관련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야 함. 공여국은 원조 프로그램을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시키고 수원국의 평가체계를 이용해서 원조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함

(1) 수원국 체제의 활용(Relying on Country Systems)

- 공여국은 수원국과 협력하여 공동평가를 추진하고 수원국 역량강화를 지원
- 수원국은 동 평가활동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조치를 취함

(2) 수원국 체제의 역량강화(Strengthening Systemic Capacity)

- 역량강화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수원국 제도에 대한 요구와 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임
- 공여기관은 국가 주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속적인 중기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공여기관과 수원국 모두 공동진단 작업이 투명히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공여국 역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원국 및 타 공여기관들과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

3. 원조조화(harmonization)

가. 진전 상황

· 원조조화관련, 공여국들은 원조 업무와 정책에 대한 공동분석, 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분야에서 로마선언을 이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래와 같은 진전을 이룸

(1) 공여국간 공동 기획(common arrangement)

· 원조공동분석 (Joint Analysis)

- 원조 분석시 공여국들의 공동분석(joint analysis)은 원조조화를 위한 효과적인 틀이 됨
- 다수 국가에서 자국 내 개발원조 관련사항 평가시 2개국 이상이 함께 관여하고 있으며, UN에서는 평가체제에 있어 공동 국가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를 실시

· 공동 원조전략 수립

- 최근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원조조화 전략을 수립하여 수원국 개발전략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UN은 공동평가 및 원조시스템이 이미 관행화 되었으며 EU에서도 원조조화를 위한 EU의 기여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함

· 개발원조 실행조치(operational approaches)의 조화

- 예산 지원 등 원조조화를 위한 실행조치에 있어, 공여국간 조화 노력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음
- 탄자니아의 경우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와의 전략파트너쉽에 따르면 역량강화, 기타 많은 개발원조프로그램에서 조화의 수준은 아직 상당히 낮은 상태임이 지적됨

· EU 공여국의 공동 재원조달협정(Joint Financing Arrangements for EU Donors/ JFAs)

- EU는 공동개발재정조달협정(JFAs)의 활용을 높이고 있음
- JFA의 목적은 EU 공여국간의 원조조화 및 비 EU공여국간의 원조조화 촉진임. JFAs 당사국들은 제반 원조절차에서 함께 협력하고 공통의 제도적 틀을 활용함
- JFAs는 볼리비아, 모잠비크 등 국가에서 다수 공여국이 지원하는 예산지원 실행시에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 JFAs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원조프로그램의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양자/다자원조 공여기관간 상호조화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ADB, World Bank 등 3개 양자/다자 공여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개발원조 실행조치를 상호 조화시키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기타 아시아 지역 내 다수 국가에서 이미 조화된 개발원조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절차

- 공여국 및 수원국 공히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관련, 여러 가지 법령과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마다 이런 조치가 서로 상이하면 원조의 효과가 감퇴됨
- 최근 원조기관들은 모범관행 원칙에 입각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으며(예: 베트남), 앞으로는 공동의 영향평가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원조프로그램이 개별 프로젝트 위주에서 섹터별 접근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로 불리우는 평가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임

· 언타이드 원조(Untied Aid)

- 원조제공시 특정국가 물자만을 사용케 하는 타이드 원조(tied aid)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함: 재화, 용역 기타 원조물자 공급비용 상승, 실질적인 양허율(grant element) 하락, 수원국측의 주인의식 감퇴 초래 등
- 결국 타이드 원조는 거래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공여국간 원조조화의 유인 및 노력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가져옴
- 최근 많은 공여국들이 언타이드 원조(untied aid)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음
- 대 개도국 원조의 언타이드화 권고안에 관한 DAC 200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언타이드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동 권고안의 범주가 제한적이기 때문임. DAC 공여국은 동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서 그 혜택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를 고려하게 될 것임

(2) 원조업무 절차의 간소화

최근 UNDG 및 World Bank 등은 감사정책, 재정지출 적격성, 조달관련 절차 등 각종 원조관련 절차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화되고 간소화된 원조프로그램 및 실행조치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sDB)에서도 World Bank와 유사한 조치를 추진중에 있음

· 재정 및 정부조달(Financial Management and Procurement)

- 원조조화 및 간소화와 관련 공여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임
- UNDG 실행위원회는 공동보고체제 채택, 금융위험평가, 지출, 감사 등에 공동의 접근법 이용 등을 합의함
- 정부조달 부문도 원조조화 및 일치에서 핵심적 주제. 동 부문에서는 다자개발은행들의 경우 상호조화된 표준입찰제도 마련 및 홍보 절차 및 입찰계약 낙찰 공표 등을, 양자원조기관들은 각종 조달정책 및 절차의 조화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예: Nordic Plus 회원국)

– 아울러서 전자조달(e-procurement)에서도 원조조화 노력이 이루어짐. 일부 공여국들은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화된 전자조달 플랫폼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감사관련 기준(Audit Requirements)

– 지난 2년동안, 해외감사관행의 조화(HOAP/Harmonisation in Overseas Audit Practices)에 대한 작업반이 여러 공여국이 함께 하는 SWAp 및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공동의 접근방안을 개발해 옴

– 작업반이 네델란드, 노르웨이, 영국의 감사실과 공동으로 2003년 잠비아 교육관련 지출에 대한 공동 감사를 실시함. 그 결과, 독립적 지위를 갖은 각국의 최고 감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감사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됨

· 공여국 현장방문 및 수원국 보고부담(Visits and Reports)

– 일부 수원국의 경우 공여기관 담당자의 현지출장 방문이 대단히 잦아서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수원국측의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며 원조조화 및 일치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 공여기관은 수원국 현지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하여 본부출장 빈도를 줄이고 수원국은 공여기관 출장을 자제토록 하는 방침을 정하여 일관되게 실행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

· 위임협력(Delegated Cooperation)

– 위임협력은 한 공여국이 다른 공여국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공여국은 수탁자의 책임을 지고(fiduciary responsibility) 개발원조를 대신 제공해 주는 제도임

– 과거에는 위임협력이 별로 이용되지 않다가 최근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AusAID, CIDA, AFD 등 주요 선진국 원조공여기관 및 다자공여기관들이 위임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가 위임협력방식을 통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

(3)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 원조효과성의 개념구조에서, 정보공유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즉, (1) 공여국은 타 공여국과 수원국에 대해 국별분석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 현재 원조재원 지출 및 향후 지출 계획을 수원국에 적시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함

– 정보공유 이슈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여국이 미래에 제공할 원조 규모를 미리 공약하기 어렵기 때문임

· 국별분석작업(Country Analytic Work, CAW)

– 국별분석작업은 원조공여기관 및 수원국에게 개발전략에 관한 각종 분석결과 및 조언을 제공함

– 현재 CAW에 대한 참여율은 그동안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CAW 홈페이지(http://www.countryanalyticwork.net)가 개설되어 공여국들의 국별분석 문헌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연례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원국측이 원조정책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줌

– 공여국들은 앞으로 국별분석작업 관련 문헌을 더 널리 확신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원조재원 제공 및 공약(Disbursements and Commitments)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여국들은 원조자원 제공시 수원국에 사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공여국측의 그러한 공약이 크게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WP-EFF에서는 공여국 재정지출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검토중임

· 다년주의 개발원조의 예측가능성 및 원조프로그램 마련(Multi-year Aid Predictability and Programming)

– 원조흐름과 관련하여, 공여국들은 공유할 정보가 별로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임. 이 때문에 수원국은 다년주의 개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공여국은 내부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원조제공 공약이 어려운 실정. 그러나 공여국들이 중기 차원의 원조제공 공약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임

나. 당면과제와 향후 개선사항

· 공여국간 상호보완성 향상(Increasing Donor Complementarity)

– 수원국과 공여국은 상호협력하여 공여국의 원조제공이 분산되어 수원국에게 초래되는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수원국은 선호하는 공여국의 수와 성격, 그리고 원하는 개발영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공여국은 서로가 갖는 비교우위 부문을 고려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원조가 과다하게 집중 또는 분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분야별로 원조가 중첩되거나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도록 함

· 원조조화를 위한 유인 개발(Creating Incentives for Harmonisation)

– 원조조화 및 일치, 그리고 수원국 및 기타 공여국과의 협력에 수반되는 제도적, 인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incentive)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함

– 이 주제와 관련, 공여기관의 현지사무소와 본부간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됨. 현지사무소에 충분한 재량권과 유연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원조일치 이슈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4. 개발결과의 관리

가. 개발결과 관리와 관련한 어젠다

· 개발결과 관리 이슈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음. 많은 국제회의를 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DAC WP-EFF 산하에 개발성과 관리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가 설치되어 동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나. 개발결과 관리 부문에서 진전성과

◆ 수원국 측면

(1) 전략 및 기획

· 수원국들은 PRS 및 유사 국별개발전략을 공통의 플랫폼으로 삼아 개발전략을 마련중. 방글라데시, 네팔 등 일부 국가들은 PRS를 원조성과 관리와 관련한 여러 조치들과 연계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정부재정지출 관리

· 개별결과 관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일부국가들(브라질, 필리핀 등)이 정부재정지출, 예산편성을 국가개발전략과 연계시키고 있음

(3) 결과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 결과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M&E): 국가행정 제도로서, 현재 추진중인 개발전략 관리 및 개발성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 개발행동계획과 개발성과를 연결시켜 어떤 개발목표 달성이 다른 개발목표 달성에 어느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M&E가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게 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몇몇 국가들이 M&E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통계처리역량

· 수원국의 통계역량 강화는 원조관리 리더쉽 제고를 위해 긴요한 과제임.

· 마라케시 메모랜덤에서는 "원조성과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수원국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통계처리 역량강화 자금 제공을 늘리기로 함

· 현재 Ukraine, Burkina Faso, 알바니아, 중국 등에서 통계역량강화 개발프로그램이 착수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공여국 측면

(1) 결과중심 국별원조 프로그램

· 많은 공여국들이 수원국 PRS 및 MTEF에 기초하여 성과중심 원조프로그램을 마련중임

· 개발성과 관리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서 최근에 대두되는 관련 원조관행을 분석중임

(2) 개발원조 프로그램 운영관련 사항

· 많은 공여국 및 다자개발은행은 원조프로그램의 운영 관련사항의 질적개선 및 그 파급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운영측면은 그 자체가 원조성과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부분임

(3) 성과중심 원조 배분

· 수원국이 달성한 원조성과에 개발원조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

· 개발성과관리 조인트벤처에서 공여국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사중임

· 일부 공여국은 개발성과를 반영하는 요인(factors)들을 고려한 몇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델에서 도출되는 원조배분 준칙(norms)을 도출하여, 그에 따라 원조자원 배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험중임

· DAC 산하 문제국가에 대한 학습 및 자문반(Learning and Advisory Process on Difficult Partnerships)에서는 취약국가에 대해 원조성과 중심 자원배분을 연구중

· 상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조성과가 좋은 국가에서는 준칙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원조자원이 집중되고, 나쁜 국가에서는 훨씬 적은 수준의 원조가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국가간 원조불균형 해결이 당면과제임. 단, 현재까지의 결과는 더 많은 검증을 요함

(4) 공여기관 직원이 동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케 할 유인 마련

· 공여기관은 원조조화와 일치 등 원조관행을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토록 하는 유인 및 비유인(disincentives)을 찾아내어 후자는 제거할 필요가 있음. 영국국제개발부(DFID)의 경우 중견간부들의 연봉을 개발원조성과와 연계시키는 조치를 도입함

(5) 원조기관의 사업결과보고(Corporate Reporting)

· 사업결과보고는 개발원조 관련이해당사자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발노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적임

· ADB외 여러 다자개발은행과 양자공여기관은 사업결과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중

◆ 지구적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측면

· 몬테레이 컨센서스로 촉발된 개발원조를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 상호간 협력은 개발성과 달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1) 개발결과 관리에 효과적인 각종 조치들에 관한 정보공유

· MDB/OECD 개발결과 관리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서는 개발결과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한 원조조화 및 상호공조 노력을 지원함

· 이러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발결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모범관행 자료집"이 현재 마련중이며, 아울러 2004년 10월과 11월에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4차례의 지역워크숍이 개최되었음

(2) 결과 보고방식의 상호조화

· 공여국들은 원조일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시 원조성과에 대한 보고방식(results reporting)을 상호 조화시켜야 함

· 모잠비크에서는 공여국들이 모잠비크측의 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성과보고를 행하고 있음

· 다자개발은행들은 평가협력그룹(Evaluation Cooperation Group)을 통해 원조 프로그램 평가방법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2005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4개국에서 원조성과 보고방식의 상호조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임

(3) 수원국 차원에서의 상호공조

· 수원국의 개발역량강화를 위해 공여국들간에 보다 상호공조된 지원이 요구되며, 공여국들도 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 공여국들은 최근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역량배양 지원전략을 일치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음

다. 당면과제와 향후 개선사항

(1) 수원국 측면

· 개발결과 관리 목표달성 위해 수원국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

· 수원국은 개발전략 수립시 개발 우선순위 명료화, 정부재정계획과의 연계 등 개발결과 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통계처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별결과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시민사회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도 요망됨

(2) 공여국 측면

· 공여국은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을 수원국 개발전략과 일치시키도록 노력

 – 개발결과 관리 프레임워크를 원조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원조프로그램 성과관리의 고려대상범위를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세계차원, 지역차원, 섹터차원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은 그동안의 원조프로그램의 투입/산출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칠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우선 달성코자 하는 개발성과를 먼저 설정한 다음 그 성과달성에 필요한 투입요소와 조치들을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3) 지구적 파트너쉽 측면

· 공여국들은 원조 제공시 상호 공조하지 않으면 바라는 원조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

· 원조조화에 있어서 이루어온 발전의 추세는 원조성과평가 등 기존에 추진하던 분야 외에 다른 관련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

(4) 향후 우선순위 정책

· 원조프로그램 마련시 공여국과 수원국 공히 개발의 성과(results)에 초점을 맞출 것

· 모든 원조프로그램 관련 문헌 작성시, 개발결과 관리 프레임워크가 포함되도록 할 것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통계역량과 M&E 역량배양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공약할 것

5. 수원국 및 공여국의 역량 강화

가.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 수원국은 역량배양이 공여국이 아니라 수원국 자신이 할 수 밖에 없는 일임을 염두에 두고, 개발전략에 입각한 역량배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체제 및 개발제도의 성과측정을 실시. 아울러 지속적 역량개발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국내 개혁조치 추진

· 공여국은 역량강화 지원을 수원국 측의 역량개발 목표와 전략에 일치시키고 수원국 전략에 일치된 방식으로 상호공조된 프로그램을 마련

·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개발원조상에서 역량개발을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 설정함이 필요

· 대부분의 수원국측 시스템은 공여국이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여국과 수원국은 협력하여 수원국 역량배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디오피아에서 현재 역량배양을 위해 공여국들의 상호공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공공재정 관리역량 강화

· 수원국은 주도적으로 국내자원의 동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보고서를 마련함

· 공여국은 다년도(multi-year)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원조제공을 공약하고, 수원국 예산,회계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적시에 예측가능하게 예산지원을 제공함

다. 건전한 정부조달 시스템을 구축 부문 역량강화

· 정부조달 개선이 원조자원 활용 효율성을 제고함을 인식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공히 정부조달 개선 과정에 있어 상호 합의된 표준과 절차를 활용하고 중장기 차원의 정부조달 개혁 및 역량강화를 충분히 지원하며 권장할 만한 조치들에 대해 상호 피드백 제공

· 수원국은 정부조달체제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에서 상호합의한 표준 및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수원국 정부조달 체제에 점차 의존토록 함. 수원국 체제가 상호합의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호조화된 접근방식을 채택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에 관한 포럼 결과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에 관한 포럼이 OECD 회원국 및 중, 러, 사우디, 태국, 브라질, 남아공 등 14개 여타 공여국, 국제기구(UNDP, WB, IMF)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2.1-2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내용

· OECD와 신흥공여국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

· OECD 비회원국의 ODA 통계를 DAC에 자발적으로 제공키로 합의

· 원조효과 증진을 위해 수원국내에서 공여국간 조정 및 원조정책, 원조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공유 합의

· 브라질은 ODA의 증대가 어려움을 감안,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무기판매세, IMF의 특별인출권, 국제금융제도(IFF), 이민자 송금, 신용카드세 등에 대한 검토를 제의하고, 브라질, 칠레, 프랑스, 스페인의 공동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이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대함.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16개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 채택

2. 포럼 개요

· 금번 포럼에는 OECD 회원국 및 중국,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라질, 칠레, 인도, 남아공, 이스라엘, 리비아, 튀니지 등 14개 신흥공여국의 원조정책 담당 고위관리, UNDP, WB,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함

 – DAC 회원국과 여타 공여국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회의는 1997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이래 8년만에 개최

· 금번 포럼은 DAC와 UNDP 공동주관하에 개최되고, DAC 의장 및 UNDP 총재보(개발정책국장 겸임)가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함
· 영국, 일본 정부가 포럼 개최를 위한 재정을 지원함

3. 천년개발목표(MDG)의 도전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금년도 G8 정상회의 및 MDG 중간점검을 위한 UN 정상회의 개최 예정 등 개발을 위해 중요한 한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MDG 달성을 위해 DAC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4. 경험공유 및 공조방안

· 참석자들은 DAC을 통해 지난 45년간 축적해 온 개발원조정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공유 필요성, 수원국내에서 다수 공여국간의 공조협력의 필요성, 남남협력 및 3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흥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정책 및 원조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브라질은 빈곤감소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DA 외에도 매년 추가로 500억불의 자금이 필요하며,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칠레, 스페인, 프랑스와 공동으로 UN 사무총장의 지지를 받아 뉴욕에서 50여개국의 고위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주도하였고, 지금까지 111개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하였음
 –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으로 금융거래세, 무기판매세, IMF의 특별인출권, 국제금융제도(IFF), 이민자 송금, 신용카드세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미국 정부가 동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합의가 가능한 사항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자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못하였음

5.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쉽

·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해 OECD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정보교류 및 통계공유, MDG 달성을 위해 북-남-남의 3각 협력의 적극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이번과 같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음
 – 또한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에 관한 peer review시 신흥공여국들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관련,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국가에서는 내각차원의 합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등 여타 OECD 회원국에서는 정책일관성문제를 전정부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우리 대표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데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한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강력한 정부가 ownership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잘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우리나라의 원조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수원국의 ownership을 존중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6. 관찰 및 평가

· 최근 신흥공여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원국내에서 원조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OECD 회원국과 신흥공여국간의 조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번 포럼이 개최된 바, 신흥공여국들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들은 신흥공여국들의 원조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정보 및 통계 확보 체제를 수립하고, 앞으로 신흥공여국들이 그간 DAC에서 제정된 원조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는 앞으로 신흥공여국들의 자발적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임

이태리 원조현황

1. 원조목적

· 이태리 개발원조체계는 1987년에 제정된 법률(Law No.49 of 1987)에 기초하고 있음

– 개발협력의 목적

◆ UN 헌장에 의거, 인간화합과 인권실현을 추구함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Italian foreign policy and pursues the ideals of solidarity among peoples, seeking the fulfill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anctioned by the United Nations and EEC-ACP(African, Caribean and Pacific States) conventions"

– 구체적 목표(specific aims)

① 기본욕구 충족(satisfying basic needs)

② 인간생활 보호(safeguarding human life)

③ 식량 자급자족(encouraging food self-sufficiency)

④ 인력자원 확충(enhancing human resources)

⑤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

⑥ 자주적인 경제.사회.문화 발전 촉진(promoting self-relia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 1995년 범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Economic Plannig, CIPE)는 「신 개발협력 정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New Policy on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함

– 개발 협력의 목표

① 정치적 목표

▷ 주요한 산업국의 하나로써 빈국에 대한 원조노력에의 참여 확인

▷ 이태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의 안정 강화

▷ 환경, 여성 등 전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에 기여

② 경제적 목표

▷ 개도국 국민들의 이민의 주요한 원인인 빈곤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위한 경제개혁을 지원

▷ WTO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재 전환 지원

③ 인도적 목표

▷ 국제적인 자연 및 인재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

* 이태리의 개발협력은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1999년 외무부 개발협력국은 빈곤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Poverty Reduction Guideline)을 채택함

– 빈곤감소는 이태리 개발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빈곤감소를 위한 4가지 주요 목표

① 통치와 공공 분야 경영을 향상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빈곤감소에 호의적인 제도적인 환경의 증진

②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권한이양과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유도

③ 분야별 접근법과 지역적인 개발 접근법의 병합

④ 여러 다른 원조 제공자들과의 조화 속에서 실행

2. 원조체제 및 담당기관

· 이태리 시스템 "Sistema Italia"

– 이태리 개발원조 체계는 관련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가운데, 비정부 기관(NGO 및 민간연구소 등)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형태임. 이를 '이태리 시스템(Sistema Italia)' 이라고 명명함. 정부내에서 개발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는 외무부와 재정경제부임. 양자간 원조를 실행하는 부서는 외무부내 개발협력국하에 있는 전문 부서인 연합기술중심부(UTC : Unita Tecnica Centrale)임

· Direct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DGCS)

– 외무부내 개발협력국 : 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개발원조활동 감독의 책임을 짐

– 외무부는 ODA 예산의 27%를 단독으로 집행하며, 51%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담당함

· 재정경제부(MFE)는 외무부와 공동집행 예산과 더불어 이탈리아 ODA의 18%를 독립적으로 담당

함. 단 외무부에 비해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

· 기타 농업부, 환경부, 생산 활동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등에서 일부 ODA 집행

· NGO는 DGCS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NGO 단체들은 Associazion ONG Italinae 이라는 협의체를 통해 DGCS와 정책대화 및 교섭을 실시함

– 2003년 171개의 NGO 활동 : 2003년 116개의 프로젝트 집행(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

– 인도적인 원조, 개발지원, 여론 형성 등에 관여

3. ODA 규모

· 2003년도 ODA 규모: US$ 2,433백만불 (ODA/GNI 0.17%)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볼 때 DAC 22개 회원국 중 미국(16,254백만불), 일본(8,880백만불), 프랑스(7,253백만불), 독일(6,784백만불), 영국(6,282백만불), 네델란드(3,981백만불)에 이어 7위 규모임

〈이태리의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백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1,806	0.15%	1,376	0.13%	1,627	0.15%	2,332	0.20%	2,433	0.17%

※ 자료 : OECD, 연도별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4. ODA 지원현황

가. ODA 규모 : US$2,433백만 (2003년)

· 양자간 ODA 규모 : US$1,061백만 (43.6%)

· 다자간 ODA 규모 : US$1,372백만 (56.4%)

나. 10대 수원국 (2002 – 2003년 평균 기준)

· 10대 수원국은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튀니지, 기네비소, 아프가니스탄, 중국,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순으로, 동 국가들은 최빈개도국(LDCs) 또는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임.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 ODA의 약 31.4%(양자 및 다자 통합 기준) 점유

(단위: US$백만)

순 위	국 명	지원규모 (2002 – 03년 평균)	점유율 (2002 – 03 평균)
1	모잠비크	231	9.5%
2	콩고민주공화국	225	9.2%
3	탄자니아	67	2.7%
4	이디오피아	48	2.0%
5	튀니지	35	1.4%
6	기네비소	35	1.4%
7	아프가니스탄	33	1.3%
8	중국	33	1.3%
9	팔레스타인	31	1.3%
10	알바니아	26	1.1%
합계		764	31.4%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은 양자간 원조중 비율)〉

순위	국명 (1991–1992)	%	국명 (1996–97)	%	국명 (2002–03)	%
1	알바니아	10	말타	6	모잠비크	21
2	모잠비크	9	우간다	6	콩고민주공화국	20
3	튀니지	7	보스니아	5	탄자니아	6
4	중국	6	이디오피아	5	이디오피아	4
5	아르헨티나	6	요르단	4	튀니지	3
6	모로코	6	알바니아	4	기니아 비소	3
7	이집트	5	니카라구아	4	아프가니스탄	3
8	탄자니아	4	모잠비크	4	중국	3
9	이디오피아	3	아르헨티나	4	팔레스타인	3
10	전 유고슬라비아	2	콩고민주공화국	4	알바니아	2
합계		46		46		69

다. 지역별 지원현황 (양자간 ODA 기준)

· 2002–2003년 지역별 분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에는 72%가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63%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로, 9%가 북부 아프리카로, 10%가 아시아로, 7%가 아메리카로, 5%가 유럽으로, 6%가 중동으로 배분되었음

(단위: %)

지 역	1982 – 1883	1992 – 1993	2002 – 2003
유럽	12.1	10.1	5.3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9.0	16.4	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7	39.7	68.2
북중미	2.6	3.4	3.7
남미	5.6	11.4	2.9
중동	4.8	2.3	4.8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6	2.2	3.9
극동아시아	4.6	14.4	4.0
오세아니아	0.0	–	–
합 계	100.0	100.0	100.0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라.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양자간 ODA 기준)

· 최빈개도국(LDCs)에 68.4%, 중저소득국에 23.2%를 지원하고 있음

(단위: %)

지 역	1982 – 1883	1992 – 1993	2002 – 2003
최빈개도국 (LDCs)	60.1	39.0	68.4
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5.3	7.7	6.6
중저소득국 (LMICs)	22.4	44.7	23.2
고중소득국 (UMICs)	4.1	7.8	1.8
고소득국 (HICs)	–	–	–
MADCT'	8.1	0.8	0.0
합 계	100.0	100.0	100.0

주 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마. 분야별 지원현황 (2003년도)

· 원조의 많은 예산이 부채탕감(46.1%)에 쓰이고 있음(DAC 평균은 13%에 불과)

· 인도적 지원

– 긴급 인도적목적의 이니셔티브에 연간 EUR 1백만불(USD 13백만불)을 지원

– 개발협력국내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원조 담당부서인 Office VI에서 담당

▨ Office VI의 주요 업무

▷ 국제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긴급구호의 판별, 관리, 감독

▷ 농업지불기관인 Agricultural Payments Agency 와 협력하여 식량원조 실시

▷ 긴급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대사관의 회계감사

· 민간부문 지원(Private Sector Development)

▨ 지원 목적

①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이태리 중소기업의 개발경험 전수

② 이태리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민간부문 지원 필요

③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이태리 국내기업의 국제화에 기여

▷ 2002년 EUR 130 백만불(USD 170백만불) 지원(44개의 무상원조사업)

▷ EUR 130백만불의 연차관 지원

▷ EUR 7백만불의 이태리 기업의 외국 직접투자 실시

· HIV/AIDS 지원

–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ODA 지출액의 80%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됨.

– 주로 NGO, 이태리 국립보건기구,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

–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퇴치 이니셔티브', '결핵퇴치', 'AIDS 퇴치 이니셔티브' 등에 기금 지원

– 'AIDS, 결핵, 말라리아에 대항하는 세계기금(GFATM :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에 2001–2003년간 EUR 204백만불, 2004–2006까지 EUR 300백만불 서약

· 성, 청소년, 장애인 지원

– 2000년 개발협력국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Office XIII 설치

– 이태리 개발협력에서 여성문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주류화하는 시도

– 농업자원에의 접근성 향상, 중소 기업이나 금융 혹은 직업훈련에의 여성 접근성 향상 등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 소개
– 인도주의적 원조에 있어서 성문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의 성문제(Gender in Emergencies)"라는 안내서 발간

· 정보기술 및 전자 정부 지원

▩ 지원 목적

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향상, 민주적인 개발 촉진

② 외국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이태리 기술과학부는 개발협력국과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프로그램 실시

– UNDP, 유엔 경제사회부, Gateway 재단 등에 USD 16백만불 지원

◆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 부채탕감 46.1%, 사회 및 행정인프라 14.1%, 경제인프라 1.6%, 생산 2.3%, 긴급원조 6.9%, 다부문 6.4%, 프로그램 5.3% 등
– 경제인프라 분야는 10년전에는 24%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1.0%(0%)
	보건(기초보건)	5.0%(4.9%)
	인구	0.1%
	식수 및 위생	0.5%
	정부 및 시민사회	2.6%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3.9%
소 계		14.1%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0.6%
	에너지	0.2%
	기타	0.8%
소 계		1.6%
생산 (Production)	농업	1.5%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8%
	무역 및 관광	0.0%
소 계		2.3%
다부문(Multisector)		6.4%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5.3%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46.1%
긴급원조(Emergency aid)		6.9%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3.7%
기타(Unspecified)		13.7%
합 계		100%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9

5. ODA 예산 및 조직운영 동향

가. ODA 예산

· 총괄 현황

– 1990년 후반에 이탈리아 ODA는 감소하였으나, 2000년 peer review 이후 약간 증가함
– 이탈리아 ODA는 정부의 적자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형태
– ODA/GNI 비율은 2002년 0.20%, 2003년 0.17%로 약간 감소함
– 5%의 유상원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상원조의 형태
– 2000년 조건부원조의 비율 62%, 2001년 92%가 조건부 원조 등 대부분 조건부 원조임.
–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율이 매우 높음(약 50%)
– 중점 지원지역은 아프리카이나, 총 수원국은 2003년 118개국으로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많음
– 부채탕감이 전체 ODA의 약 50%를 차지하여 ODA 증가에 실질적인 요인이나, 2006년 부채탕감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조 지원방식 마련이 필요함.
– 2002년 바르셀로나 회담에서 2006년까지 총 원조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ODA의 113% 증액이 필요함

· 양자 및 다자간 원조

– 2002년 ODA의 양자간 원조비율은 DAC 평균인 73%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1998년 35%, 2003년 49%)
– 이태리는 DAC 회원 가운데에서 다자간 원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2000년 65%, 2003년 51%가 다자간 원조에 이용되었고, 2002년 DAC 평균은 27%임)

◆ 이태리가 다자간 원조에 의존하는 이유

① 거래 비용이 낮음

② 이탈리아의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

③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수행

④ 양자간 원조시스템에 대한 이탈리아 국내의 불신 등

◆ 다자간 원조의 지원처

– 총 ODA의 35%(다자간 원조의 70%)가 EC(European Commission), 8%가 UN, 1%가

세계은행, 1%가 지역 은행, 6%가 기타 다자기구에 지원됨

◆ DAC 평가

– 다자간 원조 예산계획시 성과 중심의 접근법 개발 필요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예산계획 필요

· 부채탕감

– 이탈리아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부채탕감을 적극 실천해 옴

– 1999년 '고부채채무국을 위한 이니셔티브(Enhanced Heavily-indebted Poor Country Initiative') 이후에 시민사회와 정당, 카톨릭 교회의 지지에 힘입어 2000년 법안 마련

– ODA에 관련된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적인 부채까지 탕감하였고, 중간 지불예정이었던 부채 또한 100% 탕감해줌

– 법률상 명시된 부채 탕감의 조건 : Good governonce, 전쟁의 포기, 빈곤 퇴치에의 의지 등

– 2002년 총 985 백만불에 이르는 부채탕감, 548백만불을 개발 활동으로 전환함.

◆ DAC 평가

– 부채의 탕감은 수원국이 빈곤위치를 위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을 공약한다면 MDGS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부채탕감에 추가적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원조없이 부채탕감만으로는 빈곤퇴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음

– 부채탕감의 증가는 새로운 ODA 자원 감소가 따르는 점을 감안, 지나치게 부채탕감에 의존하여서는 안됨.

나. 조직운영

· 외무부 개발협력국(DGCS) 직원 구성

① 직업 외교관들

② 임시직 파견 근무자(총인원의 29%) : 다른 부서나 공공 행정직에서 임시 파견자

③ 개발 전문가(계약직)

▨ UTC 에 있는 분야, 테마별 전문가

* 연합기술중심부(UTC : Unita Tecnica Centrale) : 개발협력국하에 있는 전문 부서

▨ 국제기구 종사 경력이 있고, 개발협력국의 주제별, 지역별 직위에 임명된 일반직 직원

▷ 직제정원 : UTC 전문가 120명, 일반직 직원 30명

▷ 현원 : UTC 61여명, 일반직 20명(UTC 직원의 98%가 45세 이상, 52%가 55세 이상의 고령)

– 인력운용상 문제점 :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음.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외교관과 임시직원은 빨리 교체되는 반면,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계속 남게 되는 약점이 있음

· 개발협력국의 직원수

– 2003년 448명(1993년 580명에서 감소)

– 프로젝트의 실행과 다른 실행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간의 기술적인 지원이나 준 전문가를 고용함.

– 원조규모면에서 DAC 회원국과 비교하여 절대 직원수가 부족하고, 향후 양자간 프로그램 확대에 대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 개발협력국내 각 부서들의 기능 〉

기 능	구 조
정책분석, 기획 및 통계보고	Office I 소관사항. 섹터별 정책, 원조자원 관련 기획 및 프로그래밍, 통계보고 및 데이터베이스, 연례의회보고,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공개 및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기금(Global Fund on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관련 업무
국제기구 및 EC와의 관계	Office II 소관사항. UN 및 관련 국제기구(자발적 기여 기획업무 포함), 그리고 EC와의 관계(이탤리-EC간 골격조약 실행 관련 외무부 유럽통합국과의 상호협조 업무 포함) 업무
수원국과의 교섭	Office III, IV, V 소관사항. Office III은 유럽, 지중해, 중동 지역, IV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V는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원조정책을 담당함. 각 office는 외무부 내 각 유관 지역국과 상호협조함. 특히 양자/다자/양-다자간 협정을 통해 공약한 국별 프로그래밍 및 자금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짐
긴급구호와 식량지원	Office VI 소관사항. 긴급구호 및 식량지원 기획을 통해 각종 人災 및 자연재해에 대처함(긴급구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포함)
이태리 NGO와의 관계	Office VII 소관사항. NGO 활동, DGCS가 마련한 자금이용 승인 및 허용, NGO 주관 프로젝트 공동재원조달, NGO와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NGO가 고용한 자원봉사자 및 외국국적 전문가들의 지위 등을 다룸
재정 관련기관과의 관계	Office VIII 소관사항. "재정관련 협력"사항을 다룸. 여기에는 민간부문개발, 국제수지균형 지원, 연화차관(soft loan) 및 부채탕감 조치 등이 포함됨
이태리 개발협력 교육 및 장학제도	Office IX 소관사항. 개발협력 이슈 및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이탈리아의 연수프로그램 자금 담당
법 무	Office X 소관사항. 입찰절차, 계약, 대정부소송 등과 관련된 문제에 법률자문 제공
정부조달	Office XI 소관사항. DGCS의 각종 사업 및 수원국에서 DGCS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 실행 담당
인 사	Office XII 소관사항. 기간제 계약직 인력 및 DGCS에 파견된 인력, DGCS의 개발협력 수원국 현장사무소 행정관리 담당
여성, 소수자 및 장애자 관련	Office XIII 소관사항. 수원국내 여성들의 활동 장려를 목표로 하는 각종 분석 및 정책제안, 개발협력 과정에서 소수자 및 장애자 보호 등 담당
기술자문	UTC 소관사항. 프로젝트 식별, 수립, 사정(appraisal),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원
품질관리	조정위원회 사무국 및 동 위원회 산하 기술평가유닛 소관사항

6. 프로젝트 집행 절차(양자간 프로그램)

· 프로젝트 승인 절차

– 개도국 주재 대사관에서 양자간 프로그램 요청

– 요청된 프로젝트는 개발협력국내의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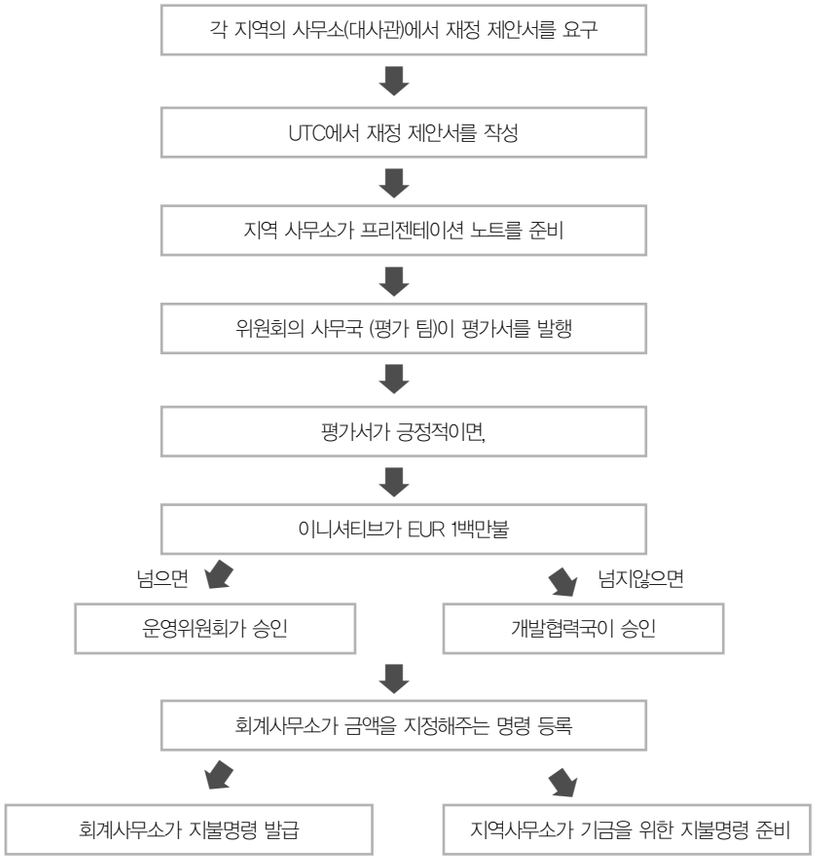
▷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심사를 거침

– 개별 프로젝트는 UTC에 있는 직원이 전담 :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개발전략과의 상관성 등을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프로젝트 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검토

–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상당한 기간 소요 : 최소 3년 소요

▷ 운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승인이 끝난 이후에도 예산회계 사무국(재경부 부속기관)에서의 예산 승인 기간이 약 6개월이상 소요

〈프로젝트 승인절차〉



7. 개발 정책 동향

· 개발정책의 일관성

–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내 이익집단 및 여타 정부기관과의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이나 농업분야에 있어 EC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안보 등에 있어서 EU의 입장 반영 등 정책일관성을 위한 국내외적인 합의 필요

– 특히 농업분야에서 EU의 공통된 농업 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유럽의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이는 개도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생존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태리 개발협력 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등에 영향을 줌

· 외국직접투자와 개발정책의 통합

– 외국직접투자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는 개도국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외국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 개발협력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통로를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이태리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개도국에 대해 합작투자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무상 대부 조건임

– 다자간 측면에서는 UNIDO, ITPO(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에 의해 지원함. ITPO는 재정 심사, 적합한 파트너 선정, 감사 등 각가 다른 투자 단계에 걸쳐서 개도국과 이태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음

· 이주(migration) 정책

– 지난 20년 동안 이태리는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가로 탈바꿈함. 이주는 OECD 국가들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됨.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총액은 국제개발원조 총액보다 많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이주자 본국의 가장 빈곤한 계층의 가구들로 전달되고 있음

– 2002년 이래로 이태리는 이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의 워크샵을 지원하고 있으며, IOM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2001년 이태리내의 이주민들의 송금액은 EUR 749백만불이며 송금액의 54%는 개도국으로 송금되었음

–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태리내의 아프리카 이주자들의 재정적, 인력자원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적, 경제적인 능력 강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임

· 비조건부(Untied) 원조

– 2000년 조건부원조의 비율 62%, 2001년 92%가 조건부 원조 등 대부분 조건부 원조임

– 이태리 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비조건부 원조를 하자는 DAC 권고에 서명을 하고, OECD와 EU내에서의 비조건부 원조를 통한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왔지만, 이는 국내의 비즈니스 분야의 저항에 부딪혀 옴

– 원조를 비조건부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이태리 원조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나, 이태리로서는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며, 한편에서는 원조의 효율성 증대 등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원조로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음

8. 2004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개발원조 정책

– 이태리는 G8의 선진국이며 EU 회원국으로서, 2003년도 OECD 중 7번재 회원국임. 2003년 총 원조액은 USD 2,433 백만불이고 GNI대 원조비율은 0.17%임. 2002년 바르셀로나 수뇌회담시 2006년까지 총 원조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하였음

– 이태리의 개발정책 관련, 현재의 개발 시스템과 절차의 개혁이 필요함. 특히 경영적인 측면은 너무 세세하지만 원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1987년에 제정된 개발원조 법의 개정이 필요함

– 개발원조 목적에 이태리 자국의 이익을 명시하는 좀 더 분명하고 공적인 접근이 필요함. 개발원조의 이익은 곧 공여국의 이익과 상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최근 DAC 몇 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함

– 개발협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외무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함. 현재 개발안건에 대한 정책 리더십이 4명의 차관들에게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외무부(개발협력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부족함

– 2000년 이후 문서화된 개발정책 발표가 거의 없었는 바, 개발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정책 성명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와 개발협력의 관계에 대한 투명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15년의 기한까지 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활동에 있어서 명확한 실행전략 마련 필요

· 원조배분 및 예산 집행

– 2002년 바르셀로나 회담에서 이태리는 2006년까지 GNI 대비 ODA를 0.33%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서약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질 ODA를 113% 증액시켜야 함. 아울러 지금까지 이태리 ODA 증가의 주요 요소였던 부채 탕감이 2006년에 만기되기 때문에, 상기 서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ODA 증액 계획이 필요함

– 이태리는 DAC 국가중 다자간 원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원조 수행결과에 기초한 피드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국가별 원조배분은 특정한 기준이나 혹은 성과 심의 과정에 입각하지 않음에 따라 명확한 원조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

– 지원분야별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야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집중 지원분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 성문제, HIV/AIDS, 빈곤 감소 등의 문제가 개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이슈들을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류화시킬 필요가 있음

· 원조관리 및 실행

– 외무부 내에서의 프로젝트와 예산 승인 절차의 복잡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예산기획이 단년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태리는 다른 DAC 국가들같이 원조 실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 실행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행결과의 피드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마련 필요

· 외무부 인력부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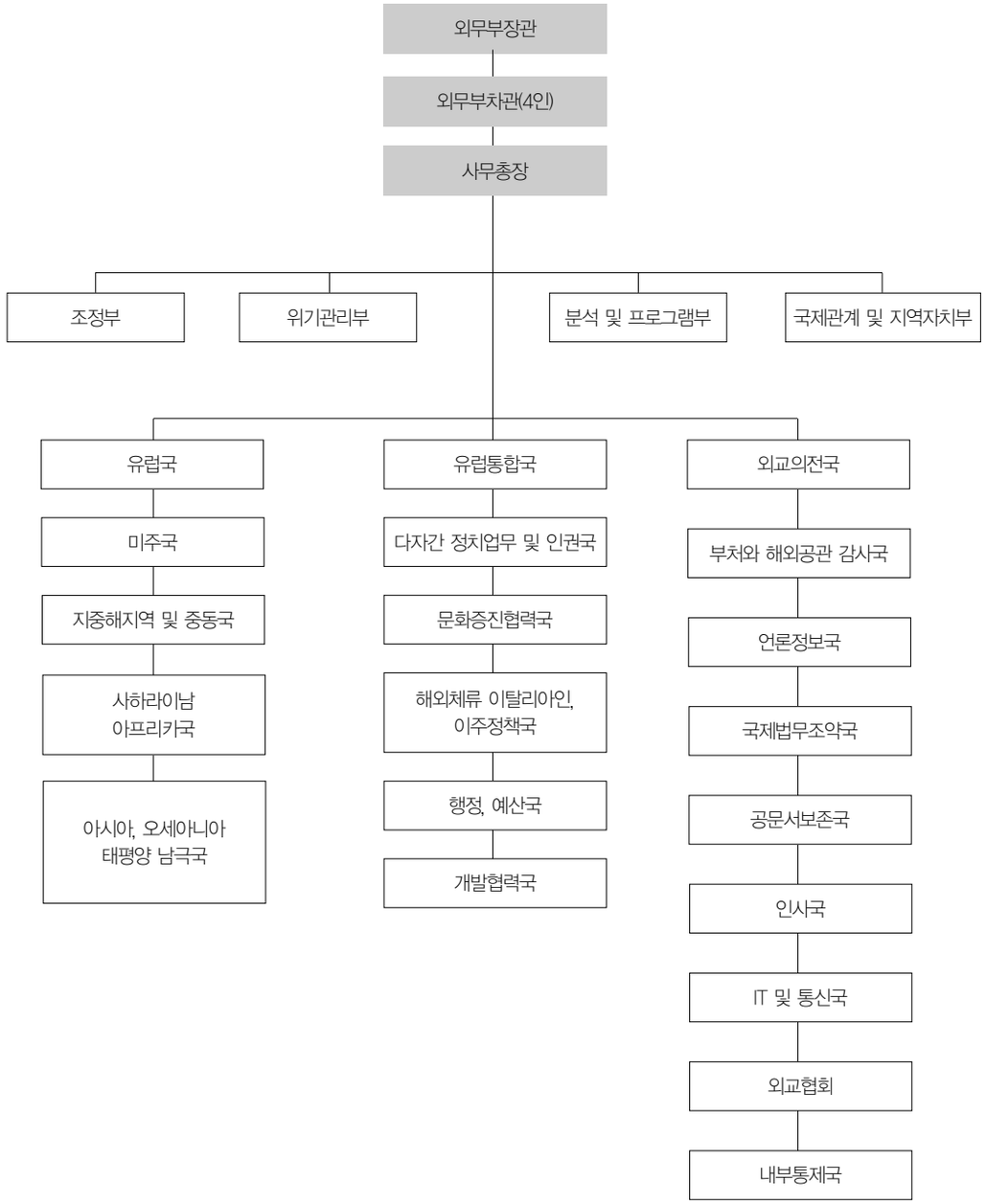
– 개발협력국의 인력 규모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기술 전문가들의 인원도 직제 정원의 절반밖에 채용되지 않음으로써, 비슷한 원조규모를 가진 DAC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구체적인 인력시스템이나 운용 계획 마련 필요

· 대국민 인식제고

– 2002년 90%의 국민이 개발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으나, 현재의 원조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표시하였음. 또한 이태리 NGO 들은 다른 OECD 국가의 NGO들과 같은 강력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감안, 원조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태리 외무부 조직도 〉



미국 USAID의 과테말라 원조동향

1. 대 중미 원조현황

가. 주요원조 방향

· USAID는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와 양자 차원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미 총본부는 지난 10년간 과테말라에 소재하였으나 '04. 7.1자로 엘살바돌로 이전
 – 코스타리카와 벨리즈는 사업규모가 적어, 현지사무소 미설치
· 중미지역에 대한 USAID의 지속발전 지원분야는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 개발에 집중
 – 중미인구 (37백만 명/인구증가율 2.6%)의 약 2/3가 최빈층으로 평가되고, 그중 50%가 벽촌에 거주
· 최근 10년간 USAID는 내전으로 피폐한 중미지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문민정부 설립 및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996년 과테말라, 엘살바돌, 니카라과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선거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
 – USAID는 평화협정 및 민간정부 자유선거 정착지원, 행정부 기관능력 강화, 사법부 개혁을 지원
· 2002년부터 부시정부는 미국 민간자본 및 국제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개발을 지원키로 약속 (향후 CAFTA와 연계)
 – 신규 투자업체 중미유치 및 지역 무역능력 강화에 초점

나. 국별 지원동향

(1) 과테말라

우선지원 분야는 평화협정 이행이며, 이외에 취약한 행정부 능력강화, 사법부 개혁, 인권보호, 벽지 교육 및 보건 강화, 환경보전,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 (2002년도 사업종료, 총사업비 28백만불)

(2) 엘살바돌

평화협정 준수, 정부 투명성 제고, 형사사법 강화, 신규 주민등록제도 개선, 보건위생 강화, 상하수도 설치 확대, 주요 3대 강(River) 환경보전, 2001년 지진피해복구 등

(3) 온두라스

경제정책 개혁, 중소기업 육성 지원, 비상식량 지원, 식수 및 보건환경 개선,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기초교육 환경 조성,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지원 (약 3억불 지원)

(4) 니카라과

민주주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외에 경제진흥, 보건향상, 교육강화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반 행정법 정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민 정치참여 장려, 일자리 창출, 모자보건 개선, 허리케인 MITCH 피해복구 지원 (1억불)

(5) 파나마

파나마운하의 보전 및 운영 지원을 집중지원

(6) 중앙아메리카 지역협력

USAID의 대 중미-멕시코 지역협력은 주로 무역자유화, 환경보존, AIDS 예방, 자연재해 예방, 빈곤 감소에 주력

(7) 국가별 지원규모 (2002년도 예)

(단위 : 백만불)

계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지역협력
285.8	$ 53.5	$121.5	$33.1	$22.4	$33.9	$ 8.5	$12.9

2. 대 과테말라 원조전략 및 동향

가. 미국의 원조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미국이 과테말라 원조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주요 외교통상적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미-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등 미국과 과테말라와의 동맹관계 강화

· 과테말라 총 수입의 40% 및 총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통상관계를 고려, 주요 무역 Partner 로서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 미국거주 과테말라인의 외국환 송금은 미국 내 주요 자금유통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 과테말라는 미국으로 유통하는 마약의 중간 거점지이자 미국 불법이민 중간 거점국가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

나. 주요 협력목표

USAID의 과테말라 지원 목표는 광의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나, 협의의 개발원조 목표는 3가지 임

① 좀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육성

② 경제구조 다변화 및 경제역량 강화

③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참여형 민주주의 발전
- 교육기회 확대
-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향상
-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식량안보 모색
- 자연환경 보존 및 바람직한 활용방안 강구
- 평화협정 실행 지원
- 허리케인 Mitch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

다. 지원형태 (Modality)

- 자금지원
- 기술협력
- 잉여농산물 유상지원 (PL-480 Ⅰ)
- 잉여농산물 무상지원 (PL-480 Ⅱ)
- 식량원조
- 인도적 지원
- 연수 (유능한 인재의 미국유학)
-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협력 (개발, 기술협력)
- NGO를 통한 무상협력 (개발, 기술협력)

라. 지원전략(2004-2008)

※ 동 지원전략은 2003년 12.17일 과테말라 사무소가 제출한 Country Plan을 USAID 본부가 승인함

(1)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수립을 위한 USAID 지원전략

· 현 실태

- 국가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 및 장치가 미흡한 과테말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및 시행령 마련이 시급
- 범죄, 토지소유권 분쟁, 인종차별, 인권보장에 대한 법률적 장치 및 이를 운영하는 체계가 매우 미흡 (과거 내전당시와 차이가 없음)
- 현 민주정권도 치안안정, 법치주의 실현, 합리적인 사법처리, 사회보장, 경제성장에 대하여 비효율적으로 대처
-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부운영은 정치권의 근시안적행태와 작은 이익의 집착 등 능력부족에 문제가 있으며,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방해하는 또다른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금징수를 적절히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국가재정 부족을 들 수 있음(국민의 약 10%만이 납세하며, 정치권이 부패하여 일반국민들도 납세의무를 회피)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사법권 강화

- 사법권, 정부당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범죄방지에 대한 기획력, 업무수행능력 강화 지원 (기술협력)
- 전문가 파견, 포럼, 콘퍼런스 등을 통한 정책대화 실시
- 관련인사 초청연수
-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마련 지원
- 인권 Ombudsman 기능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육성

- 정부권력 분권화 및 지방정부 육성 지원
-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기관능력강화 지원(기술협력 및 정책대화)
- 재정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운영시스템 전산화 지원(SIAF-Muni)
- 반부패 및 투명한 정부만들기 운동본부(국가위원회)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법무부에 반부패 감시조직 활성화 지원
- 시민단체 육성(정부감시)

(2) 개방적인 경제체재 구축

· 현 실태

- 과테말라는 천연자원, 문화자원 (마야), 기업환경 등은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및 재정 부족으로 이를 경제성장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2%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빈곤현상 초래
- 수출 및 수입은 GDP의 18%, 27%로 무역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민간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고, 이들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는데 있음
- 무토지 영농인들의 잇단 사유지 점령사태는 농업발전 및 전반적인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는 이러한 민간기업 및 영농현장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촌지역에 대한 사유지 점령사태 방지 지원
- 원활한 무역을 위해 세관 및 항만시스템 구축 지원
- 무역관세 환급에 대한 효율적 운영 지원 (부가세 포함)

◆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고부가 상품생산 기술지원
- 자연자원을 활용, 다양한 품종개발 지원
- 기업간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PL480을 통한 잉여농산물 제공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생능력 강화

◆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 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자금운용 능력 강화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 과테말라 미국교포들이 송금하는 달러를 산업육성을 통해 효율적 으로 활용함
- DCA(development credit authority)를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

(3) 보건 및 교육환경 개선

· 현 실태

– 과테말라의 보건환경은 중미국가 중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위생은 개선 속도가 매우 저조하고 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태임

– 유아 사망율은 39/1000명이며, 이는 중미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볼리비아, 아이티에 이어 3위로 높음(모자 사망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나, 무계획적인 출산도 심각)

– 43%의 여성만이 피임을 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중 2위) 보건위생 관념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긴요

– 과테말라 정부는 GDP의 2.5%를 교육예산으로, 보건예산으로는 1%만 책정(중미국가 중 최하위)하여 운영함으로서 정상적인 국가 보건교육 정책이 보장되지 못함

·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내용

◆ 사회보건 시설지원 강화

– 보건부 · 교육부 · 재무부 기관능력 강화지원

– 보건부 · 교육부 활동내용 평가 및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보건 · 교육 예산지원을 이한 국회와의 정책대화 실시

– 보건 및 교육시설 확충 지원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병합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 및 기초교육 강화지원

◆ 아동 및 임산보건 환경 개선

– 임산 및 유아 보건환경 개선

– 가족계획 확산

– 공중보건 시설 확충

– USAID 자금지원으로 보건부에서 NGO를 통해 기초보건환경 강화

[자료 : 주중미 사무소]

대페루 원조동향

1. 대 페루 원조 약속규모 및 지원금액

· 국제사회의 2002-2004년간 대 페루 원조 약속규모는 923.4백만 달러로 이중 2002년에 291백만 달러, 2003년에 216.5백만 달러, 2004년에 252.2백만 달러가 지원됨

– 미집행액 163.7백만 달러는 2005년부터 집행 예정

· 주요 원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카나다, 영국,스위스, 스페인 등이며, 이외에 이태리, 네덜란드, 중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지원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여타기구는 WB, WHO, WFP, UNFPA, EU, IDB 등임

(단위 : 천 달러)

국 명	2002년		2003년	
	사업건수	지원금액	사업건수	지원금액
미 국	7	217,435	26	137,449
일 본	10	9,850	48	15,952
독 일	29	11,145	27	10,895
카 나 다	19	7,000	15	6,700
영 국	7	5,850	8	6,348
스 위 스	24	4,772	23	7,172
스 페 인	21	4,866	26	4,622
네덜란드	20	1,508	12	9,588
핀 랜 드	4	2,560	7	1,085
한 국	7	960	6	2,077

※ 사업건수는 프로젝트 건수 및 사업형태별 건수를 포함한 것임.

2. 주요국가의 원조동향

· 미　국

– 1962년부터 원조를 실시한 이래, 1990년대까지 2,700백만불 지원

– 페루를 중점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주로 프로젝트, 차관, 봉사단 파견 위주의 사업 추진(평화봉사단 102명 활동 중)

– 중점 원조분야는 민주주의 강화 및 Good Governance, 마약 퇴치, 저소득층 경제활동 지원,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 교육의료여건 개선, 환경보호, 페루 · 에쿠아돌 국경지역 개발 지원등이며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민주주의 강화 및 Good Governance

▷ 사법부 기능 강화 및 제도 구축, 대 국민 법률서비스 기능 개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인권 보호

◆ 마약퇴치

▷ 마약재배지역 농가 기술지원, 마약 대체 작물 보급 지원

◆ 저소득층 경제활동 지원

▷ 영세기업가 및 소작농 재정 지원 강화

◆ 농촌 및 낙후지역 보건 · 교육서비스 개선

▷ 농촌 및 낙후지역 초등학교 운영 지원, 낙후지역 아동들에게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 여자 어린이 입학율(75%까지) 및 졸업율(61%까지) 제고, 전염병(말라이아, 콜레라, 결핵 등) 축소, 유아사망율 축소(1,000명당 39–>34/2006년까지)

◆ 환경보호

▷ 국가환경보호정책 수립 및 제도정비, 환경보호 관련 자문 및 기술교육,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페루 · 에쿠아돌 국경지역 개발 지원

▷ 페루 · 에쿠아돌 국경지역 의료 · 식수 · 위생서비스 개선, 국경주민(여성, 인디오)의 권리보호 및 존중

· 일　본

– 1977년 JICA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페루를 중남미지역 중점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유무상 협력사업 추진 중

– 1991년 3명의 전문가가 페루 테러조직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전문가 및 봉사단원 등 파견 인력 철수

– 1991년 사건 이후 1997년까지 주로 연수생 및 물자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8년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 원조분야를 선정함은 물론 프로젝트, 연수생, 차관 위주의 사업 추진(현재 연수생 수는 약 4천명에 달함)

– 중점 원조분야는 빈곤퇴치, 기초사회인프라 지원, 경제 인프라 개선, 환경보호로 각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빈곤퇴치

▷ 기초의료서비스 개선, 미 숙련 노동자 노동교육 실시, 여성개발 및 교육 등

◆ 기초사회인프라 지원

▷ 식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교육의 질 개선, 자연재해 방지 강화 등

◆ 경제인프라 개선

▷ 중소기업 지원, 지방지역 전기가설, 농산물가공 육성, 광물자원조사 등

◆ 환경보호

▷ 환경보호 지원 및 환경오염 퇴치 등

· 독　일

– 1975년부터 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페루를 중남미 지역 중점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주로 전문가,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추진(봉사단원 20명 활동 중)

– 중점 원조분야는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행정발전, 식수 및 위생시설 확대, 농촌지역 지속 개발 지원, 교육 및 보건의료여건 개선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행정 발전

▷ 대 국민 법률서비스 기능 강화

◆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확대

▷ 지방지역 식수공급 시설 설치 및 기술 자문

◆ 농촌지역 지속 개발(부존자원 보호 및 지속 활용)

▷ El Nino 재해 방지 및 복구, 자연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강화

◆ 교육 및 보건의료여건 개선

▷ 교사양성 및 교육여건 향상, 마약퇴치 및 1차 의료서비스 개선

· 캐나다

– 1997년 CIDA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페루를 중남미 지역 중점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주로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추진중

– 중점 원조분야는 기초사회서비스(교육, 의료, 식수, 위생) 제공 확대 및 질 개선, 부존자원 지속

활용,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 부문개혁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기초사회서비스(교육, 의료, 식수, 위생) 제공확대 및 질 개선

▷ 기초교육개선, 농촌지역 식수공급개선, 전염병 예방 및 퇴치 등

◆ 부존자원 지속적 활용

▷ 광물자원 효율적 이용 및 관련부문 개선

◆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개혁, 대 국민 법률서비스 기능 강화

· 스위스

– 페루를 중남미 지역 중점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주로 프로 젝트, 전문가파견, 차관 지원 중

– 중점 원조분야는 빈곤퇴치, 부존자원 지속 활용, 중소기업육성, 인적자원개발, 사회인프라 개선(식수, 위생), 농촌개발 등임

· 스페인

– 1986년부터 원조를 시작하였으며, 페루를 중남미 중점 원조대 상국으로 선정하고 주로 프로젝트, 차관 위주로 사업 추진(봉사단원 41명 활동 중)

– 중점 원조분야는 빈곤퇴치 및 성평등, 기초사회서비스 개선, 경제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인권존중, 페루에쿠아돌 국경지역개발 지원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빈곤퇴치

▷ 농업기술교육 실시, 관광육성

◆ 기초사회서비스 개선

▷ 성인대상 문맹 퇴치, 보건부 기능 및 제도 개선

◆ 경제인프라 개선

▷ 어업 및 양식업 지원, 기술개혁센터 연결망 구축

◆ 환경보호

▷ Arequipa지역 환경보호, 자연보호지역 주민 생활의 질 개선

◆ 사회참여 강화 및 제도 강화

▷ 아마존지역 및 안데스 산맥지대 원주민 인권존중 및 보호

◆ 사회분쟁 해결 및 평화정착 지원

▷ 페 · 에 국경개발 지역 개발 지원

3. 주요 국제기구 및 여타기구의 원조동향

· 세계은행

– 1952년부터 원조를 실시한 이래, 주로 인프라구축, 관개, 농업 개발을 집중 지원

– 2003-2006년간 920백만불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점 원조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부문 개발, 공공부문 개혁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국가경쟁력 강화

▷ 수출증진을 위한 Institution Building,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리마와 지방간 도로 건설

◆ 기초사회인프라 개선

▷ 농촌지역 교육, 의료, 위생여건 개선 및 식수공급 확대

◆ 공공부문 개혁

▷ 법률서비스 현대화 및 투명화, 지방 정부 및 행정기관 기능강화, 연금제도 개혁 등

· WHO

– 1949년부터 의료보건을 국가개발 기본조건으로 인식하고 원조 시작

– 소아마비, 천연두, 홍역 퇴치 및 영유아사망율 축소, 산모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 현재는 국민건강 증진, 환경오염 방지 및 의료보건여건 개선, 전염성 질병 퇴치, 주택여건 개선, AIDS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원 중

· WFP

– 주로 저소득 계층, 농촌, 낙후지역 주민 및 학교에 무료 급식 및 영양 제공에 중점을 두고 NGO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안데스산맥 3개주 인디오 지원(수혜자 : 90,000명)

▷ 지역 주민 영양, 위생여건 개선 및 수입증대, 초등학교 건립

◆ HIV/AIDS 감염자 지원(수혜자 : 1,000명)

▷ 감염자 가정 어린이 및 여성에 무료 우유 제공

◆ 5개주 어린이 무료 급식 지원(수혜자 : 200,000명)

▷ Ayacucho, Apurimac, Huancavelica, Piura, Tumbes 지역 초등학교 무료 급식 제공

· UNFPA

– 1972년부터 원조를 실시하였으며, 2001-2005년간 생식건강 및 인구와 성장전략 부문에 중점을 두고 20백만불 지원 예정

– 지난 30여년간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증진, 성평등 및 여성권 익신장, 초중등학교 성교육 도입, 인구성장과 국가개발전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동 부문을 지원 예정

◆ 가족계획 및 규정 수립, 생식 건강 교육 및 관리 모델 개발

◆ 49,000명의 교사 및 3백 만명의 청소년에 성교육 실시

◆ 인구 집중 억제 및 분산 계획 수립, 지방 개발계획 수립 지원

· UNDP

– 1957년 원조를 시작한 이래 주로 차관 제공 및 전문가 파견

– 중점 원조분야는 민주주의 강화 및 Good Governance, 빈곤퇴치, 환경보호 및 에너지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원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민주주의 강화 및 Good Governance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선거관리 공공행정 현대화

◆ 빈곤퇴치

▷ 전국차원의 인간개발지수 조사 및 대량 고용 프로그램 수립

◆ 환경보호 및 에너지 개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개발 및 보호정책 수립 지원

◆ 정보통신기술 지원

▷ 정보통신망 확충 및 대민 정보지원 서비스기능 강화

· EU

– 페루를 중남미지역 중점 원조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1990년대 600백만불 지원

– 중점 원조분야는 빈곤퇴치, 인권강화 및 정부현대화, 생산부문 현대화, 환경보호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빈곤퇴치

▷ 낙후지역 보건, 교육여건 향상 및 국민건강 개선

◆ 인권강화 및 정부 현대화

▷ 민주주의 정착 및 사법행정 강화, 중앙정부기능 축소

◆ 생산부문 현대화

▷ 경쟁력 강화 및 민간기업 육성 지원, 교통 · 운송 인프라 현대화

◆ 환경보호

▷ 아마존 지역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원, 인구성장 및 산업화와 부존자원 지속 활용 추구

· IDB(미주개발은행)

– 1961년 차관을 제공한 이래 2004년까지 6,130백만불 차관 제공

– 중점 원조분야는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기초사회인프라 구축, 정부 현대화 및 중앙정부기능 축소 등으로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국가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지방의 생산 인프라 확대, 농업개발 지원 및 가축위생 개선

◆ 기초사회인프라 개선

▷ 농촌지역 교육, 의료, 위생여건 개선 및 도로건설 지원

◆ 정부 현대화 및 중앙정부 기능 축소(지방정부 기능 강화)

▷ 지방 정부 및 행정기관 기능 및 제도 강화, 조세행정제도 및 회계제도 개선

[자료 : 주페루 사무소]

대스리랑카 원조동향

1. 세계은행

세계은행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자조교육 프로젝트"는 그 동안 스리랑카 내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특정인이나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수행되면서 지원금 오용이나 낭비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소득증대 방법들을 도입하며 리더쉽 양성 프로그램과 재정운영, 자영업 운영 등을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계은행은 이 사업에 5천만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정부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일본

일본정부는 스리랑카에 대한 36번째 장기저리 차관으로 266억 3,100만엔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 이번 차관은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재건 및 향상 프로젝트 2차 사업", "소규모 기업 운영자 향상 프로젝트 2차 사업", "환경친화적 해결(산업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 2차 사업" 등 동북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JICA가 파견한 「신 마남피티야 교량 건설 사업」의 기본설계 연구조사팀이 1개월간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동 사업의 적정성 평가 내용과 기본 설계도 초안을 스리랑카 도로청에 제출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2005년 1월에 제출 예정임. 290m 길이의 현재 다리는 중북부 주에서 동부의 바티칼로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동북부 주요지역인 폴로나루와와 암파라 지역에서 마하웰리로 가는 주요 접근로로 현재도 많은 교통량이 있고 앞으로도 교통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80여년 전에 건설되어 매우 낡고 비좁은 상태임

3.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지방 전기화 사업에 2천만불의 무이자 장기차관을 제공함. 이번 차관은 스리랑카 전역 268마을의 43,5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며, 중소산업에 대한 전기공급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번 사업은 2007년 중반기에 완료될 예정임

4. 독일

독일 기술협력청(GTZ)과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스리랑카 어업수산자원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프나 지역 3개 수산 공판장 지원 사업이 출범함. 이 사업은 내전으로 파괴된 북부지역 어민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독일정부가 64백만 루피(약 64만불)를 지원함

5. 중국

중국정부는 스리랑카의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루피(약 5백만불)를 무상공여함. 이 중에서 5천만 루피는 가뭄 피해 복구에 사용되며, 나머지 4.5억 루피는 향후 양국 정부의 결정을 거쳐 제반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으로 문화, 관개(시설), 지방 전력화 사업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함

6. 기타

영국의 의료봉사단체인 "Inter Plast"가 Rajapakse 재단의 초청으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에서 10.17-31간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성형수술 활동을 전개함. 이번 봉사활동은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영국, 독일, 미국 등 6개국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의사는 스리랑카 2명을 포함하여 9명이었음

[자료 : 주스리랑카 사무소]

쓰나미 재건복구지원 동향

인도양 해일경보 / 경감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결과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주최로 2005.3.3-8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표제 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불한국대사관 최은옥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광순 선임연구원 참석)

1. 핵심 내용

· 2004.12.26 인도양의 해일 대참사 이후, 지진과 해일의 영향에 관한 아세안지도자 특별회의(2005.1.6, 자카르타), 재난감축을 위한 국제회의 (2005.1.18-22, 일본 고베), 해일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장관급 회의(2005.1. 28-29, 태국 푸켓) 등이 개최된 데 이어,
 - 표제회의는 유네스코 국제해양학위원회(IOC)가 중심이 되어 인도양지역 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된 첫 전문가 회의임
· 이 회의를 통해 인도양 국가들의 해일 경보/경감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도양 해일 경보/경감 시스템' 의 설계 ·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음과 같이 '인도양 해일 경보/경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금년 4월의 2차 전문가회의와 6월의 IOC 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
 - 시스템 구축 전단계에서는, 태평양 해일 경보 · 경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양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고,
 - 2006년까지 인도양 지역 전체를 측정계와 해저센서로 연결하는 지역경보 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일경보시스템을 구축함

2. 회의 주요 내용

가. Matsuura 사무총장(개회사)

· 각 국 해일 경보센터로 활동할 national agency 지정 등을 통한 협력망 구축과 해일 위험 측정을 위한 연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 인도양 해일 경보시스템은 세계 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의 첫단계이며,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 2002)의 촉구로 향후 10년내 구축 예정인 세계 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과도 연계될 수 있는 강점이 있음을 강조함

나. 주요 발표내용 및 논의

· 인도양지역 해일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1)기술적 측면, 2)운영조직, 3)인식제고 및 교육훈련의 3개 주제로 나누어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 · 국가센터 등에서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소개하고 인도양 해일경보 시스템 구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음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진 및 해수면 변화 등 위험요인 탐지, 위험정도의 평가 및 분석, 위험경고메시지 전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는 위험경고메시지 전파와 관련하여 최신 IT 기술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새롭게 개발한 T-DMB(Territo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식을 소개하였음
· 운영조직 측면에서는 각 국의 시스템과 지역시스템 및 전세계시스템 연계의 중요성과 관련정보 상호교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세계시스템 또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결국은 각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국의 자국민에 대한 전파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었음

다. 주요 추진 방안(안) 권고

· IOC 총회에서 인도양 해일 경보 및 경감시스템을 위하여 인도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정부간 조정기구(ICG/IOTWS)를 구성 (타지역 국가는 옵저버로 참여)
 - IOC 사무국이 ICG/IOTWS의 사무국을 겸함
·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 경보발령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국민에게 해일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 훈련함으로서 해일 경보발령시 행동요령을 전파함. 이를 위하여 국내 해일경보센터 설립하고 focal point를 지정
· 측정시스템, 위험관리, 경보(전파)시스템을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임시 워킹그룹을 구성하도

록 IOC 사무국에 권고하고, 그 추진 경과를 4월 2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함

· 임시조치로, 태평양해일경보센터(PTWC)와 일본기상청(JMA)에서 인도양지역 국가들에 해일 정보를 제공

 – 각 인도양지역 국가는 2005.4.1까지 이 정보를 받을 곳을 정하여 등록함

· 각국 해일재난 경감 프로그램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이 중요

3. 향후 일정

· 제2차 전문가 회의(2005.4.14-16, 모리셔스 Port Louis)에서 추가 논의

· 2005.6.21-30 IOC 총회(유네스코 본부)에서 확정

4. 관찰 및 평가

· 표제회의는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게 인도양 해일경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전문가 회의로,

 –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의 세계해일경보체제협의체(ITSU)를 중심으로 국제해일 정보센터(ITSC), 세계기상기구(WMO), 세계해양기구(IMO), 세계지진기구(GSN) 등 관련 국제기구와 각 국 기상청, 기상연구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소개하고, 인도양시스템 구축에 고려해야할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음

· 금번 회의 소요비용은 일본에서 제공하였으며, 그간 해일경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지역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인도양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시스템구축 전의 임시단계에서는 태평양경보시스템에서 인도양 지역에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태평양해일경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 금번 회의를 통해 인도양 해일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안)은 마련하였으나, 소요비용의 추산 및 조달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IOC 사무국측은 이를 위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위험경고 메시지 전파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T-DMB(Territo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기술을 소개하였음.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이사국이며, 세계해일경보체제협의체(ITSU) 회원국으로서, 향후의 인도양 해일경보시스템 구축 추진과정에도 IT 분야 신기술 전문가 뿐만아니라 해일 관련 분야 관계관 및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가 요망됨

[자료 : 주프랑스 대사관]

스페인의 남아시아 해일관련 지원활동 설명회

스페인 외교부는 1.25(화) Salarich 아태국장 주재로 아태지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 남아시아 해일 관련 주재국 정부의 지원활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스페인 정부의 지원현황

· 외교부, 산업통상관광부, 내무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총 6810만 유로 상당의 지원을 실시 또는 추진중

2. 스페인 외교부의 지원활동

· 스페인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처(ACEI)는 현재까지 420만 유로 상당 지원

 – 5회에 걸친 구호품 수송(100만 유로 상당)

 – 피해지역에서 활동중인 스페인 NGO 들의 Emergency Plan 자금 지원(200만 유로) 약속

 – UN기관(UNHCR, UNICEF 등)을 통한 자금지원(100만 유로) 약속

 – 추가 구호품 수송(20만 유로) 예정

3. 스페인 외교장관의 피해지역 방문 및 추가지원

· Moratinos 외교장관은 지난주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 현지 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피해복구 및 지원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

 – 태국 방문시, 피해복구 재건 신속화, 관광객 신뢰 증대를 위해 세계관광기구 집행위를 해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 협의

· 상기 3개국 방문시 510만 유로의 추가지원 결정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중인 스페인 NGO들의 Emergency Plan 및 신규 복구 프로젝트 지원(3백만 유로)

 – 인도적 목적 국제기구 지원(2백만 유로)

 – 피해지역 수산, 공예, 관광, 소규모 금융지원 사업발굴 지원(10만 유로)

4.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활동

가. 정부기관

· 산업통상관광부 5천만 유로, 내무부 2만 유로(검시관 4명 태국 파견), 국방부에서 780만 유로 규모지원 예정

나. 지방자치단체

· 각 주정부에서 200만 유로 지원

5. 향후 계획

· 금번 설명회에서 Salarich 아태국장은 금년 여름 이전 Zapatero 총리가 피해국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초반경 아태지역 대사들을 초청하여 피해국가지원에 대한 의견교환, 스페인이 준비중인 대아시아정책(Action plan for Asia-Pacific)의 priority 재검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 : 주스페인 대사관]

인도네시아 재건복구사업관련 공여국 동향

1. 인도네시아 재건복구지원

재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World Bank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다자간신탁기금에 의한 지원방식에 대해 공여국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가 2005. 2. 17(목) 자카르타소재 World Bank 사무소에서 개최되었음. 이와 관련 공여국들의 동향은 아래와 같음

2. 공여국 동향

·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은 양자간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다자간사업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의사를 표명함. 특히 일본은 다자간신탁기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음

· 유럽국가 중 소액 공여국과 EU 등은 일단 다자간신탁기금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 표명함

· ADB, UNDP 등은 과거 경험상 다자간 재원조달에 의한 공동사업이 기금모금 등 여러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었음을 지적함

· 각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공히 다자간신탁기금 방식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활발하게 발표함.

- 재원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 필요(Accountability, Auditing)
- 공여국별로 약속한 기금의 실제 지원이 지연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 가능
- 사업추진 관련 시스템, 법제도, 관행 등이 서로 다르고 재건, 건설의 표준이 서로 다른 공여국간의 조화, 조정이 필요하며 Sector별 조정, 양자간/다자간 조정도 필요함. 또한,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사업과는 달리 인니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상당히 존중할 필요
- 다자간신탁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BAPPENAS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사진 작성단계에 기금 공여국들의 적극 참여 필요

[자료 : 주인니 대사관]

스리랑카 재건복구사업 동향

1. 주요동향

가. 대통령 재건사업 착수시기 발표

· Kumaratunga 대통령은 오는 3.1(화)부터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 정부, 지방 및 국제기구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

· Kumaratunga 대통령은 주의회 및 지방의회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제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에 17억불, 주택재건에 3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Mahinda Rajapakse 수상도 지진해일 피해로 약 10만채의 가옥을 새로 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긴급 구조단계를 지나 국가재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라고 말함

나.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건사업 참여동향

(1)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 IDA는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북 · 동부지역의 주택 재건사업에 4년에 걸쳐 75백만불을 지원하여 4만 6천채의 주택을 건설키로 함(동 사업의 총 소요액 77백만불중 2백만불만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

· 동 사업에는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토지소유권 회복, 건설노동 인력훈련, 토지분쟁 해결, 사회 및 환경영향 평가, 민간사업 기술검사,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사업도 포함될 것임

·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팀이 북 · 동부지역 8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북 · 동부 주의회내에 설치될 "북 · 동부 주택재건 사업단"이 각 사업팀을 관장하게 될 것임

(2) 이태리정부

· 이태리정부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4개 구역내 19개 학교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기로 함(2.15 MOU 체결)

- 지원 대상 학교 : Batticaloa 2개교, Trincomalee 8개교, Ampara 4개교, Galle 5개교
- 사업내용 : 교실 이외에 컴퓨터학습센터, 실험실, 예체능실, 도서관, 운동장, 교직원실 등
- 지원내용 : 전문가팀 파견, 자재 및 장비, 학습용 기자재 지원 등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문가팀에 의해 수립될 것이며 6개월 내에 계획수립이 완료될 예정

· 이태리정부는 상기 학교재건사업 이외에 수산분야, 북동부 및 남부지역 재건사업 지원을 위해서도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진해일 피해 국가에 대한 이태리정부의 총 지원 약속액 150백만 유로중 80~90%가 스리랑카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짐

다. Galle시 종합확장계획 발표

·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 지진해일 피해가 심한 Galle시의 종합확장계획이 2.14(월) 발표됨

◆ 계획요지

- 신시가지 경계의 확대
- 100m 완충구역 규정의 엄격한 적용
- Galle 역 및 버스정류장 이전
- Mattegada 50에이커 부지에 Galle 스포츠 단지 신규 조성 및 인근 최초 의 민간 공항 조성
- Gintota강 유역을 주변의 관련시설을 포괄하는 '학습회랑'으로 조성
- 과거 화란 감옥건물을 세계 최초의 감옥호텔로 개장
- 쇼핑센터를 Galle 도심에서 200m 내부로 이전 조성
- Unawatuna를 남부주 관광센터로 전환
- Galle항을 국제 요트 계류장으로 개선

◆ 금번 확장계획은 Galle시를 제2의 상업 및 행정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어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 주스리랑카 대사관]

필리핀 천년개발목표(MDGs) 2차 진전보고서 발표

다음은 필리핀 정부가 2.16(수) 발표한 천년개발목표(MDGs) 2차 진전보고서(Progress Report)의 주요 골자임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 절대빈곤인구는 2000년 33%에서 2003년도 30.4%로 감소

· 필리핀의 빈곤은 전체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농촌이 심각하며, 빈곤률은 농촌이 36.3%, 도시가 12.7%이며,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취학 이전 어린이의 체중미달이 2001년 30.6%에서 2003년 27.6%로 개선되었으나, MDGs 목표인 2015년까지 17.3%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치 수정 필요

·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가정이 2000년 78.5%에서 2003년 80%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표치인 87% 수준 도달 예정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03-2004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는 13백만명이며, 6-11세 아동의 취학율 90.1%, 졸업율은 66.9%이며, 문자 해독율은 93.9%로 동남아에서 가장 높음 (남 : 93.2%, 여 : 94.6%)

3. 성평등

· 여성이 남성보다 취학율 및 졸업율이 높음

· 2003-200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율은 여 82.6%, 남 80.9%임. 졸업율은 초등학교 여 66.9%, 남 57.8%, 중등학교 여 63.7%, 남 48.77%임

4. 아동 사망률

· 아동사망율은 1993년 1천명당 34명에서 2003년도 29명으로 감소

· 5세이하 영아사망율은 93년도 1천명당 54명에서 2003년도 40명으로 감소

5. 모자보건

· 산모 사망률은 감소추세이며, 의료인 보호하의 출산율은 98년도 56%에서 2003년도 60%로 호전

6. HIV/AIDS 및 질병

· AIDS 환자는 2000년도 1,451명에서 2004년도 2,200명으로 증가 비공식 HIV 감염자는 1만명으로 추산되며, 환자의 33%가 해외근로자임

·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율은 98년도 10만명당 72명에서 2003년도 48명으로 감소

· 결핵은 6번째 사망원인 질병이며, 결핵 사망률은 95년 10만명당 39명에서 2001년 38명으로 감소

7. 환경보존(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필리핀은 농촌의 빈곤 만연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훼손이 심하며,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 (현재 52,000종의 생물 서식)

· 강우량은 많으나 1인당 물소비량은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임

8. 주택

· 2002년도 전국적으로 588,853가구가 불법가옥(squatter)임. 정부, 민간, 국제구호단체 등에 의해 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9. 무역 및 재정

· 필리핀은 ASEAN 회원국과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일방적(Unilateral)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시행중임

 - 2002년 917품목, 2003년 268품목의 원자재, 중간자재, 자본재에 대해 1%의 관세 적용
 - 특별 경제구역(SEZs)에서 생산된 상품의 필리핀내 반입시 특별인하관세 적용
 - 평균 관세율은 2002년도 6%에서 3004년도 7.5%로 인상

· 정부부채는 2003년 3조 3600억페소(약610억불)로 GDP의 78%, 정부세수의 5배를 초과함. 또한, 정부부채 및 공기업 채무로 인해 공공부문 적자는 GDP의 5.5%임

· 낮은 납세율로 재정적자가 악화됨(세수/GDP는 97년도 19.44%에서 2002년 14.32%, 2003년

14.6%로 하락)

·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긴축재정 운용

– 2005년도 부채원리금 상환이 정부예산의 33.2%임. 이로 인해 보건, 교육, 사회안전, 복지, 고용, 주택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입이 제한되어 MDGs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 2009년까지 평균 7-8%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기본적인 빈곤과 실업 구제가 가능할 것임

– 2010년까지 평균 7%씩 성장시 실업율은 8.9%로, 빈곤율은 17.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MDGs 달성을 위한 재원은 지방정부, 사회단체 등의 적극 참여 유도와 ODA의 활용, 민간기업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

10. 전반적 관찰 및 평가

· 금번 필리핀 정부의 MDGs 진전 2차 보고서 발표는 필리핀 정부가 MDGs 달성 및 아로요 정부의 10대 과제와 중기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은 인구의 30.4%가 절대빈곤층, 특히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이 심각한 바, 향후 필리핀에 대한 원조는 빈곤퇴치와 연계된 농촌개발과,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IT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리핀의 잦은 테러 발생 등을 감안, 테러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 주필리핀 대사관]

베트남 원조동향

– Aid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

Ⅰ. 개요(Summary)

·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원조의존성이 높은 국가는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음.
 – 베트남은 총GDP의 6% 정도에 상당하는 유 · 무상 원조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국가 채무는 경제성장률 및 유상원조(차관) 상환조건의 우호성 등을 감안 시, 주재국 정부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차관조건은 베트남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제한된 원조자금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내 · 외적인 요구에 처해 있음

· 이와 관련, 고려해야할 측면은 합리적인 ODA 지원 Modality를 취사선택하는 것임.(①Project Funding, ②Direct Budget Support)

· 베트남 중앙정부 또는 각 부처에 대한 직접 예산지원(Direct Budget Support)은 매우 빠른 재원의 분배 및 집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효율적인 직접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회계 제어시스템과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 선결조건임. 대부분의 베트남 정부부처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반면, 프로젝트 지원은 소비되는 재원에 대해 좀더 면밀한 제어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재화와 용역의 지원에 대한 공여국의 엄격한 조건과 해당 프로젝트 및 환경 등 관련 기준에 의해

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집행의 지연현상이 발생됨

·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시키고 공여국 자체의 통일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시도의 유형은 ① 특정 공여국 주관하에, 통일된 절차 아래 관리되는 공동재원의 활용, ② 여러 공여국들 공동의 노력에 의한 체계적인 원조조화를 위한 시도임

·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내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베트남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조달, 환경가이드라인 등을 공여국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개선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당분간 상기 두 가지 ODA 지원 Modality는 대안으로서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임
 – 프로젝트는 중요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지니고 있으며 예산 직접지원은 국제사회와 정부사이의 정책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임

· 절차적인 조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의 조화인데, 공여국의 지원에 있어 관련 활동의 반복, 원조기재와 목적사이의 부조화 그리고 정책일관성의 부족으로 원조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여국들은 베트남 주도의 개발전략에 일치(alignment)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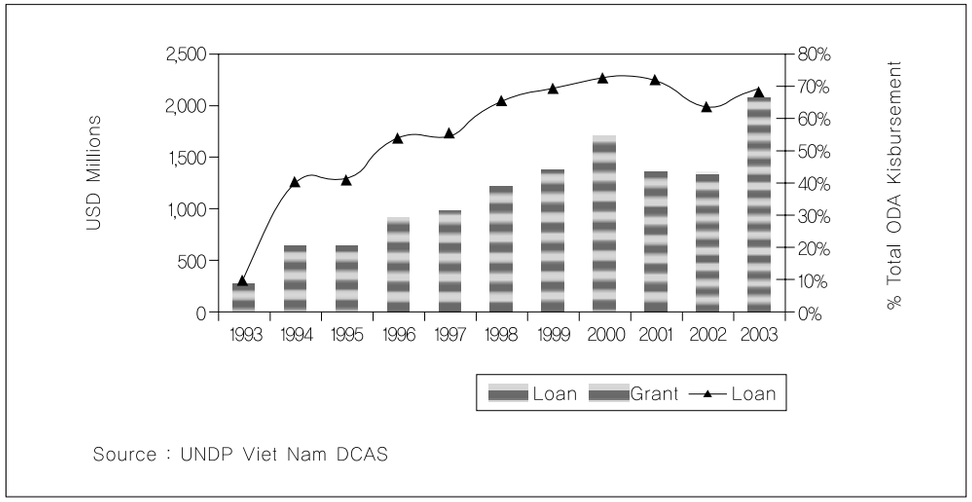
· 이러한 베트남의 개발전략이 장기적인 성장 및 포괄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야심찬 개혁을 목표로, CPRGS(Compreha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 베트남의 PRSP)[28] 에 기초하여 구축된다면, 다음 차수(2006-2010)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원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정기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차기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는 현재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CPRGS(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전략)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빈곤의 기준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빈곤감축에 좀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임

28) In May 2002, the Prime Minister of Vietnam approved 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CPRGS), which was presented to the Board of the World Bank as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on 2 July 2002. The strategy was the outcome of a highly consultative process, which was managed by an inter-ministerial committee head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Ⅱ. 원조규모(Aid Volume)

· 베트남은 최근 주요 ODA 지원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94~'03년 원조액은 약속기준 226억불 및 공식 합의 211억불 기록
 – 이러한 공여액은 절대적 기준상 큰 규모이지만, 베트남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로 판단

〈참고 : ODA to Vietnam-집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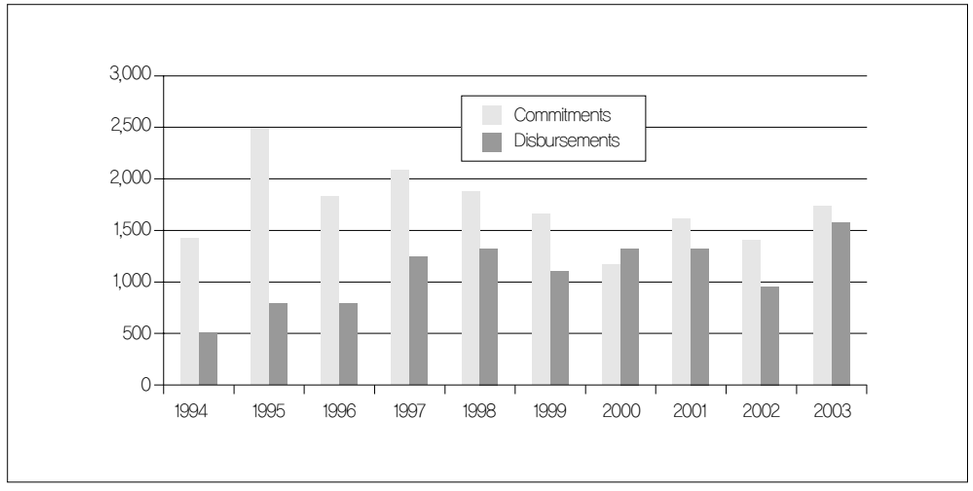


자료 : UNDP Vietnam

· 대략적으로 연간 25억불 지원 기준, 연 ODA 지원액(commitment기준)액은 GDP의 6%, 공공지출의 24%, 그리고 수입액의 10%를 차지함. 베트남 정부가 강조하듯이 원조는 베트남 정부의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재원은 아니라고 평가될 수도 있음

· ODA 자금 흐름 중, 일부는 주재국 정부에 의해 상환될 필요가 없는 무상자금으로 1993-2004년 총 무상원조는 42억 달러에 이르고 나머지 169억 달러는 차관자금에 해당(차관자금 중, 105억 달러 정도를 실질 집행)

〈참고 : ODA to Vietnam〉



자료 : OECD/ DAC

· 이러한 차관 자금은 매우 양허적인 조건인데, '94년 이후, 평균 유예기간은 10년 정도이며 평균 이자율은 연간 1~2% 사이인 것으로 분석됨
· 2006-10년간 대베트남 ODA 예상치는 150억불(실제 활용액은 120억불), FDI 유입액은 180억불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를 경제성장 및 빈곤 감축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
 – 현재 향후 OD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ODA Masterplan 작성중

Ⅲ. 올바른 지원기제(The Right Instrument)

· 프로젝트 재원은 전형적으로 도로 및 교각건설, 컴퓨터 네트웍 구축 등과 같은 매우 가시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용역과 재화의 구매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어 지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확실한 감독체계가 필요함
· 상기와 같은 관련 체계가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어야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산출물을 통해서나 이를 통한 역량제고 및 전시효과 등을 통해 개발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음
· 예산지원은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PRSC)[29]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분야별 접근방법(Sector Wide Approach)에서와 같이 매우 실용적인 분야별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은 ODA 자금을 직접적으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또는 관련 부처(Line Ministries)에 전환시켜 주재국 정부 스스로가 그들의 필요와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짐
· 예산지원은 보통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방향을 변화시키는 정책변화의 맥락에서 제공되어 짐. 예를 들어 PRSC 프로세스는 SOCB의 개혁, SOE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제공, 교육분야 등에 대한 예산 증가 등을 측면 지원해 왔음. 이와 같은 방법과 연관되어진 추가적인 정부예산의 지출은 이미 PRSC를 통해 직접 지원된 재원의 양을 초과했음
· 무상과 유상원조는 ODA 재원의 집행을 위해 이러한 2가지 방법(프로젝트 및 예산지원)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인프라 분야의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차관을 통해 지원되어 지며 NGO의 지원에 의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는 무상기반으로 지원되기도 함
 – 한편, 일부의 경우는 유상 및 무상이 혼합되어, 제 공여국들과 합동으로 지원되어 지기도 함
· 같은 경향이 예산지원의 방법에도 적용되어 짐. 베트남에서 PRSC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조화롭게 수혜되고 있음. 이러한 운영은 세계은행 차관으로서 공식 처리되어짐. 그러나, 많은 수의 공동 재정지원자가 이러한 과정의 준비에 동참하는데 그들 중 몇몇 기구(ADB 및 JBIC)는 ODA 차관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은(CIDA, DANIDA, DFID. European Commission)은 무상의 형태로 기여
· 공여국들은 적절한 예산회계 기재가 부재하고 부패, 낭비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직접적인 예산지원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함. 프로젝트 지원은 이보다는 더욱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고 그의 성과가 구체적이라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자금은 용도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지원과 예사지원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됨
·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 지원과 예산지원의 장점을 단순하게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할 수 있음.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이러한 두 가지 ODA Modality는 대체되기 보다는 상호 병행되어져야 함
 – 자금이 집행되어지는 방법보다는 개발효과가 더욱 중요함. 프로젝트는 모범관행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분야에서 이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은 공여국사이의 정책 메세지에 대한 조화가 충족될 경우, 주재국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29) IThe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PRSC) is a CAS-based development assistance instrument, supporting an IDA-eligible country's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 program to help implement its poverty reduction strategy. The PRSC is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Over time, it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vehicle of IDA financial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with strong programs, anchoring the Bank's overall support for thei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These interim guidelines will be kept under review and revised, as necessary, in light of the early experience with PRS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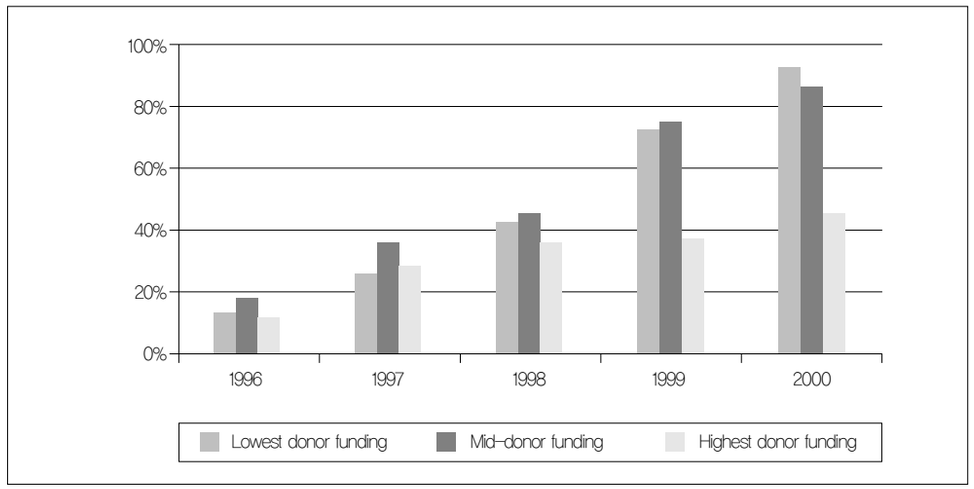
Ⅳ. 절차의 조화(Harmonization of Process)

·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ODA 재원의 집행이 베트남에서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그 결과, 개발성과의 도출이 지연되며 전시효과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취약한 능력을 더딘 집행의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 다른 개도국들 또한 매우 취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보다 더욱 빠른 ODA 자금 집행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더욱 놀라운 것은, 공여국 재정지원이 없는 순수 상업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더욱 원활한 집행현황을 보인다는 사실임. 71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교에서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총예산 대비 ODA 재원에 의해 점유되어지는 점유율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공여국 재원의 비율이 낮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집행 및 완료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참조 : Project Implementation with and without Donor Support〉



자료 : Vietnam Development Report

· 이러한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속도의 차이는 분야별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상위 3개의 공여국 지원에 의한 재원 점유율이 높은 프로젝트는 수자원 및 상수도 분야에 지원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닌 것으로 평가됨. 하위 3개의 프로젝트는 다수의 교통분야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는 베트남 정부가 현재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 이러한 집행속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함

·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집행속도의 차이는 공여국측의 매우 까다로운 집행 절차적인 면에 관련되어 짐. 특히, 재화와 용역의 구매 등이 그것인데 이와 관련된 절차들은 사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공모와 횡령 등을 최소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각 공여국들은 조달, 재정관리, 감사, 환경기준 등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공무원들이 이러한 다양한 각국의 규정에 능숙해지는 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국가들이 함께 재원의 Pool을 만드는 것임. 그리고 그들 중 한 국가의 규칙 아래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공여국들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임. 그래서 준수해야 할 규칙과 관련 문서들이 통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데, 현재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Harmonization Initiative"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실행시키려는 노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함

〈참조 : The Harmonization Action Plan〉

Based on the Rome Declaration of 2003, the government of Vietnam and the donor ommunity are jointly working to prepare a harmonization action plan, and to develop the local capacity required to implement it.

Streamlining is a key component of the plan. Donors are harmonizing their procedures with an ultimate objective to align to government systems. This involves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by specific donors, utilization of new aid modalities such as joint financing mechanisms or delegated cooper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by donors from headquarters to country offices.

It also involves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five development banks: ADB, Agence Francaise de Developement (AFD), JBIC, KFW and the World Bank. The focus of this cooperation is to establish common procedures for project preparation, procurement, financial management, environment and social safeguards and portfolio management.

International NGOs, which jointly disburse more than 10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Vietnam, have also made notable progress in harmonization. Being more flexible than other donors in their procedures, they have been able to adjust to the rules of their Vietnamese counterparts. Overall, slow disbursement is not seen as a major issue by the NGO community.

The training of government officials, so that they can operate more effectively under the streamlined procedures, is another main component of the harmonization action plan.

A Comprehensive Capacity Building Program (CCBP) has been set up. This program is funded by the LMDG, by the government of Japan (through a grant managed by the World Bank) and by the government of Vietnam. The main goals of the CCBP will be to review Vietnam's framework for aid management, to identify capacity shortcomings, and to codify lessons learned.

· 이를 통해, 결국 베트남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메카니즘 등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강화시켜, 공여국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임
 – 즉, ODA 프로젝트에 있어서 집행지연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넘어서 최선의 관리체제(Good Governance)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

Ⅴ.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 내용의 조화)

· 절차적 조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용의 조화임. ODA 재원은 재정지원, 인센티브, 기술지식 및 정책 어드바이스 등을 통해 베트남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그러나, 공여국간 때로는 같은 공여국에 의한 영역 중에서도 해외원조의 효과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조화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활동영역의 중복, 상충되는 인센티브, 적절하지 못한 기재와 목적의 조화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중의 하나임
· 조정(Coordination)의 실패는 매우 빈번하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이들중 몇몇의 경우는 공여국의 내적인 문제임. 매우 복잡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디자인을 개발해 한번에 여러 개발이슈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과로, 한 영역에서의 활동들은 결국 다른 영역의 활동을 침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주도의 정책 구성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각 공여국과 팀의 핵심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단순 명백한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한번에 적정한 개발이슈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조화를 통해 원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해외원조를 베트남 정부의 개발전략과 일치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최근 CPRGS는 많은 공여국들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줌. 이를 통해 우선분야를 파악하게 되고 각 공여국들은 그들의 지원을 조정시킬 수 있게 됨.
· 어떠한 정부전략도 완전한 것은 없다고 가정할 때, 베트남의 PRSP인 CPRGS 도 마찬가지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5개년 계획이나 다른 여타의 개발문서와 비교할 때, CPRGS는 빈곤해소 및 여타 베트남 개발목표를 광범위하게 달성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CPRGS는 매우 명확한 분석과 광범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필수적인 정책개혁 지침을 선별해 내었음. 아울러, 기획과 예산절차 사이의 연관성을 구축한 바 있음

· 주재국 연구원들 및 정책 집행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공여국과 그들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팀에 의한 공동 분석작업은 매우 중요한 조정의 도구가 될 수 있음
 – 베트남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전략의 준비 및 정책의 평가 등이 하나 또는 여러 공여국들과 주재국 정부, 대학 연구기관, NGO등과 협의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The Public Expenditure Review-Integrated Fiduciary Assessment, the Evaluation of HEPR and Program 135"는 이러한 조정의 본보기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시켜, 결국 공여국과 주재국 정부의 조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다음 연도(2006~2010)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이 CPRGS와 같은 원칙과 절차를 반영하여 수립된다면 2006-2010년 동안 ODA 활동을 위한 주요 조정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사회는 사회경제 개발계획이 매우 야심적인 변혁 프로그램을 담는다면 이 계획에 집중할 것임. 이를 반영, 주재국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완성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완수할 개혁의 차세대 발판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Ⅵ. 시사점

· 결론적으로, ODA 재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등을 차기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일치시켜야 함. 공여국 지원 프로젝트는 보통 개발목표에 대한 평가 지표를 포함하며, 예산지원은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야 하는 정책 또는 성취되어야 할 성과와 관련, "Triggers"를 규정함. 원조효과(Aid Effectiveness)는 프로젝트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공여국 측에 의해 부여된 지표와 트리거들이 베트남 정부의 개발목표 및 대상과 일치할 때 분명하게 증진될 수 있음
· 이상의 베트남내 ODA 정책동향 등을 고려, 아국 무상원조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대베트남 KOICA 협력사업 추진방향 및 관련 절차(Country Program, Sectoral Approach, Demand Survey...) 등을 상기 언급한 ODA Trend와 일치(Alignment)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베트남의 발전 잠재력,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 양국간 과거사 문제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뒷받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최소 1천만불('05년 : 8백만불) 규모로 대 베트남 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 '99–'03년간 일본의 대 베트남 ODA는 총29.2억불 (유상:22.3억불/ 무상: 6.9억불)이며 우리는 97백만불(유상: 68백만불/무상: 29백만불)임(약 1/30수준)

▷ 우리의 경제규모, 일본을 포함한 선진공여국의 대베트남 지원현황 (2004년 원조동향 기보고내용 참조)등을 고려하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경제협력 기반강화, 주재국내 ODA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KOICA 무상원조 사업 중심의 가시적인 협력사업 확대가 긴요함

[자료 : 주베트남사무소]

원조공여국 회의결과

베트남 2004년 원조공여국 회의

I. 핵심 내용

1. 회의 주요결과(12.1–2, 하노이)

가. 28개국 및 약 20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한 금번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과제,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집중 토의함

-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아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빈곤계층의 감축을 위해 향후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2006–10년)작성시 빈곤감축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베트남내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국영부문간 공정한 게임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통합기업법 제정 및 반부패 조치 등 법제도의 정비가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나. 베트남의 WTO 가입추진과 관련, 참석자들은 최근 EU의 대 베트남 양자협상의 완결을 평가하는 동시에, 저소득 개도국인 베트남이 과거 유사한 국가의 가입 협상시 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함

다. 원조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 이슈도 금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는데,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 해당국 경제개발계획에 일치하는 원조제공(alignment), 원조제공 절차의 단순화(streamlining) 등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됨

라. 한편, 각국 및 국제기구가 서약한 내년도 대 베트남 ODA 공여액수는 사상 최대치인 총 34억불에 이르는 바, 이는 작년 대비 약 6억불이 증가한 액수임

2. 관찰, 평가 및 건의

가.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는 1993년 창설된 이래 10여년간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베트남의 주요 경제, 사회 이슈들을 망라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바, 베트남을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동 회의를 통해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 추이와 성장전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업진출 확대방안, ODA 공여 방향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 베트남 관계증진을 모색중인 관계부처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회의 직후에 베트남과 양자 ODA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망됨

나. 베트남 정부는 향후 국영기업(SOE)의 개혁, 금융부문의 개방 및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있어 우리의 축적된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관련된 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경험전수에 관해서는 재경부(KDI)의 Knowledge Partnership 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원조의 조화 문제는 최근 국제 ODA 분야에서 떠오르는 주제이고, 내년 3월 파리에서 제2차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라.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 추진과 관련, 현재 EU를 위시해서 싱가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베트남과 양자협상을 타결한 상태인 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인 우리로서는 베트남과의 중장기적인 실질협력 확대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양자협상을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II. 원조공여국 회의 주요 결과

1. 회의 개요 및 개회식

가. 참석 현황 : 28개국 개발장관 또는 현지 대사, 20여개 국제기구 대표, NGO 대표, 베트남 정부 부총리, 기획투자부 장관, 각부처 차관 및 실무자 등 총 300여명

- 금번 회의에는 헝가리와 아일랜드가 최초로 참석

나. Vu Khoan 부총리는 개회식에서 최근 베트남 경제의 성장추세를 평가한 후, 향후 완숙한 시장경제 건설을 위해 국영기업 개혁작업 가속화, FDI 및 ODA 재원의 효율적 활용, 자본시장 발전, 과학기술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WTO 가입 및 2006년 AFTA 이행을 앞둔 지금 산업경쟁력 제고, 경영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함

2. 2001-5년간 경제사회 개발계획 추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가. 경제적 성과 평가 및 추후 과제

(1) Vo Hong Phuc 기획투자부 장관의 발제 요지

- 베트남은 최근 연평균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고, 산업구조도 2005년에는 농업 19%, 제조업 42%, 서비스 39%로 개선될 전망인 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시현
-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중
- 차기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는 현재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CPRGS(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전략)를 포함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빈곤의 기준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빈곤감축에 좀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
- 2006-10년간 대 베트남 ODA 예상치는 150억불(실제 활용액은 120억불), FDI 유입액은 180억불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를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 (현재 향후 OD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ODA Masterplan 작성중)

(2) 주요 토의 내용

·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히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성장의 전망이 매우 양호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추후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국영기업(SOE)의 개혁과 금융부문의 체제정비를 지적함
 – IMF 및 세계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당장 SOE 및 금융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동 작업의 시급성을 강조
 – 내년 중간년도 원조공여국 회의(6월, Can Tho시 개최 예정)에서 동 추진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
· EU는 차기 5개년 계획서에 빈곤감축, 경영환경 개선(level playing field 조성), 반부패, 법치 및 인권개선(언론자유 포함), 환경보호 등 5개 핵심이슈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을 표시함
· 여러 참석자들은 성장의 규모와 함께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빈부격차 해소,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산업경쟁력 제고 등에 좀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중부 고원지대 거주 소수민족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하고, 자국 ODA의 절반 정도를 동 문제해소에 활용할 계획임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 정부의 개발 노력을 평가한 후, market forces의 강화,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이 베트남 경제의 향후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증진, FDI 유치 확대, 금융체제 발전, SOE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3) 베트남 정부의 주요 반응

· Vu Khoan 부총리는 우선 SOE 개혁과 관련, SOE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영/민영의 구분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개혁의 질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함
 – 아울러 조세제도 개선, 금융시장 육성,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부문 개혁작업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
· 아울러 Khoan 부총리는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빈곤감축을 위해 "135 program"이라는 정책이 시행중임을 언급한 후,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베트남 내에 500여개의 신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의 문제는 각국 상황에 맞는 수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함

(4) 참고사항 : IMF 대표가 발표한 최근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전망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성장률은 약 7.5%, 인플레는 약 9.5%, 경상적자는 GDP의 4.5%, 외환보유고(2003년말)는 56억불 기록 전망
 – 그러나 경제내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인플레 압력은 상존하는 바, 정부의 물가억제 및 재정긴축 등의 조치는 계속 필요
· 대형 국영은행의 주식화 등 SOE 개혁조치는 아직 추진속도가 느린 상황
· 2005년에도 베트남 경제의 성장세는 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인플레는 5-6% 수준에서 억제될 전망
 – 단,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 쿼터 폐지에 따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임으로써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중장기적인 지속성장 및 빈곤감축에 있어 경제구조 개혁이 관건인 바, SOE 개혁, 민간부문 육성, WTO 가입, 가버넌스 및 정책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

나. 빈곤감축 및 사회부문 발전 성과와 과제

(1) 기획투자부 전문가의 발제 요지

· 2001-5년간의 주요 사회적 성과와 문제점
 – 2005년까지 750만개 고용창출, 7% 이하의 빈곤가계 비율, 청정수 공급률 62% 등 달성 전망
 – 낮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 빈곤감축의 추세 불안정, 보건상태의 취약,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 미흡 등 문제점 상존
· 2006-2010년간 사회부문 목표와 과제
 – 8백만개 일자리 창출, 빈곤가구 25% 감축, 청정수 공급률 90%, 18백만 국민에 사회보험 제공 등 추진
 – 이를 위해 사회부문 투자 확대, 교육 및 보건의 질 개선, 사회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아울러 차기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은 CPRGS를 융합하여 입안할 계획
· HIV/AIDS 통제 및 예방 조치 중점 추진
 – 2003년말 기준 HIV 감염자 수는 약 215천명
 – 현재 매년 2-3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추세인데, 신규 감염자의 60%가 20-29세 연령
 –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감시, 교육, 감염자 보호, 치료제 보급, 수혈 안전조치 시행, 국제협력 등 적극 전개 예정

(2) 주요 토의 내용

· 빈곤감축과 관련, 산간지역 주민 및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며, 농촌개발, 직업훈련, 보건 및 교육투자의 중요성도 지적됨

· 12.1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다수의 참석자들은 에이즈 퇴치문제가 심각한 개발 이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의 정책을 평가한 후, 원조공여국간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에이즈 퇴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편, WHO 대표는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역사적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한 후, 현재 에이즈 보다 훨씬 심각한 범지구적 전염병(pandemic)의 징후가 조만간 실제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지금(그리고 그 진원지는 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지금) 이에 대비한 보건투자 및 경각심이 매우 긴요하다고 경고함

다. 차기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주요 방향

· 베트남측의 차기 5개년 계획 입안방향에 대한 설명에 대해 캐나다, 영국, 덴마크, EU,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은 공동작성한 paper를 통해 동 계획안이 i) 성과지향적인 것이어야 하고, ii) 포괄적인 빈곤감축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iii) 일반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고, iv) 계획과 예산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v) 민간부문의 역할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5개 희망 원칙을 발표함

3. 베트남의 WTO 가입 및 도전

가. 베트남 Vinh 무역차관의 최근 경과 설명 요지

(1) WTO 가입협상 현황

· 그동안 8차례 가입작업반 회의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WTO 협정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및 입법일정안을 제출한 바, 회원국들은 지난 6월 8차 작업반 회의시 차기 회의부터 작업반 보고서 초안을 토의하기로 합의

· 지난 4월 제출한 최근 양허안은 평균 18%의 상품관세, 10개 부문(92개 sub-sector)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현재 EU, 싱가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양자협상을 완료했고, 약 15개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중

(2) 현재 직면한 과제와 난관

· 법제도 완비를 위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 숙련 인력의 부족 등이 큰 문제

· 국내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국제분쟁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WTO 가입 이후 상당한 시련에 처할 위험성 다대

· 개방에 따라 국내 노동, 자원의 비교우위가 감소하게 되면 해외투자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FDI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성 점증

(3) WTO 가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개선

· 수출증진 정책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무역정책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 국내 법제도를 완비함과 동시에 WTO에 관한 대국민 홍보 노력 전개

나. 주요 토의 내용

· 우선 EU는 지난 10월 대 베트남 양자협상이 조기 타결된 데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EU가 베트남의 우선순위 정책목표 달성에 협조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유럽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협상의 결과는 매우 "balanced"된(EU측이 요구사항을 대폭 낮춘) 것이었다고 강조한 후, EU로서는 베트남의 SOE 개혁작업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어 EU는 협상타결에 따라 베트남의 섬유산업에 대한 대 EU 수출 쿼터는 철폐될 것이라고 첨언(베트남은 내년 MFA 소멸 혜택을 못 받는 국가 중 하나지만, EU는 대 베트남 섬유쿼터를 폐지 예정)

· Oxfam(NGO) 대표는 베트남의 WTO 조기가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과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와 교육, 사회안전망 정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후, 협상국들로서는 베트남을 같은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베트남에 대해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요구(extortion at the gate)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영국, 세계은행, 호주 등은 베트남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WTO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문제에 관해 협력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현재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WTO 가입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 작업 진행

· 우리는 베트남의 WTO 가입이 다자 무역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기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조기에 양자협상을 타결짓도록 추진중이라고 언급함

4. 베트남의 국제경쟁력 강화

가. 베트남 경영환경 개선

(1) Vietnam Business Forum 대표(IFC 대표)의 최근 회의결과(11.29) 발제 요지 (VBF는 베트남내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 및 업계가 공동참여하는 회의로서 원조공여국 회의 직전에 개최되며, 공동의장은 기획투자부 장관 및 국제금융공사(IFC) 현지 대표가 맡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베트남의 비교우위는 지리적 위치, 확대되는 시장, 정치적 안정성 등
-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부패척결, 현대적 경영기술 도입, 인프라의 질 향상, 자본시장의 육성, 공정한 게임의 룰(level playing field) 정립 등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베트남의 최근 베른협약 가입을 환영하나, 강력한 법집행 미흡, 관대한 처벌 관행, 부처간 공조미흡 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 다대
-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 정부는 i) 기업들이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도록 권고 내지 강제할 필요가있으며, ii) 국제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규모 SOE를 투명성 있게 주식화(equitize)해 나가는 것이 필요
- SOE, 민간기업, 외투기업간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과 관련, 통합기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동 법이 모든 SOE를 예외 없이 규율할 수 있기를 기대

(2) 주요 토의 내용

- 다수의 참석자들이 베트남의 경영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함
- 호주는 베트남이 WTO 가입 이후 MFN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이에 대해 베측은 별도의 답변을 안함), 미국은 인권 및 종교의 자유 개선이 FDI 유입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함
- Phuc 투자기획부 장관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후, 동 일환으로 최근 기획투자부 내에 기업들의 소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별도의 조직("MPI i", 감사처)을 신설했다고 소개함

나. 반부패

- 베트남 감사원 대표는 현재 베트남의 부패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투명성 증진,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효율화, 일반시민의 반부패 인식 제고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언급한 후, 현재 아래와 같은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함.
 - 반부패법, 공무원 탄핵법, 공직자 재산 공개법, 공직자 행동 규범 등
- 덴마크 등 수개 유럽국들은 베트남내 부패가 너무도 심한 수준이라고 성토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일본은 반부패 법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스웨덴은 베트남내 부패의 현황과 대응처방을 담은 보고서 작성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함
- 태국은 공공부분의 부패 문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수뢰 문제도 동시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5. ODA의 효율성 제고 : 원조의 조화

가. 원조효율성 파트너쉽 그룹의 최근 보고서 발제 요지

※ 파트너쉽 그룹은 원조공여국과 주재국 정부간 소규모 협의체인데, 각 주제별로 현재 24개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며, 원조효율성 그룹은 MPI 국장 및 일본 대사관 측이 공동의장

- 원조조화의 3개의 축인 ownership, alignment, streamlining 모든 면에서 베트남 정부 및 공여국의 정책에 큰 진전 시현
- Ownership 측면에서 베트남 정부는 파트너쉽 그룹 형성 등을 통해 공여국과의 효율적인 공조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ODA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중이며, 행정조직도 개선했는 바, 앞으로 법제 완비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ODA 법제는 "Decree 17"(2001.5 제정)로 대표되는데, 다른 투자 및 건설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ODA 재원의 다기화에 따른 규율 대상의 확대 문제 등이 대두되어 현재 개정 작업 진행중

- Alignment 측면에서도 개발계획 수립시 공여국과의 협의 메커니즘(원조공여국 회의 등)이 구축되어 있고, 상호협의를 거쳐 "ODA Master Plan"이 작성되는 등 양호한 상태
- Streamlining과 관련, 최근 다수의 공여국들간 공동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원조공여절차도 단순화되는 추세이나, 아직 충분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나. 주요 토의 내용

- 다수의 참석자들은 베트남의 ODA 수원 정책과 프레임워크가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하하면서, "Decree 17"의 개정, "ODA Master Plan"의 작성을 환영함
 - 아울러, 내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2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에 베트남의 모범사례가 충분히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
- 한편 수개국은 지방 및 소외계층에서도 ODA의 혜택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마

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여국 차원에서는 원조제공 방식을 간소화하는 streamlining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Phuc 장관은 완전히 투명한 ODA 절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공여국의 원조절차 단순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고유한 관행과 절차가 있는 만큼 베트남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6. 각국 및 국제기구의 2005년 대 베트남 원조 서약

· 총계 : 34억불
 – 작년 서약액(28억불) 대비 6억불 증가
 – 동 증가액중 1.7억불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기인하며, 1억불은 금번 처음으로 합산되는 NGO의 서약액
· 주요국 서약액
 – EU : 총 722.5 백만 유로(작년 대비 37% 증가)
 – EU 회원국 중 프랑스 334.4 백만 유로(작년 서약액의 3배), 영국 80.5 백만 유로, 덴마크 51.6 백만 유로, 독일 48 백만 유로, 이태리 40.3 백만 유로, 스웨덴 36.9 백만 유로, 화란 29.5 백만 유로, 스페인 27.9 백만 유로, 벨기에 28.5 백만 유로, EC 24 백만 유로, 핀란드 10 백만 유로 순
 – 일본 : 총 9억불(유상 8억불, 무상 1억불)

· 우리는 지난 13년간 베트남의 인프라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어 총 228 백만불의 ODA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원조를 지속할 것으로서, 내년의 경우에는 총 24백만불 상당의 유무상 OD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K. Rohland 금번 회의 공동의장(당지 세계은행 사무소장)은 내년 원조서약액의 큰 폭 증가는 유로화 및 엔화의 가치상승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협력의 의지가 점증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강조함

7. 폐회 세션

· Phuc 장관은 금번 회의가 향후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 및 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한 관점을 다수 제기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경제개발계획 작성 과정에서 성장의 질 개선(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제반 개혁 추진(SOE, 금융부문 개혁, 민간부문 육성), 사회이슈 개선(교육, 보건, HIV 퇴치, 벽지 및 소수민족 빈곤감축) 등 3가지 이슈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베트남의 WTO 가입과정 및 그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내년 중간연도 원조공여국 회의(6월, 잠정적으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Can Tho시에서 개최 예정)에서 금번에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Khoan 부총리는 원조서약액이 커서가 아니라 실질 논의의 내용 면에서 금번 회의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하고, 현재 개원중인 국회에서 금일(12.2) 베트남 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직접 대정부 질의응답 세션에 나섰는데, 거기에서도 토의내용은 성장, 사회이슈, 반부패, 행정개혁 등 금번 회의 의제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소개한 후, 베트남의 경제사회 개발, WTO 가입, HIV 퇴치 등 제반 이슈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함

[자료 : 주베트남 대사관]

중국 제5회 공여국 회의

1. 회의개요

가. 회의일시 : 2004.12.7(화) 09:00~17:00
나. 회의장소 : 북경 중원호텔
다. 개최배경 : 상해 세계 부빈감소 확산 회의 후속
라. 주최부서 : 중국 상무부/국빈판
마. 회의주제 : 1) 빈곤완화 2) 서부 지역개발 3) 동북공업지역재개발

2. 핵심내용

· 상해 "빈곤완화 확산 국제회의"의 후속 실무회의로 "제5회 개발협력에 관한 원조공여국 조정회의"가 세계은행, UN 등 국제기구와 영국(DFID), 일본(JICA)등 양자협력기구 및 중국의 주요부처, 각 성, 시의 국장급 등이 참석함
·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ODA 수혜국 졸업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있는 가운데 개최된 동 회의는 중국 서부지역의 전통적인 농촌 빈곤문제 외에 동북지역의 도시 빈곤문제와 아울러 AIDS, 교육 등 비소득 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발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UN이 정한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을 논의,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요 발표내용

가. 상무부 대표(易小准 상무부 부장조리)는 2003년 1인당 평균 소득 1,000달러에 달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중저소득국로서 현재 절대빈곤 인구가 2,900만명에 달하고 있고,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격차와 빈곤문제, 에이즈 등을 민감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 빈곤현황의 심각성을 설명함. 아울러 환경보호와 질병예방 및 사회복리 제고 등 각 방면에 걸쳐 중국정부는 선진 원조공여국과의 국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 국무원 부빈 대표(王 · 良 부주임)는 중국정부는 지난 80년대에 빈곤감소 사업을 개시한 이래, 90년대에는 서부지역 개발사업을, 2004년에는 동북공업지역의 경제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 20여년의 扶貧 사업을 통해 2억명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14만8천개 진현 단위의 생활, 생산조건이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빈곤회귀 현상(2003년에 1,460만명의 빈곤 해결이후 자연재해등 문제로 1,540만명이 다시 빈곤상태 회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 빈곤 문제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다. 이어 국무원 부빈사무실 吳忠처장은 상해 회의의 후속조치를 보고하면서, 중국정부도 2004년 5월 상해 회의이후 중국 國際扶貧中心을 설립하는 등 빈곤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빈곤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서 빈곤층이 자연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분산 거주해 있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등 중국 빈곤상황의 특성을 설명하고, 최근 중국의 빈곤감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함('90년대 이전 매년 1,370만명 감소, 2003년에는 80만명 감소). 아울러 현재 중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의 원조보다 빈곤측량기준과 정책경험 및 기술의 학습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중국국제빈곤센터의 설립취지라고 밝힘

라. 세계은행 대표(Dr. David Dollar)는 국제 빈곤기준(U$1/day) 적용시 중국 빈곤문제는 심각하다며(6,000만명의 빈곤인구), 현재 중국이 보다 긴요한 것은 공여국으로부터의 원조금이라기 보다 중국 정부의 빈곤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이라고 언급하고, 중국 빈곤 감소사업에 있어서 NGO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마. 이밖에 UN대표(UNIDO소속)는 중국은 빈곤규모가 세계 1위라고 언급한 뒤, 향후 도시와 농촌, 지역간, 사람과 자연, 국내발전과 대외개방간의 조화발전이 중국이 맞게 될 새로운 도전이라고 언급하고, 중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성적 차별, 지역 격차 외에도 MDGs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빈곤문제의 해결이 긴요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아울러 EU대표는 근래 중국이 질병, 교육 등 분야에 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등 중국 빈곤문제의 변화에 비추어 지속적인 국제원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3년전에 7명에 불과했던 주중 EU대표부 인력이 현재 50명으로 급증하였음을 예시하며 EU와 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확대를 언급함

– 또한, 양자원조기관의 대표로서 발언한 호주(AusAID)는 '99년부터 개시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위생,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필요성을 언급함

바. 국가 서부개척사무실 대표(童章舜 처장)는 중국은 국가경제 투입의 1/3을 서부개발에 할애하고 있으며, 서부개발의 주요사항으로 농업발전과 인력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지난 5년간 750억위엔(미화 91.4억불)의 투입으로 생태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생태환경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ODA 졸업이 원조의 중단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사. 국가 동북지역 진흥사무실 대표(陳建宗 처장)는 동북 3성지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원재료 공급처로서 많은 기여를 했으나(원유생산 전국의 2/5, 목재공급 전국의 1/2), 동북 36개 공업도시 중 20개 도시가 자원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최근의 경제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도시 실업(전국 도시 빈곤 인구의 1/4인 약500만명의 도시 빈곤층 발생)과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아. 상무부 대표(柴小林 부사장)는 중국은 그간 희망공정(250만명의 아동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과 세계은행과의 소액융자(Microfinanc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80년대 3억명이던 빈곤인구가 현재 2,900만명으로 감소되어 매년 약 1천만명의 빈곤인구가 감소해왔다고 밝히고, 현재의 빈곤문제는 도시빈곤과 실업, 빈부격차 등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맞고 있다고 밝힘

자. 아울러 회의 당일 오후에 진행된 참석자간 토론에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시 NGO간의 활동도 유익하나 중국 정부를 통한 활동이 원조 효과면에서 우월하고, 동북지방은 빈곤문제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인구통계, 관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이 언급됨

4.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지난 11.28일 라오스 ASEAN 정상회담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 중국 원조 중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개최된 까닭에 중국정부는 대 중국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하였음. 특히, 세계은행은 대 중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EU 등 여타 참석 대표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함

· 향후 중국은 선진 원조국과의 경비분담(cost-sharing) 형태의 협력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설정한 절대빈곤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점차 변경할 것으로 보임. (1인당 GDP 625위엔〈약 U$76〉 → 365U$, 혹은 0.2U$/day → 1$/day)

인도네시아 제14차 원조공여국 회의

1. 제 14차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회의

(The 14th Meeting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가 2005.1.19–20간 20여개 공여국, W/B 및 ADB 등 10여개 국제기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니정부 주관으로 인니 중앙은행에서 개최됨.(1.19 인니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 대통령 참석하에 표제회의 개막식 개최)

가. 회의참석

· 우리정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수석 대표로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차영철 참사관, 백두옥 산자관, 김일평 건교관, 박종호 임무관, 한충식 KOICA 소장, 강연화 KOICA 기획조정팀 과장이 참석

·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인니 대통령, 경제조정장관, 국가개발계획청장, 보건장관, 환경장관, 법무인권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 행정실장 등 참석

나. 금년도 CGI회의 특징

· 지난 제13차 회의까지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공여국 및 세계은행 (W/B) 등이 주도적으로 동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금번 회의시 최초로 인니정부 주관으로 회의가 진행됨.(경제조정장관이 의장)

다. 인니 대통령 개막 연설 요지

· 인니 지진 · 해일 피해 관련 각국의 긴급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체 재건 · 복구에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함.

· 번영, 복리, 공평, 민주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

· 지진 피해 관련 아세안정상회의(1.6, 자카르타)에서 합의된 지역조기 경보체제가 조기 구축되길 기대하며, 공여국들의 협조를 기대함

· 인니 신정부 출범('04.10.20)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법적 안정성 확보, 규제철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CGI 회의가 수년간 인니 개발에 기여한 역할을 평가하며, 향후에 인니정부와 동등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한 협조를 기대함.

· CGI 멤버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인니의 국가개발계획과 부합되기를 기대함

· CGI 멤버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인니정부의 개발전략 수립에 반영하겠음

2. 표제회의 주요 결과

가. 아체 지진 및 해일 피해 관련 인니정부의 피해 및 손실액(약 45억불)과 재건 및 복구관련 잠정 계획 발표

나. 공여국 및 주요 국제기구들이 2005년도 대인니 원조자금으로 유 · 무상 총 34억불 제공을 공약함(별도로 Aceh 지진 · 해일 피해관련 12억불의 무상원조와 5억불의 유상원조를 공약함).

· 각국의 공약내용

· 박강호 심의관은 금년도 우리정부의 대인니 유상원조(EDCF 자금 760만불) 및 KOICA 무상원조 420만불의 지원 예정을 밝힘.

– 별도로 Aceh 피해관련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5~2007년간 총 1,500백만불 지원 예정을 밝히고, 국내 민간단체 성금 500만불 전달 사실을 언급함

다. 인니 중기개발계획 및 빈곤퇴치, 분권, 교육/보건, 삼림/환경, 사법개혁, 반부패 등 각 분과별 진전사항 협의(5항 참조)

3. 평가 및 건의 사항

가. 금년 회의는 아체 지진 피해 이후 개최되어 회의의 관심이 기존 의제보다는 피해복구 계획 협의에 집중되었으며, 동시에 과거의 회의운영 방식을 탈피, 인니정부의 주관하에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은행, ADB, 주요공여국 (일본, 미국, 호주, EU 등)의 역할이 축소됨

· 인니 경제조정 장관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여국들과 협의회를 가질 예정임을 언급

– 금년도 CGI 중간평가 회의는 6월경으로 예정됨.(아체 재건 및 인니 전반적 개발 문제, 2006년도 인니 정부 예산안 등 협의)

나. 당초 인니정부는 금년도 CGI에서 공여국들의 지원액을 28억불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총 지원액이 34억불로 인니 신정부에 대한 공여국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됨

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간산업 구축을 위해 투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제반문제(안전문제, 법적 불확실성, 다양한 규제, 중앙 – 지방정부간 규정, 감독, 권한의 이중성,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니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대법원 간부 등 안전, 사법관련 고위인사가 CGI 회의에 대거 참석,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참여 멤버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여국들은 이러한 인니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주문함

라. 아체 지진 · 해일 피해 재건 · 복구 관련 우리 정부의 대 인니 지원 공약금(향후 3년간 15백만불)의 집행 관련, 향후 인니 정부와 공여국간 정례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당지 KOICA 사무소의 업무지원 강화를 건의함

·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희망 프로젝트는 당지 방문한 정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니 정부와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아체 지진 및 해일피해 관련 인니정부(Ms. Sri Mulyani 국가개발계획청장)의 피해 및 손실액 평가와 함께 재건 및 복구 잠정 계획의 발표

가. 배경

· 파리클럽에 의한 인니의 대외 채무 모라토리움 결정(1.12) 이행을 위해 아체 지진 및 해일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체적 재건 · 복구 계획 마련이 필요

– 인니정부는 W/B, IMF와 협조, 금번 CGI 회의에 잠정 피해액 평가 및 재건 · 복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최종 피해 평가 및 재건 · 복구 계획 완성에는 아직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

나. 아체 및 북부 수마트라 지진 · 피해 관련 피해 및 손실액 산정 발표(1.18 현재)

(1) 인적피해

· 사망 : 90,000명

· 실종 : 132,000명

· 실향민(homeless) : 394,000명

· 실종자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아직도 아체 서해안쪽 일부지역의 피해상황 미파악 등 고려시 실제 사망자수가 160,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있음.(1.20 인니 보건장관 발표)

(2) 물적피해

· 피해 및 손실액 총계 : 약 45억 달러(인니 GDP의 2.3%)

– 사회분야 : 1,741억 달러

– 기간산업분야 : 0.877억 달러

– 생산분야 : 1,182억 달러
– 기타 : 0.652억 달러

다. 인니정부의 긴급구호, 복구(rehabilitation) 및 재건(reconstruction) 계획

(1) 추진시기

· 1단계 긴급구호 : 0-6개월
· 긴급식량, 의약품 지원, 임시기간산업, 임시거처 설립, 사망자처리 등
· 2단계 복구 : 0.5-2년
– 공공서비스, 법/질서, 기본적 경제기반, 임시숙소, 정신적 피해 치료 등
· 3단계 재건 : -5년
– 경제재건, 교통 · 통신 등 인프라구축, 사회제도구축, 주택건설 등

(2) 추진방향

· 피해, 손실액 평가 → 피해지역의 복구 · 재건에 대한 필요한 내용 파악 → 복구 · 재건 전략 수립 → 재원동원, 신탁전략 마련

라. 재건 및 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시 인니정부의 기본방향

(1) 아체주민의 희망사항 반영

· 1.19 CGI 회의에 아체 주민대표가 참석, 모든 재건 · 복구 계획은 아체 주민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발표

(2) 아체지역의 특성(인니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해온 정치적 분쟁지역)을 고려, 금번 재건 · 복구 과정을 아체지역 국민과의 화해(reconciliation), 통합의 기회로 활용

(3) 재원 사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4) 공여국가, NGO 등과 조정 메카니즘 구축, 협의

(5) 피해지역 복구 · 재건 · 개발 계획의 청사진은 인니정부가 작성(각공여국이 특정지역에 학교 건설 등 특별 희망사업이 있을 경우, 조정메카니즘을 통해 인니정부와 사전 협의)

마. 공여국의 재건 · 복구 지원금 운영 방법(지진 · 해일 피해 관련 기서약한 금액의 이행시)

(1) 인니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각국에 회람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양자 직접지원,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프로그램에의 지원 (Co-financing multi-lateral programs), 다수 공여국간 합동 프로젝트 마련 (Pooling donor resources)을 통한 지원방식을 제시함.

· 상기 양자 직접지원시, 인니정부는 외국정부의 지원을 인니정부 예산에 포함(budgetary process), 인니 정부가 공여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를 희망

(2) 인니정부-공여국간 지원금 사용 조정관련 협의 메카니즘

· 인니정부는 향후 인니정부-공여국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금 관련 조정문제를 동 협의 메카니즘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동 메카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만간 각국에 통보 예정
– 동 협의회는 기존 CGI 멤버 이외에 중국 등과 같이 지진 · 해일 피해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들도 포함되는 CGI+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정
※ 참고사항 : 일본의 경우, 쓰나미 피해 지원 관련 총 5억불중에서 2억 5천만불은 UN에 의해 집행, 양자간 지원(2억5천만불)중 절반인 약 1.46억불을 인도네시아에 집행 예정이며, 동 집행방법은 인니-일본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함.
· 인니정부는 의회와 협의, 조만간 인니 국내인사들중에서 금번 지진 피해 조정 역할을 담당할 특별 인사를 선정 예정

(3) 각국 지원금의 성격

· 인니정부는 무상원조의 지원금을 선호하며, 신규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를 통한 피해복구 및 재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할 예정
– 유상원조금이 아체 피해지역 프로젝트에 사용시는 기존의 통상 절차보다 신속한 지원을 요청

바. CGI 멤버들과의 토의 요지

(1) 24개 임시숙소 설치 및 주민(인니정부는 주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난민 또는 IDPs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 이견)들의 집단 이주 문제

· 인니정부는 주택을 잃은 주민(homeless)들을 대상으로 24개 지역에 대규모 임시숙소를 건설, 주민들을 집단 이주 예정
– 일부 멤버들은 주민들중 친척이 있거나, 같은 마을사람들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여타지역에 위치한 임시숙소로 이주하지 않을 것을 제의
– 이에 대해 인니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도 기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 예정임을 언급

(2) 민간단체, private sector에 의한 지원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 확보 문제

· 각국의 민간단체, NGO 등이 모금, 송금해온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대해 인니정부는 모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금을 인니정부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각국 정부가 자국 민간단체들의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인니정부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

(3) 지방정부 구축 문제

· 현재 아체 지방공무원, 서류, 건물 등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당분간은 연방정부가 직접 아체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 지방정부의 재건 · 운영문제는 인니 중앙정부의 우선 관심사항임.

※ 2005.6월 예정인 인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시 아체지역 선거는 연기된다고 발표

5. 중기 개발 계획(2004-2009)

가. 인니 정부(국가 개발계획청장 발표)

· 향후 5년간 인니 신정부가 개발관련 추진할 5개년 계획의 대강을 발표

– 안전, 공정 · 민주 사회 및 번영된 복지사회 구축 목표

· 과거 5개년 계획에 비해 정책 및 제도 개혁에 촛점

· 정치 · 사회 개발과 경제분야 개발의 균형 유지

– 98년 정치.경제 위기의 경험 고려

· 정치 · 사회 개혁 강화를 위해 민간 분야의 점증하는 요구사항 반영

– civil society 강화, 제도 강화, 인권 강화, 민관 파트너쉽 강화

· 지역별, 분야별 갈등 해소 노력

– 지방자치 단체의 인식제고, 인권보호 및 소수 그룹 보호, 법률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간 역할 및 의무 분담의 명확화

· 청년 및 취업 그룹에 대한 보호 강화

· 매년 6-7%의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

– 기간산업 개발 강화

나. 토의요지

· 인니 중기개발 계획 목표가 UN 밀레니움 개발 계획 목표(MDGs)와 부합됨을 평가하고, 향후 동 목표의 실제 이행 실적을 요청

· 중기개발 계획의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체제의 구축 필요성 제기

6. 분과별 토의 내용

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1) 인니 정부

· 새로운 지방분권화 법률(지방 통치에 관한 제32법/2004,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회계계정 제33법/2004) 제정

– 지방정부 및 중앙 정부기능에 관한 규범, 제33법률에 관련 세부 7개 정부규범 제정 추진중

·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 지방정부의 개발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세원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강화

(2) 토의요지

·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

· 지방정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외국인 기업과 잠재적인 투자가를 포함한 공여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방안 필요성 제기

· 그 외 지방정부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공여국의 지방분권에 관련된 대인니 정부의 창구와 mechanism 등을 논의

나.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1) 인니 정부

· 연간예산에서 빈곤감축을 위한 중기전략 실행

– 도시빈곤문제 해결, 예산확보, 도서지방 권한 부여, 농업활성화 등

· 빈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강조

· 빈곤층을 위한 지원, 빈곤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강화, 빈곤층을 위한 예산 할당

※ 빈곤현황: '02년 38.4백만명(18.2%), '03년 37.4백만명(17.4%), '04년 36.1백만명(16.6%)

– World Bank의 Poverty Line : 1달러/1일 7.4%, 2달러/1일 53.4%

(2) 토의요지

· 국가빈곤감축전략(PRSP)는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필요

· PRSP의 목표와 프로그램은 연간 정부 계획, 예산에 통합되어야하며, 빈곤감축은 MDGs와 연결

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빈곤감축 문제는 교육, 보건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빈곤감축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개발 및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

다. 안보와 개발(Security and Development)

(1) 인니 정부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안보상황 구축 필요

· 15년내 중산층 규모 및 1인당 GDP 4배 성장 목표 설정

· 민간수송, 보건 및 지방당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만 및 항공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찰 및 국방부 기능 향상

라. 보건 및 교육(Health and Education)

(1) 교육

· 인니 정부

– 빈곤층 및 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

– 교육의 질 향상 및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

– 교육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 아체지역의 교육은 긴급지원, 복구지원, 재건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토의 요지

– 아체지역 교육분야 지원을 위한 time schedule 및 원조공여국간 조정을 위하여 인니 경제개발 계획청(Bappenas)의 역할 수행 필요

– 아체지역에도 인니정부의 교육정책이 동등한 적용이 필요하나, 교육의 지방분권화는 아체지역의 지진해일 피해로 인해 특수상황이 발생되어 추후 적용되어야 함을 제기

(2) 보건

· 인니정부

– 주요보건정책 : 질 좋은 보건서비스 접근 기회 확대, 건강증진과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질병 예방, 빈곤층 가족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에 특별 서비스 제공

– 중기개발계획 목표 : 유아사망율(현재 35% → 2009년 26%), 모자사망률(307→226), 영양부족어린이(25.8% → 20%), 평균수명(6세 → 70.6세)

– 주요이슈 : 아체지역의 쓰나미 피해로 인한 대응, 어린이 보건서비스, 보건분야 지방분권화, 전염병 통제 및 관리

마. 원조효율성 (Aid Effectiveness)

(1) 인니 정부

·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투명한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 인니정부는 중기개발계획(2004-2009)에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직업 창출, 민간부문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 빈곤감축, 인적자원개발 추진

· 인니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정책 대화 강화 필요

– national ownership 에 근거한 수요, 자체 정책과 전략 반영 필요

– 공여국간 조화 및 원조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강조

(2) 토의 요지

· 인니측에 실행 결과, 투명성, 책임성 및 비용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요구

· 원조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부패척결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설립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인니 정부간의 중점 협의 필요사항

–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

– 사업추진 정책의 공개적 토의

– NGO 등의 참여 및 활용

– 참여 국제기구, 정부 부처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부패 척결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방 분권화

– 조달체계 개선

–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문제

바. 정부 개혁 (Government-Reform)

· 정부 개혁은 새정권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5개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

· 경제개발 증진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법률 및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의 노력 전개

· 건전한 정치상황 조성, 법치질서 강화 및 법규 강화 개혁, 정부제도 강화, 부패 · 결탁 · 족벌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 등

사. 산림 및 환경분야

(1) 인니정부

· 2005-2009동안 산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선결프로그램을 발표
 - 불법벌채 및 거래 예방 및 근절
 -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구조조정과 재도약
 - 산림자원의 보전과 복원
 - 산촌지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 산지의 안정화와 산불예방
·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황폐지 복원조림 5개년계획(2007까지 300만ha)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여국의 투자와 관심을 요청
· Aceh 지진 피해지역의 복구 Program의 하나로서 해안 침식방지와 해일피해 예방에 핵심적인 해안 생태계인 Mangrove 산림의 조림계획에 공여국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함

(2) 토의요지

· Togu Manurung 보고로 농대 임과대학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합판, 제재목, 가구, 목가공등 임업가공업계의 연간 생산능력으로 볼 때 매년 2,000만㎥이상의 원목이 필요하나 산림부의 연간 벌목허가량은 530만㎥이므로 임업가공업계의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한 불법벌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 그 외 불법벌채에 관한 인니 정부의 빈약한 예산책정, Aceh 지역에서의 산림분야의 복원방안, 불법벌채 방지를 위한 산림부와 환경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7. 거시경제, 투자환경 및 금융분야 개혁

· 우리 대표(박강호 심의관)는 해외투자 유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아래사항을 강조
 - 경제 · 투자관련 법규의 철저한 이행 특히 법원 차원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
 - 조세 행정의 개선 특히 세금 산정 및 징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인니 경제조정 장관은 상기 두 가지 문제가 현 정부의 중요 과제임을 공감하면서, 동 문제에 계속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

[자료 : 주인니 대사관]

2005년 필리핀 개발포럼/ 제26차 필리핀 원조공여국 회의

Ⅰ. 핵심내용

· 3.7-8간 Davao市에서 필리핀정부와 World Bank 공동주최로 필리핀 정부인사,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대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제회의가 개최되어, 필리핀 경제상황, 개혁방안, 민다나오 평화 및 개발 등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토론하였음
· 필리핀정부는 작년 Arroyo 대통령의 재집권이래 추진해온 10대 공약(10- Point Agenda) 및 중기개발계획(Mid-Term Philippine Develop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조공여국/국제기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원조공여국들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빈곤타파을 위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하였음.
· 유명환 주필리핀 대사는 우리의 對필리핀 ODA 현황과 다바오직업훈련원 개원식을 소개하고 필리핀 경제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음

Ⅱ. 회의개요

1. 회의제목

· 2005 Philippines Development Forum : a Meeting of the Philippines Consultative Group & other Stakeholder

2. 참석자(약 250명)

· 필리핀정부 : 대통령, 재무부, 경제개발청, 통상산업부, 에너지부, 교통통산부, 민다나오개발청, 농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 전원 및 하원의원 수명
· 원조공여국/ 국제기구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24개국
 - World Bank, IMF, ADB, EU, UN 등 22개 국제기구
 * 우리 대표단은 유명환 대사, 배한진 서기관, 최성호 KOICA 소장이 참석

Ⅲ. 주요논의내용

1. 회의 전반

· 금번회의에서 필리핀측은 Arroyo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각료 전원이 참석하여 10대 공약 및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원조공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① VAT 인상, Sin Tax 등의 증세조치, 전력공사 등 적자국영기업매각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 ② 투자 유치노력, ③ 부패, 무능 해소를 통한 Good Governance 육성, ④ 교육, 보건강화, ⑤ 지방별 균형발전 방안 등을 소개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필리핀 정부의 개혁조치와 관련, 작년도 경제실적 호조(6.1% 성장) 및 세계경제호조와는 달리 기회의 창이 줄어들고 있으므로(Narrowing the Windows of Opportunity) 失機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경과 및 미비사항을 세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주문함
·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은 빈곤층과 소외지역의 통합, 재정적자해소, 부패무능타파, 인구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이 재차 확인됨
 – 아울러 필리핀 전체의 정치 ·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인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과 경제개발을 통해 동지역의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임

2. 주요인사 언급요지

가. Arroyo 대통령 (폐막연설)

· 작년도 대통령선거이래 강력한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 바, 정치적 안정, 민다나오의 평화질서 회복, 투자유치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재정개혁에 대한 의회의 협조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음
· 재정개혁조치로 조세행정개혁, 국영기업 사유화, 예산적자 해소 및 빈곤타파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명단 제외,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상향 조정, 페소화 강세 등의 좋은 징조가 나오고 있음
· 경제개발을 위해 콜센타, 하이테크분야,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농업, 주택, 광업 등의 육성 및 클라크-수빅 개발 등을 통해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영토보전과 해외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기존 우방국인 미국 및 아세안제국 등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이슬람권, EU 등과의 파트너쉽을 육성해 나갈것임

나. Von Amsberg 세계은행 지역대표

·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 및 국제이자율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제개혁조치의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전력요금 인상, 주류, 담배세 부과, 재정건전성 확보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분야 개혁조치 등의 필리핀 정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나, 막대한 부채누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제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임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
· 재정개혁 조치로서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개선 및 정부지출시 지출책임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여러단계의 복잡한 세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세제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개혁의지와 실천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

3. 전체회의 및 분야별회의

※ 금번 회의는 전체회의 시간을 줄이고 5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개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였으며, 필리핀정부 및 공여국/ 국제기구 외에 NGO 및 경제계 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의 형식을 변경함

가. 전체회의

· 전체회의에서는 필리핀 경제현황 및 개혁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① 재정개혁 및 금융제도 정비, ② 중기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아울러 민다나오 평화회담 및 개발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음

나. 그룹별회의

· 그룹별회의는 Social Progress,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 Economic and Fiscal Reforms, Governan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Ⅳ. 참가 성과

·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의 경제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국제사회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바, 이를 통해 우리의 원조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對필리핀 원조는 필리핀이 당면한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이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개발 계획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과적인 시행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원조예상성과분석, 프로젝트 추진방안 및 일정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World Bank 주도의 민다나오 다자신탁기금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필리핀 대사관]

Ⅲ. 기타

인도네시아의 중기(2004~2009년) 개발전략 요약[30]

I. 개요 및 배경

1. 본 요약문에서 정리된 중기 개발전략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5년을 위한 전략적 개발정책들을 제시함
 동 전략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세가지로 제시함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
 둘째, 모든 시민을 위한 정의와 민주주의 확립
 셋째,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건설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과 프로그램을 통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은 정부의 연간계획(annual plan)에서 제시될 것임. 이는 세부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임.

2. 동 중기 개발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중기전략 (1999년에서 2004년의 중기개발전략(Propenas))과 구별됨
 첫 번째, 정치적환경이 1999년도와는 많이 다름. 최근의 중기 개발전략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30) 동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기획부 및 국가개발기획청(State Ministry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에서 수립한 중기(2004-2009) 5개년 개발계획을 요약한 것임. 동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향후 5년간의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분야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인도네시아 원조정책 수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의 비전과 노선(platform)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의 전략은 평화롭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신임(mandate)을 반영하고 있음. 두 번째, 동 전략은 이전의 전략과 비교했을 때 정책과 제도적인 변화에 실질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음

3. 동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개혁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community)로부터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도록 정부–사회간 관계의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목표함

 먼저, 동 전략은 제도적 변화와 개인의 권리 및 책임을 통해서 정치적 정책결정 과정 및 경제분야에서 사회의 역할을 증진하려고 목표함. 예를 들어서, 정부와 동반자관계를 가진 시민사회는 분쟁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경제적 분야에서는, 정부는 민간분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을 약속함. 시민권리의 증대는 정치적 권리 및 인권의 인식과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 빈곤감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함. 이것은 프로그램 과정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의회, 시민사회집단, 기업, 조합, 언론 등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함

4. 지난 5개년 개발계획의 결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서 많은 것이 달성됨

 언론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헌법 재판소의 설치, 지역자치 시행 등을 포함, 중요한 정치적 개혁이 이 시기에 이행되었음. 2004년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중요한 몇몇 이정표를 성취하였음. 세 번의 국가적 선거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적 성숙이 증가했다는 것을 가리킴. 가장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임. 내년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계획임

5. 그러나 아직도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임.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함양하고 인권과 법치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달을 보호하는 기관의 강화가 요구됨.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열쇠는 관료제, 법제(legal system) 및 다른 정부 기관에서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임. 아울러, 소수집단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종교적 편협성(intolerance)의 증가는 모두를 위한 정의와 민주화의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임

6. 범죄의 증가 및 지속되는 지역분쟁 및 테러는 지역사회의 불안정감과 취약성(vulnerability)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낮은 경제성장과 더딘 고용창출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소외감과 사회적 배척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음. 동시에 지속되는 지역적, 교파적(sectarian) 분쟁은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조직을 파괴할 뿐 아니라 폭력과 경제파탄(decline)의 악순환을 창출함.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다국적 테러리즘의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

7. 경제적 측면에서, Propenas 기간 중의 주요 성취결과는 개선된 재정적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inflation), 실질 금리(real interest rate)의 감소임.

 이러한 성취는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개선 및 국내, 외국인 대금업자(lenders)로부터의 국채(government bond) 수요증가에 반영됨

8.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 안정은 아직 충분히 높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변환되지 않음

 회복기의 경제성장률은 1999년 이후 4.3%로 낮은 수준이었음. 투자에 있어서 완만한 회복과 소규모의 수출성장이 지역의 이웃국가들에 비해서 더딘 경기회복의 원인임

9. 결과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약 2백만의 구직자들과 정규(formal) 분야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는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충분한 직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경제가 4~5%라는 현 경제성장률의 속도에 알맞은 숫자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음. 정규고용 (특히 규칙적 임금 직업)은 2001년 이후에 감소하였고,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점점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 분야에서 직업을 찾고 있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그들의 중기 직업 및 수입전망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됨. 향후 5년간 노동 시장에 유입될 6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새로운 구직자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임

10. 빈곤 및 빈곤층으로 떨어질 취약성은 매우 높은 비율로 남아있음

 빈촌층의 숫자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질적 교육, 보건서비스, 깨끗한 식수 및 위생, 법적 보호에서 고용에 이르기까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신장 등을 포함하는 빈곤의 다른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국가경제계획에 주류화하려는 시도는 중요함

11. 사회적 분야에서 향후 5년간의 핵심적 도전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임. 문맹률, 수명, 의료에의 접근성, 깨끗한 식수 및 위생 등과 같은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측정도에서,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기준에서 낮은 순위임. 학교 중퇴비율이 높고 교육의 질은 지역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다양한 보건지표들은 인구의 보건정도 개선에 있어서 발전이 느리다는 것을 보여줌. 새로운 정부의 핵심적 우선순위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법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임

12. 이러한 도전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부의 중기 개발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
둘째, 모든 시민을 위한 정의와 민주주의 건설
세째,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건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 개발전략에 대한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보고서의 첫 장은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인도네시아를 위한 대통령의 비전과 노선을 기술하고 있음. 연이은 각 장은 세가지 주요 의제와 관련된 새 정부의 비전과 이행과제를 요약하고 있음. 각 장은 전략적 목표(goal), 목표대상(target) 및 이러한 핵심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까지 통틀어 볼 수 있는 일관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마지막 장은 중기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음

Ⅱ. 첫 번째 의제 :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

13.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 건설을 위한 네 개의 핵심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분리주의(separatism)와 동종 분쟁(horizontal conflict)의 해결**
이는 낭그로 아체 다루살람(Nanggroe Aceh Darussalam)과 파푸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말루쿠(Maluku), 포소(Poso) 및 마마사(Mamasa) 지역 및 다른 잠재지역에서의 동종 분쟁을 포함함. 이러한 분쟁은 국가적 화해기틀 안에서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약점을 노출시켜 옴
② **전통적 형태의(conventional) 범죄 및 다국적 범죄 퇴치**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형태의 범죄율 상승이 지속됨. 밀수, 마약, 인신매매, 불법어업, 불법벌채 및 채굴, 돈세탁을 포함하는 다국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영해 침해 및 안보에의 위협이 되기도 함
③ **테러리즘 퇴치**
효과적으로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함. 초기발견, 선제공격, 대중보호 및 연구역량 등과 같은 시스템 및 역량 개발이 부진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태임.
④ **국가 안보**
무장군대 역량은 인력, 교육, 장비의 차원에서 현대적 방어력이 미흡한 상태임

14.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
지역적, 분파적(sectarian) 분쟁의 해결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확립 및 범죄, 테러리즘, 다국적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위한 재원 증대, 국가 안보 역량 개선이 필요함

15. 사회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네시아를 설립하려는 중기 계획은 두개의 중심적 접근법을 가짐. 첫 번째는 시민사회 가치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개선, 두 번째는 인권존중과 국가 안보이익의 보편적 가치와 일직선상에서 치안과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보 기관을 강화하는 것임

16. 시민사회, 인권존중, 분쟁원인해결 프로그램 및 안보대책을 통합하는 해결전략으로 지역적, 분야별 분쟁 해결
새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는 평화 및 지역사회 존중, 인권존중에 도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이행하는 것임. 이 전략은 국가적 화해과정과 같은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고, 잠재적 분쟁지역을 선별하고 예방하며, 분쟁의 원인에 대처하도록 사회 경제 분야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인식과 시민사회, 인권, 소수그룹(인종, 민족, 지역적)과 Pancasila(인도네시아의 건국 5원칙 : 유일신 신앙, 인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존중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임. 국가적 화해 노력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기의 핵심적 사안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화해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자(stakeholder) 회의를 제도화할 계획임. 분쟁 지역에서 무력분쟁을 해결하고 인종, 민족, 극단적 종교이념에 근거한 집단을 온건화하는 평화적 노력을 지원하도록 안보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질 계획임

17.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다국적 범죄 및 분야별 지역별 분쟁을 포함한 범죄율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취약성이 높아짐. 동시에 지역사회는 공적 안보서비스의 전달이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한 네 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경찰의 직업의식 향상과 치안서비스 전달 개선

경찰, 조사, 범죄학, 기술 인력의 훈련과 고용 확대 및 경찰부서에 대한 예산배분 증대, 정보수집 능력의 향상 및 정보기관 사이의 조정.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총괄적 전략을 개발하며, 이 전략은 잠재적 분쟁을 선별하고 안보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위한 구조, 도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함

② 지역사회의 이웃감시 그룹의 개발을 장려, 촉진

③ 불법으로 행해지는 어업, 채굴, 벌채, 무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불법 착취 해결

④ 마약 퇴치 프로그램 강화

18. 국내적, 국제적 테러리즘 퇴치

발리 폭탄테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5개의 주요 테러리스트 공격과 그로인한 343명의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 국내, 국제적 테러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출현과 시민사회 향상을 약화하려는 것임. 테러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취약성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부과하였음. 정부는 테러 타파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테러의 원인에 대처할 것임. 정보기관의 제도적 역량 향상 및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안보역량이 주안점이 될 것임.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은 ① 안보/정보기관 및 절차의 구조조정 및 지역에서 정보수집 인프라 이행, 안보기관간의 조정 개선, 교육과 분석을 위한 반테러리스트 기관 강화 ② ASEAN 국가들과 함께 반테러리즘 활동과 정보 공유 ③ 대량살상무기 감축과 지구적 무장해제를 위해 UN과 협력 증대임.

19. 국가안보시스템 강화 : 국가안보역량 향상

정부는 역량향상을 위해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평가할 전략적 방어정책 심사를 실행할 계획임.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있어서 역량 강화 및 정보기관간 조정과 국경감시 및 통제와 같은 국가안보시스템 개선이 우선순위임

Ⅲ. 두 번째 의제 : 모든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 확립

20. 향후 5년 동안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정의 실현을 위한 네 가지 핵심선결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수많은 규제와 법이 정의 및 법적 확실성에 반대됨

정의, 평등, 인권존중을 반영하지 않는 많은 규제와 법이 존재하고 있음. 다양한 지역사회의 부문들을 차별하는 법률이 존재함. 지역사회는 대체적으로 법의 집행이 선별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약화됨.

② 공공 서비스의 전달 빈약

대중은 공공시설, 교육, 의료서비스, 사업규제절차에 이르는 공공 서비스 전달이 개선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공공 서비스 성과 평가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빈약한 서비스 전달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함. 이것은 취약한 행정적 역량, 공무원들에 대한 빈약한 인센티브, 부패의 만연, 권력남용 등 관료제에서의 구조적 문제 및 인센티브 문제를 포함함

③ 취약한 민주적 기관

민주적 기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시행된 반면, 헌법 재판소, 사법재판소, 중앙 의회 및 지방 의회 기능, 인권기관 등 정치적 기관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할일이 많이 남아있음. 아울러 정치부패, 권력 남용, 인권침해와 정치범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및 관료제 안에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은 편임

④ 지방 자치에서 시행상의 약점

지역 자치권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이행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

함. 이는 예산지출 분야, 인프라 자산 관리, 경제 사회분야 정책시행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 기능,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함. 아울러, 지역정부의 행정 역량 및 공적 서비스 전달을 향상하는 것이 지역자치권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

21.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

올바른 통치와 정의 실현 : 법제도, 공적서비스, 부패퇴치, 지역자치권 실행에 있어서 개혁의 지속

22. 법적 분야를 현대화하고 정의를 실현할 네 가지 핵심적 과제

① 정의, 공정성, 인권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뒤진 법과 규제의 개혁 : 정부는 개혁을 평가하고 건의할 관련주체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주체들 및 의회와 협력

② 법적 기관과 이행기관 감독 및 조정의 향상 : 법무차관 감독위원회(attorney general oversight committee)의 설립, 국가치안 위원회 및 법무차관사무실의 통치(governance)개선

③ 교육과 윤리규범 향상을 포함해 법적 시스템 내에서 직업의식을 강화

④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 인종, 지역, 성별에 기초해 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형태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 : 빈곤 가정에 대한 법적 자문과 변호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원을 확대

23. 개혁을 통한 공적서비스 전달 개선

지역사회는 교육, 의료서비스, 면허증발급, 세금징수, 공적시설 관리 등 정부, 시민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전달의 보더 나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중기개발전략은 공적서비스 전달의 향상이 정부와 법치(rule of law)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이며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공적서비스 개혁은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요소임. 정책 우선순위는 공적서비스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임. 이는 직업의식, 감독역량 및 독립성의 향상을 위해 정부 내외부의 감사 기관의 정책개혁 및 구조개혁을 포함함. 성과제 문화를 함양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 경력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공적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개혁이 이행될 것임. 올바른 통치 이니셔티브는 윤리규범과 공직자들의 직무과실을 처리할 징계 이사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24. 민주적 기관 강화

중기개발전략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로의 발전위에 수립된 것임. 이 의제는 법적 개혁, 공적서비스 개혁 및 권한이양의 우선순위와 겹쳐짐. 핵심 우선순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료제 확립 및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스템 이행임. 최근 언론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규제들을 재검할 것임

25. 지방 자치권에서 시행상의 약점에 대처

향후 5년간 집중할 세 가지 우선순위 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 기능, 권리 명료화 : 이를 위해 지방 자치체계 하에서 법률과 규제를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음. ② 지방정부 공적 서비스 내에서, 올바른 통치의 원칙과 일관된 직업의식 및 역량 건설, ③ 지방정부를 위한 지역 재정자원 활용

Ⅳ. 세 번째 의제 : 인도네시아의 번영

26. 경제, 사회 부문에서 국민의 복지 향상 노력 강화

이와 관련 세 가지 전략적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높은 경제성장 필요 : 중기적으로 매해 평균 6-7%의 성장률이 고용과 빈곤감소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함 ② 경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③ 빈곤율 목표와 여타 사회분야목표 충족을 위해 경제성장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성장의 이익이 빈곤층에게 분배되려면 사회분야에서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함. 중기개발전략은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와도 일치함

27. 빈곤 주류화는 빈곤감소에 대한 '권리(rights)' 접근법을 통해서 수행됨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빈곤 가정을 돕는 사회원조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는, 수혜자들의 많은 비율이 목표대상그룹(targeted group)이 아니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단기적인 원조프로그램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위에서 빈곤층을 빈곤에서 구제하려고 개발된 것이 아님. 장기적인 빈곤감소는 시민들의 식생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안전한 식수, 토지소유보장, 공공정책형성에의 참여에 대한 기본적

권리 충족에 달려있음. 복지 과제는 정부의 빈곤감소 전략에 의존하고 있음

28. 인도네시아의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 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거시 경제적 안정은 지속가능하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전환되지 않았음**
이는 투자율과 수출성장은 낮은데 비해 소비가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2004년 4/4 분기에서 투자와 수출이 오름세를 보임. 느린 경기회복의 결과로 정규 분야에서 고용창출이 부진하였고, 노동자들이 점차 비정규 분야에서 구직함에 따라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증가됨

② **경제전반의 경쟁력 감소가 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임**
경쟁력은 상품과 서비스를 경제적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포함함. 또한 국내, 국제 시장의 변화 및 새로운 상품 변화, 기술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포함함. 경쟁력 국제설문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하위 등급임.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104국중 69번째로 매김. 우리의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31번째, 34번째임

③ **현재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부분적으로는 1998년의 경제위기의 결과인 경제 구조적 변화와 국내, 국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함**
경제의 구조적응의 성격은 국내의 재원이 취약한 분야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로 이동해가는 것임. 이러한 구조적응의 패턴은 최근 무역이 가능하지 않은 (non-tradable) 상품 분야(예를 들면 소매/통상 분야 및 건설) 및 수출주도 제조분야(기계 및 화학제품)에서 평균이상의 경제성장과 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이 관찰됨. 최근 전통적인 제조업분야가 평균이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적응의 초기단계에서는 공장폐쇄 및 실업이 몇몇 분야에서(예를 들면 의류 및 신발) 지배적이었음.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와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국내적 요소와 상품시장의 유연성에 달려있음. 이러한 유연성은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영향을 받음

④ **경쟁력, 자원 활용, 통관장벽에 있어서 제도적, 정책적 한계는 여러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노정되어왔고, 주요 장애 요인은 아래와 같음**

i. **비은행금융분야의 취약과 은행부문간 조정기능의 비효율성.** 자문감독(prudent supervision)의 미비와 제한적인 규제는 비은행금융분야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어옴

ii. **기업의 탄생과 운영, 퇴출에 있어서 정부가 만들어낸 거래비용의 증가.** 번거로운 기업 인가 및 승인 시스템과 투자절차를 포함함. 승인의 숫자와 절차와 비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도국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함. 예를 들어 최근의 세계은행의 '2005년에 사업을 하는 것' 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150일이 소요됨. 필리핀은 50일, 태국 33일, 말레이시아 30일, 싱가포르는 8일에 불과함

iii. **비효율성 혹은 고비용의 시설과 물류비용(logistics).** 항구운영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중 하나임

iv.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저조.** 인프라의 퇴화와 교통 네트워크(철도, 도로, 항만), 에너지, 관개에서의 병목현상은 사업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킴

v. 세금심사를 포함한 **세금정책 왜곡과 불투명한 행정 관습** 및 항소 구조(appeal mechanism)는 성장에 반함

vi. 최근 **채권시장과 상품시장 정책에서의 유도된 경직성**은 새로운 성장분야와 고용창출에의 장벽을 만들어왔음. (예를 들어, 고비용의 노동규제 준수, 비관세장벽의 확산, 선택적 농업정책)

vii. **법률적 비확실성과 법치의 미비**는 투자가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외국투자를 주저하게 함

viii. **관료제 내부에서 부패의 만연**은 특히 관세, 세금집행, 사법시스템에서 관찰됨

ix. **사업분야에서 기술적응력의 저조**

29. 경제분야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

① 2009년까지 실업률을 10%에서 5.1%로 낮춤

② 빈곤율을 8.1% 까지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줄임

이러한 목표들을 시행할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임

① 성장의 선제조건으로서 거시경제안정 유지 ② 성장과 고용이 민간분야에 의해서 창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전한 사업문화 창조 ③ 경제성장의 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빈곤층에게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과 지역 개발을 촉진.

30. 거시경제 안정 유지

이전의 정부는 놀라운 거시경제안정과 재정안정을 달성하였음. 앞으로 남아있는 핵심적 개혁을 완수함으로서 이러한 성취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이와 관련, 다음 세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함; 거시적 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재정 정책, 금융분야 개혁임

31.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환율을 통해서 경제 안정 유지

인도네시아 은행은 향후 5년간 5% 이내로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기로 약속함. 지난 3년간 지역사회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님. 실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고착되면 금리는 점차 하락할 것임

32. 재정정책 일관성을 통해서 경제안정을 유지

현재의 정부는 GDP 대비 55%의 부채율은 미래의 외부적 충격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기에 너무 높다고 여기고 있음. 그러므로 주된 목표는 2009년까지 부채율을 34%가량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재정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임. 정부는 2005년에는 전체적 재정적자를 1%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에 점차 줄여갈 계획임. 적자재정전략은 국내와 국외 대출이 혼합된 형태이고(프로그램 차관과 상업적 대출), 차관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며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민간분야를 금융시장에서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정부가 점차적으로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 새로운 차관을 줄여감에 따라서 외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음

33. 그러나 개발과 사회분야에 대한 지출우선순위와 적자감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함

2005년의 1% 재정 적자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낮은 편이고, 따라서 2009년까지 재정 균형 목표를 가지고 적자를 감소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의 초점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회분야 인프라에 대한 예산 지출 증가임. 정부는 교육에의 장기적 목표인 20%의 예산 지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함

34. 지출 이니셔티브는 예정된 적자감소 안에서 재정지원될 것임

이는 세금 소득과 세금 행정의 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수입을 향상하고, 예산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행될 것임

35. 정부는 2009년까지 GDP 대비 12%(2004년)에서 13.7%로 세금을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는 세금 소득과 이행의 노력 및 세금행정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것임. 이러한 개혁은 윤리규범 및 윤리감독위원회의 설치, 세금관련 사무소내 올바른 통치의 설립을 포함함.(이니셔티브에는 세금납부 및 세금공무원과 납세자 간의 원거리 소통을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을 포함) 세금행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 개혁은 세금 재판소의 개혁임. 세금 심사청구(tax appeal) 절차와 세금재판소의 직업의식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됨

36. 예산 지출에 있어서 효율성 향상

목표대상이 아닌 분야에의 보조금 (예를 들면 연료 보조금)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를 사회적 분야와 인프라 지출로 재분배함으로써 예산 지출에서 효율성을 향상함.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구매를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과 정부 조달에 있어서의 개혁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행될 것임.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정부수입이 지역정부로 전달되는 측면도 향상되어야 함

37. 공적분야 지출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정부 전략으로 공적 분야 회계 관행 개혁

정부가 공적분야 회계 관행을 현대화하고 문서로 보관하는 방법을 개혁함. 국가 기업 회계를 중앙정부 재정보고와 통합하고, 재정정보 시스템을 정부 내로 통합함. 국가감사기관(BPK)에서의 능력배양은 정부 개혁의 일부로 도입될 것임

38. 중재, 자문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의 향상 및 비은행금융분야 재정분야 개혁

향후 5년간의 우선순위는 중재적 기능을 향상하고 1997년과 1998년에 인도네시아가 겪은 금융위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하기 위한 은행권의 개혁을 완수하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에 대한 자금책으로서 금융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향후 5년간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비은행금융권의 다양화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임

39. 또 다른 체제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자문감독(prudential supervision) 및 관련 국가기관사이의 조정을 통해서 금융분야의 강화

이는 GOI 와 인도네시아 은행 사이의 회계, 금융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자문감독기관(OJK)과 실행구조를 위한 준비완수 및 취약은행과 위기 잠재성을 선별할 수 있는 초기 경고구조를 개발. 새로운 자문감독기관을 통해 기존의 민간분야의 보조금, 보험, 및 금융법률과 규약들을 OJK에 대한 법률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도덕적 해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금융과 은행권에서 최소주식요건(minimum equity requirement)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준비도 완성할 것임. 마지막으로 정부는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Basel) 핵심원칙 및 국제연합보험감독 핵심원칙 (International Association Insurance Supervision Core Principles) 등과 같은 은행, 금융권에서의 국제적 모범관행을 채택할 것임

40. 비은행금융분야와 자본시장의 다양화를 통해서 중재제도 개선

인도네시아의 비은행금융권은 저개발상태이며 재정적 자산의 비율이 낮고, 자금은 단기간으로 투자됨. 또한 10년 후 인도네시아 재정분야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음. 따라서 향후 5

년간의 우선순위는 비은행금융분야를 개발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보조금, 상호기금, 보험과 같이 비은행금융분야에 관한 현재의 규제프레임워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비은행금융분야 개발을 위해 이차적 주택금융시장, 대안적이고 건전한 기관 설립, 신용등급기관과 신용국(credit bureau) 의 도입을 통해 금융분야의 정보를 향상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을 강화해야 함

41.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 ; 민간분야 성장을 통한 고용

경제전략의 두 번째 과제는, 성장과 고용은 민간분야에 의해서 창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기업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이행되어야 함. 그러나 동시에 지역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원에의 접근과 경제성장을 요구하고 있음. 여기서 목표는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이와 관련, 핵심분야는 다음의 8가지임.

① 투자규제환경과 수출환경 개선
②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 개선
③ 산업의 기술적 역량 증대.
④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선
⑤ 농업, 어업, 임업 분야의 활성화
⑥ 천연자원과 환경 관리의 개선
⑦ 지역 개발
⑧ 인프라 개발

42.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업의 거래비용과 시장접근의 장벽을 줄이고 계약이행의 확실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이와 관련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인가/승인의 숫자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혁 도입. 목표는 이러한 규제를 앞으로 3년내에 말레이시아와 태국 기준의 반으로 줄이는 것임. 이는 의회에 투자법률 초안 제출을 통해서 투자체계 개혁을 포괄하고 있음. 법률에 의해 투자 절차는 간소화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절차는 명료해지며 투자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인센티브와 투자의 중개자로서의 투자기관들의 개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② 세금행정 개혁 ③ 사법적, 법적 개혁 및 분쟁해결보장을 통한 계약이행 개선 ④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경쟁 환경 조성. 이와 관련 경쟁에 관한 법률 개정, 통상정책 체계에서 고비용 요건 감소, 소비자 보호 법률 강화가 필요함

43. 수출환경 개선은 통상비용 감소와 홍보활동에 주안점을 둠

핵심적 목표는 새로운 수출 성장분야가 출연하고 동시에 전통적 수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정책적으로는 세관에서의 통치 개혁, 수출서류의 간소화, 기존의 수출활성화 정책 개선 (예를 들면, 관세 기간감소와 수출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등을 포함함.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성장분야로서 관광이 고려됨. 이는 홍보노력 및 잠재적 관광지 다양화, 관광지 개발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아울러, 정부는 다자적, 지역적, 양자적 과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개선할 것임

44.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기업 산업은 주된 고용창출원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방향은 성장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 환경조성임. 이와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 중소기업에게는 거래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절차의 간소화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많을 것임.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의 개선도 포함함.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이 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 될 것임. ② 자원, 기술원조, 투자신용, 비은행금융 기관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실행. ③ 기업의 능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의 기술원조와 파트너쉽 구축

45. 시장 유연성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

인도네시아의 노동규제는 세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곳 중 하나임. 노동 규제는 최신 분야에서 더 좋은 직업 창출을 막고, 청년실업을 증가시키며, 고용에의 권리를 침해함. 이 규제들은 새로운 근로자 고용에 있어 마치 '세금' 처럼 작용하며, 따라서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제한적임.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기업적 차원에서 조합주의와 집단협상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정책은 규제준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재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관련주체들이 개혁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지속적인 개혁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

46. 적극적이고 목표설정이 잘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 감소

고용전략의 두 번째 과제는, 인프라 지출과 연관된 공공사업프로그램 및 구직자들을 위한 고용정보 조정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행임. 해외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최근의 법률은 노동력 수출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47.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인적자본이 수입 증대와 장기적 빈곤감소에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노동력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기개발전략의 핵심 우선순위임. 이와 관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추가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은 무역관련 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인증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립 교육프로그램의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48. 산업간 조화와 노동 권리 증진을 위한 노동시장 강화

집단협상 개발에의 장벽 및 분쟁해결 절차의 부적절성을 포함해서, 산업분쟁 해결법률에 있어서의 취약점이 관찰되어옴. 이와 관련, 산업간의 조화와 노동권리 및 정의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산업분쟁에 대한 새 법률을 시행하여야 함

49. 성장, 고용,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경제위기이후로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네트워크의 퇴화 뿐 아니라 인프라 부문에 저투자가 야기됨. 향후 정책과제는 퇴화된 인프라시설 수리에 예산자원을 집중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로 경쟁력 지원을 위한 부가적 인프라에 대해 투자하는 것임. 이와 관련 중점 분야는 깨끗한 식수 공급 및 관개, 교통분야(도로, 철도, 항공, 해양) 그리고 에너지 세가지임

① 식수 분야 및 관개

수자원 보존, 농업지원을 위한 관개 시스템 증대, 깨끗한 식수 공급 및 식수 산업 향상, 홍수통제의 네 가지 인프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식수 분야에서 우선순위는 수자원공급의 개발과 관리, 낭비되는 수자원의 통제 및 관리, 수자원 관세개혁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위한 규제의 개선임

② 도로와 네트워크의 수리 및 확장

퇴화된 도로의 규모는 엄청나며, 손실을 복구하는 것은 인프라에 있어서 직면한 큰 문제중 하나임. 2002년 말까지 손상된 도로로 분류된 것은 국가 도로의 약 12%였으며, 지방도로의 35%, 카부파탄(Kabupatan) 지역 도로의 48%, 도시 도로의 4%였음.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도 상당함. 따라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기금을 배분할 계획임. ㉮ 국가, 지방, 지역/도시 도로 재건. ㉯ 국가 도로 네트워크 및 주요 도시로의 주요 간선도로 확장. ㉰ 자카르타/보고르(Bogor), 치캄펙(Cikampek) – 푸르와카르타(Purwakarta) – 팔라랑(Palarang), 자바(Java)–마두라(Madura) 다리의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유료도로 건설

③ 철도 영역을 수리, 확장, 개혁

철도운송 체계에서 화물 및 승객 운송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병목현상이 나타남. 이 분야 투자는 상품과 사람들의 이동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임. 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개혁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장려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 것임

④ 해양교통 분야의 수리, 확장, 개혁

해양교통 역량과 인프라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새로운 투자와 시설관리 부족, 국내 해양항로의 경쟁력부족 등으로 인한 심각한 비효율성을 안고 있음. 정책 방향은 기존의 국가소유의 해양교통과 인프라를 재건하고 항만에 민간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No. 21/1992 법률을 개정하는 것임

⑤ 경쟁력 있는 에너지 분야 창조

전기발전과 공급에서도 병목현상이 나타남. 최근의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의 저투자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고 있음. 우선순위는 민간분야의 참여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법안을 이행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 개혁을 포함해서 주요 과제임. 전기분야의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전기 공급을 확장하고 관세조정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며, 경쟁력 있는 전기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2002년의 전기에 대한 법률을 이행하는 것임

50. 농업, 어업, 임업분야의 재활성화

농업분야는 국가 식량안정에 중요하며, 비숙련 잉여 노동의 주요 흡수원이고, 농촌 산업 성장과 개발에 중요한 파급력을 가짐. 농촌 분야는 가장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성장이 중요함. 농가에서는 소득의 50%가 농장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되며, 이는 농촌 빈곤감소 전략이 농업과 농촌 산업개발 전략 모두를 포괄해야 함을 제시함. 농업분야는 도시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예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등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산업분야는 이웃국가에 비해서 뒤쳐져 있음. 이는 농업상품의 수출 성장과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줌. 농업분야는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와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음. 적절한 기술의 미비, 비효율적인 토지 계획,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 왜곡된 가격규제, 농촌 인프라 미비 등이 농업생산성 증대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자원의 지속성 문제와 더불어, 임업분야도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51. 농업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농민의 부흥(empowerment)과 가구 농업활동, 식량안정, 농업사업의 개발에 초점을 둠

농민의 부흥은 농업과 농촌 기구의 강화, 농민들의 자원에의 접근성 증대를 포함함. 가구별 농업

활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접근과 성장에 대한 규제장벽의 철폐, 공정한 농업통상과 정책 관행의 제공, 빈곤층에 우호적인 농업정책 등임. 식량 안정전략은 국내 생산으로부터 식량비축을 확보하고, 식량작물 다양화 및 식량분배 시스템 강화를 포함함. 농업사업의 정책방향은 농업사업(큰 규모의 사업체 및 농장 농업사업)으로의 진입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고부가 가치의 농작물을 권장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도로, 식수, 관개, 통신 등), 지역간 분배와 교역 개선에 집중할 것임

52. 어업과 임업 분야 정책 방향은 지역 사회 복지 향상, 접근성과 지속성 향상, 지원 인프라 증대에 주안점을 둠

어업분야에서는 해안지역사회의 경제 개선, 소규모 수산 기업의 강화, 지속적인 양식업 강화, 항만 및 부화장 등의 수산업 인프라 향상, 산업과 연구기관의 연계 강화, 공해(high seas) 개발과 생명 공학적 어업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함. 임업은 지역사회가 자원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림 관리를 향상하고, 천연산림을 최대한 활동하며 산업적 임업자원 단지 및 비수목 (non timber) 산림 생산물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함

53. 천연 자원과 환경 관리 개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관리 촉진, 지역사회 복지 향상,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환경복지 프레임워크, 천연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과 손상의 통제 범위안에서 임자원 활용 강화, 수자원 관리 및 개발, 석유/가스와 광물자원의 개발을 포함함

54. 빈곤층을 위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개발 이니셔티브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특히 자바와 발리 바깥의 가장 빈곤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와 관련, 상품시장 및 도시 농촌 지역의 분야간 연계 향상, 농촌 인프라 개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역 자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집중할 것임. 정부는 인가/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덜 개발된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일련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음

55. 사회분야에서의 핵심적 도전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장애물에 대처하는 것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관련, 2004년 인도네시아는 삶의 질에 있어서 172국가중 111위를 차지하였음. 이 지표는 문맹률, 수명, 인구 1인당 수입 등 삶의 질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변수들의 조합으로 측정됨. 이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뿐 아니라 측정 프로그램에도 표본을 제공함. 구체적으로는

① 교육 분야 : 중학교, 고등학교의 높은 자퇴율이 해결되어야 함

13세에서 15세까지 5명중 한명 꼴의 아동이 학교에서 자퇴하고, 1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의 절반만이 고등학교로 진학함. 자퇴율은 빈곤층, 농촌 지역의 아동, 그리고 여아들에서 높게 나타남. 빈곤가정의 아동을 겨냥한 장학 프로그램이 아동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음

② 1990년대 중반 이래 교육의 질적 향상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 수준이 이웃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짐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이 교육수준의 향상에 핵심적인 제약요인임. 낮은 급료에 따른 교사 부재도 교육수준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임. 재정문제는 예산자원의 제한과 지역자치로 인해서 발생됨. 중앙과 지역 정부간에 불확실한 재정 기능과 책임이 해결되지 않았음. 지역정부의 지도하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최소 교육수준의 실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공유하는 국가 예산의 20% 정도로 국가 교육예산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제한적인 자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의 기금을 제외하고 국가예산의 6.6%밖에 교육에 분배하고 있지 않음

③ 의료 분야. 다양한 의료 지수들이 국민의 의료상태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완만한 진행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높은 영아 사망률, 산모사망률, 아동의 영양 실조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전염병 및 심장병, 혈액질환, 당뇨와 같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공공보건 위험이 증가추세임. 공공 보건서비스 전달은 지역수준에 비교해서 열악함. 숙련된 의료종사자들이 부족함. 의료서비스 전달은 농촌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등 불평등한 것으로 보임. 공공 보건 분야의 재정부족은 열악한 서비스 전달과 의료진부족의 주된 원인임. 의료에 대한 총지출은 GDP의 2.2%로 WHO 권고인 5%에 못 미치고 있음

④ 가족 및 공동체 서비스

삶의 질 향상은 가족계획과 생신보건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함. 경제 위기 이후 가족계획 프로그램 및 생식보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감소됨. 특히 남성들은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남성들의 참여는 저조함. 지역에서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의 취약성이 목표대상 인구의 인식 감소의 한 가지 요인임. 또한, 이는 경제위기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감소와 불명확한 정책 방향의 결과이기도 함

56. 사회분야 중기개발전략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 영역(교육, 의료, 가족서비스)에 초점을 둠

교육에서 주요 우선순위는 아동들이 초기 9년의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증대하는 것임. 보건분야에서 우선순위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 접근성 향상, 전문적 의료진 수의 증대와 의료장비 구매, 아동, 유아, 산모 등 취약한 그룹과 전염성 질병(말라이아 뎅기열, 폐렴, HIV/ADIS)을 위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역량 확대를 포함함. 가족 서비스에서 우선순위는 가족계획, 여성생식보건, 유아/아동 보건 및 개발, 경제사회 정책 및 청소년 정책에서 성별의 주류화 노력을 포함함

57. 교육 분야는 중기 예산지출 증대의 주요 수혜분야임

전략 우선순위는 모든 아동들에게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재정구조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임. 재정구조는 운영 비용, 학생들의 장학금, 도서 구매 등의 기금마련을 위한 특별 보조금(block grant)을 포함함.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언제나 가장 빈곤한 가정(특히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의 아동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아동들의 초등교육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극빈 가정에 직접적으로 교육상품권(voucher)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모두를 위한 무료교육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른 그룹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특별 보조금은 중, 고등학교에도 제공될 것임. 다른 재정프로그램은 새로운 학교, 교사훈련의 숫자 증대, 도서관을 위한 자원 증대를 포함함. 또한 공적 분야와 민간분야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교육서비스 질을 확장하고 증대하는 것임

58. 보건분야는 중기의 추가적인 예산지출의 또 다른 주요 수혜분야임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는 빈곤가정들의 더 나은 의료혜택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취약한 그룹을 겨냥한 공적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향상임. 이는 공공 병원과 의료센터를 통해서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함. 추가적인 자원은 유아, 면역 프로그램, 취약 그룹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산모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함. 또한 병원침대와 의료진의 숫자 증가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것임. 현재, 100,000명당 3.5개의 의료센터, 61개의 병원 침대가 있고, 인구 각 100,000명당 7.7명의 새로운 공공 의사들, 2.7명의 치과의사, 3명의 의료전문가가 있음. 이러한 비율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낮음

59. 중기 개발전략은 가족과 공동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가족계획은 1998년 경제위기와 이후의 자금 위기의 희생양이 되었음. 경제위기는 가족계획, 여성 생식보건 및 다른 가족 공동체 서비스관련 초기의 성과를 침식하였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금을 개선하며, 추가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청소년 및 젠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전략의 초점이 있음

Ⅴ. 중기 경제적 전망

60. 경제성장은 고용성장과 빈곤감소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임

정책과 제도 개혁의 효과적 시행에 기반하고, 최근의 세계경제 상승세를 보았을 때, 경제성장이 2004년 5% 측정치에서 2005년에는 5.5%, 2009년에는 7.6%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음. 이것은 향후 5년간 평균 6.6%의 성장이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회복기 동안의 평균 4.3%에서 상승된 것임. 거시경제 분야에서 경제성장은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임. 비석유/가스 산업분야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뒤따를 것임. 농업 성장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5년간 지난 회복기동안의 평균 3%에서 상승한 평균 3.5%의 성장이 기대됨

61. 투자는 경제성장률에서 대량의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거시적 경제안정과 함께 투자환경의 개선과 인프라 지출 증가로 인해 2005년과 2006년에 투자 성장이 가속화되어 그 이후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됨. 결과적으로 향후 5년간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62. 향후 5년간 수출이 개선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과 같은 전통적 수출 분야는 2001년 이후로 지난 10년간의 경쟁력 저하(새로운 투자 부족, 노동비용 증가, 다국간 섬유협정(MFA)의 시행으로 인한 의류산업의 세계적 통합)로 인해서 분투해 왔음. 그러나 전자제품, 장비 기계류, 화장품, 자원에 기반한 소모품 (팜오일, 냉동해산물) 등 다른 생산품은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 향후 5년간, 비전통적 수출분야 성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함.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은 중국 경제와 함께 성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전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출이 매해 평균 7.2%로 성장할 것이 기대됨

63. 고용성장이 2005년 이후에 개선되고 빈곤율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복지도 향상될 것이라 예상됨

고용회복은 통상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몇 개월 이후에 뒤따라옴. 2006년에 고용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됨. 산업분야와 서비스 분야는 고용성장을 선도하며 중기 기간 동안 3%에서 4%에 이르는 고용창출을 보일 것임. 농업분야의 고용도 절대적인 숫자로 증가하였으나 많은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비농업분야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음에 따라 성장은 감소할 것임. 결과적으로 전체 고용에서 농업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농업고용이 경제위기 이후에 증가되었던 경향을 반전시킬 것임. 전체적으로 2/3의 새로운 직업이 비농업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됨.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2004년의 약 10%에서 2009년에 5.1%로 감소할 것임.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에 발맞추어 빈곤율도 2009년에는 17%에서 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Table 1
MACRO ECONOMIC DESCRIPTION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Quality of Growth / Even Distribution										
Open Unemployment										
Total(million of people)	5.8	8.0	9.1	9.5	9.9	9.9	9.4	8.5	7.3	5.7
% of labor force	6.1	8.1	9.1	9.5	9.7	9.5	8.9	7.9	6.6	5.1
Total Poor Population										
Total(million of people)	38.7	37.8	28.4	37.3	36.1	–	–	–	–	18.8
% of labor force	19.1	18.4	18.2	17.4	16.6	–	–	–	–	8.2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GDP Per Capita	4.9	3.8	4.3	4.5	5.0	5.5	6.1	6.7	7.2	7.6
on Constant Price 2000(000Rp)	5,919	6,144	6,368	6,265	7,626	7,946	8,333	8,791	9,317	9,914
Economic Stability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9.4	12.5	10.0	5.1	6.4	7.0	5.5	5.0	4.0	3.0
Nominal Exchange Rate(Rp/US$)	8,475	10,241	9,375	8,578	8,928	8,900	8,800	8,800	8,700	8,700
Changes on Real Rupiah Rate(%)	7.8	11.0	−15.5	−10.9	0.1	−4.5	−4.3	−2.8	−2.9	−0.9
Balance of Payments										
On going transaction/GDP(%)	4.8	4.2	3.9	3.0	2.6	1.6	0.5	0.1	−0.2	−0.6
Non & Oil Gas Export Growth(%)	22.8	−11.0	3.4	3.7	11.3	5.5	6.5	7.5	8.1	8.7
Non & Oil Gas Import Growth(%)	29.1	−15.8	0.1	9.4	15.9	11.4	8.2	8.9	10.3	119
Foreign Exchange Reserve(US$ billion)	29.4	28.0	32.0	36.3	36.3	36.8	36.0	35.6	35.2	35.9
State Finance										
Primary Balance of APBN(state budget)/GDP(%)	2.5	2.8	3.3	1.8	1.6	1.8	1.7	1.9	1.9	2.0
Surplus/Deficit of APBN/GDP(%)	−1.6	−2.4	−1.4	−1.4	−1.1	−0.7	−1.6	−0.3	−0.0	0.3
Tax Revenue/GDP(%)	11.8	11.0	11.1	11.9	12.1	11.6	11.6	11.9	12.6	13.6
Government Debt Stock/GDP(%)	83.5	74.6	65.1	58.3	53.9	48.0	43.9	39.5	35.4	31.8
Foreign Debt	36.9	35.8	31.5	28.3	25.3	21.6	19.3	16.7	14.4	12.6
Domestic Debt	46.7	38.8	33.6	30.0	28.6	26.3	24.6	22.8	21.0	19.2

Notes:*)For the year 2000, use the old series GDP, while the growths of years–after use new series of GDP

Table 2
ECONOMIC STRUCTURE ESTIMATION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Growth Expenditure Side(%)*)										
Economic Growth	4.9	3.8	4.3	4.5	5.0	5.5	6.1	6.7	7.2	7.6
Consumption	2.0	3.9	4.7	4.5	5.1	4.1	5.2	5.0	5.8	6.3
Society	1.6	3.5	3.8	3.9	5.1	4.3	4.5	4.8	5.0	5.3
Government	6.5	7.6	13.0	10.0	5.7	2.6	10.5	6.4	12.1	12.7
Investment	16.7	6.5	2.2	1.9	7.2	14.6	17.8	16.3	14.3	12.8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port	26.5	0.6	-1.0	6.6	9.3	5.7	6.0	6.4	7.4	10.1
Import	25.9	4.2	-4.0	2.8	17.4	10.3	8.6	10.2	10.8	11.0
GDP Growth Production Side(%)										
Agricuture	1.9	4.1	2.8	3.1	3.1	3.2	3.4	3.6	3.6	3.8
Manufacturing Industry	6.0	3.3	5.9	5.0	5.6	6.1	6.9	7.8	8.6	9.5
Non Oil & Gas	7.0	4.9	6.4	5.4	6.5	6.8	7.7	8.7	9.4	10.2
Others	5.3	4.0	3.9	4.6	5.2	5.8	6.3	6.9	7.4	7.6
GDP Distribution(%)										
Agriculture	15.6	15.6	15.7	15.0	14.7	14.4	14.0	13.5	13.1	12.7
Manufacturing Industry	27.7	30.1	30.7	30.6	30.6	31.4	32.0	32.1	32.5	33.0
Non Oil & Gas	23.8	26.3	27.0	26.8	27.3	27.8	28.5	28.9	29.6	30.4
Others	56.7	54.3	53.7	54.4	54.6	54.2	54.0	54.4	54.5	54.3
Labor										
Employment Opportunity(million of people)	89.8	90.8	91.6	90.8	92.3	94.2	96.7	99.7	103.0	106.6
Agriculture	40.5	39.7	40.6	42.0	43.0	43.8	44.4	44.9	45.4	45.7
Distribution(%)	45.1	43.8	44.3	46.3	46.6	46.5	45.9	45.1	44.1	42.9
Manufacturing Industry	11.7	12.1	12.1	10.9	11.0	11.1	11.5	12.0	12.7	13.4
Distribution(%)	13.0	13.3	13.2	12.0	11.9	11.8	11.9	12.0	12.3	12.6
Others	37.6	39.0	38.9	37.9	38.3	39.3	40.8	42.7	44.9	47.4
Distribution(%)	41.9	42.9	42.4	41.7	41.5	41.7	42.2	42.9	43.6	44.5
Open Unemployment(%)										
Total(million of people)	5.8	8.0	9.1	9.5	9.9	9.9	9.4	8.5	7.3	5.7
% of labor force	6.1	8.1	9.1	9.5	9.7	9.5	8.9	7.9	6.6	5.1

Notes:*) For the year 2000, use the old series of GDP, while the growths of years-after use new series of GDP

Table 3
BALANCE OF PAYMENT ESTIMATION (US$ BILLON)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port	**65.4**	**57.4**	**59.2**	**63.3**	**73.0**	**76.0**	**75.4**	**79.3**	**84.4**	**90.4**
Oil & Gas	15.1	12.6	12.9	15.2	19.6	19.7	15.3	14.8	14.6	14.6
Non Oil & Gas	50.3	44.8	46.3	48.0	53.4	56.4	60.0	64.5	69.8	75.8
(Growth)	22.8	-11.0	3.4	3.7	11.3	5.5	6.5	7.5	8.1	8.7
Import	**-40.4**	**-34. 7**	**-35.7**	**-39.5**	**-48.3**	**-52.2**	**-54.4**	**-59.3**	**-65.2**	**-72.6**
Oil & Gas	-6.0	-5.7	-6.7	-7.8	-11.5	-11.3	-10.1	-11.0	-12.0	-13.0
Non Oil & Gas	-34.4	-29.0	-29.0	-31.7	-36.8	-41.0	-4.3	-48.2	-53.2	-59.6
(Growth)	29.1	-15.8	0.1	9.4	15.9	11.4	8.2	8.9	10.3	11.9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ervices	**-17.0**	**-15.8**	**-15.7**	**-16.5**	**-17.9**	**-19.1**	**-19.4**	**-19.7**	**-20.0**	**-20.4**
Payment of Government Interest Loan	-3.5	-3.4	-3.1	-2.9	-2.9	-3.1	-3.1	-3.0	-2.9	-2.9
On going Transaction	**8.0**	**6.9**	**7.8**	**7.3**	**6.9**	**4.7**	**1.5**	**0.4**	**-0.9**	**-2.6**
Balance of Capital Flow	**-10.4**	**-10.85**	**-4.7**	**-4.0**	**-2.4**	**-3.1**	**-0.7**	**1.2**	**-3.1**	**4.7**
Govemment	-0.4	-2.2	-3.2	-3.5	-2.8	-2.9	-2.3	-1.9	-1.8	-1.8
Enter Flow	3.9	2.5	2.3	1.8	2.3	3.1	4.0	3.3	3.3	3.3
Exit Flow	-4.3	-4.7	-5.5	-5.3	-5.1	-6.0	-6.3	-5.1	-5.1	-5.0
Private	-10.0	-7.5	-0.9	-0.1	0.5	-0.0	2.1	3.4	5.4	6.6
Foreign Investment Net	-4.6	-3.0	0.1	-0.6	0.1	0.3	0.5	0.8	1.5	1.9
Portfolio	0.0	-0.2	1.2	2.3	2.4	2.4	2.6	2.8	3.0	3.2
Others	-5.4	-4.3	-2.3	-1.8	-2.0	-2.7	-1.0	-0.3	-0.9	1.4
Exceptional Financing	**3.6**	**1.5**	**2.6**	**3.7**	**-1.0**	**-1.1**	**-1.5**	**-2.0**	**-2.5**	**-1.4**
IMF Net	1.1	-1.4	-1.0	0.6	-1.0	-1.1	-1.5	-2.0	-2.5	-1.4
Debt Scheduling	2.5	2.9	3.6	3.1	0.0	0.0	0.0	0.0	0.0	0.0
(Rescheduling)										
Surplus/Deficit	**1.2**	**-2.1**	**5.7**	**6.9**	**3.5**	**0.5**	**-0.7**	**-0.5**	**-0.3**	**0.7**
(Overall Balance)										
Foreign Exchange Reserve	29.4	28.0	32.0	36.3	36.3	36.8	36.0	35.6	35.2	35.9
(In Import Month)	6.1	6.7	7.5	7.8	6.6	6.2	5.9	5.4	5.0	4.6
Net Foreign Exchange Reserve	20.8	20.8	25.8	29.5	30.5	32.1	32.9	34.4	36.6	38.7
Foreign Debt	141.7	135.0	131.3	138.2	134.9	130.9	129.2	128.7	129.7	133.1
Government	74.9	71.4	74.7	81.7	77.8	73.8	70.0	66.1	61.8	58.6
Private	66.8	63.7	56.7	56.6	57.1	57.1	59.2	62.6	67.9	74.5

Table 4
ESTIMATION OF STATE BUDGET OF INCOME AND EXPENDITURE(APBN) (%GDP)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 State Revenue and Grant	**20.7**	**17.9**	**15.8**	**16.4**	**17.4**	**14.5**	**14.9**	**14.9**	**15.3**	**16.1**
1. Tax Revenue	11.8	11.0	11.1	11.9	12.1	11.4	11.6	11.9	12.6	13.6
a. Income Tax	6.1	5.6	5.3	5.9	5.9	5.4	5.5	5.6	6.1	6.6
b.Value Added Tax	3.4	3.3	3.4	3.6	3.8	3.8	3.7	3.9	4.1	4.4
c.Others	2.3	2.1	2.3	2.4	2.4	2.2	2.4	2.5	2.5	2.5
2. Non-Tax Revenue	8.8	6.8	4.7	4.5	5.3	3.1	3.3	2.9	2.6	2.4
a.Oil & Gas	6.4	4.8	3.2	2.9	3.8	1.8	2.0	1.7	1.5	1.3
b.Non OIL & Gas	2.5	2.0	1.5	1.6	1.6	1.3	1.3	1.2	1.2	1.2
B. State Expenditure	**23.9**	**20.2**	**17.2**	**18.1**	**18.6**	**15.2**	**15.5**	**15.2**	**15.3**	15.8
1.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20.3	15.4	12.0	12.4	13.0	10.2	10.1	9.8	9.6	9.6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Medium Term Projec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 Local Expenditure	3.6	4.8	5.2	5.7	5.6	5.0	5.4	5.4	5.7	6.2
C. Primary Balance	**2.5**	**2.8**	**3.3**	**1.8**	**1.6**	**1.8**	**1.7**	**1.9**	**1.9**	**2.0**
D. Surplus/Deficit	**-3.2**	**-2.4**	**-1.4**	**-1.7**	**-1.1**	**-0.7**	**-0.6**	**-0.3**	**-0.0**	**0.3**
E. Financing	**3.2**	**2.4**	**1.4**	**1.7**	**1.1**	**0.7**	**0.6**	**0.3**	**0.0**	**0.3**
1.Domestic	1.9	1.8	1.0	1.5	1.8	1.4	1.1	0.8	0.4	0.1
a. Banking	-0.1	-0.1	-0.3	0.4	1.0	0.3	0.2	0.0	0.0	0.0
b. Non Banking(net)	2.0	1.9	1.3	1.1	0.7	1.1	0.9	0.8	0.4	0.1
- Banking Asset Purchasing	2.0	1.7	1.0	0.9	0.6	0.2	0.1	0.1	0.0	0.0
- Privatization	0.0	0.2	0.4	0.3	0.2	0.1	0.2	0.2	0.1	0.1
- Obligation Issue	0.0	0.0	0.1	0.6	1.0	1.6	1.8	1.9	1.7	1.3
- Basic Payments	0.0	0.0	-0.2	-0.3	-1.0	-0.7	-1.2	-1.3	-1.3	-1.2
- Re-Purchasing	0.0	0.0	0.0	-0.4	-0.0	-0.1	-0.0	-0.1	-0.1	-0.1
2. Foreign	1.2	0.6	0.4	0.1	-0.6	-0.8	-0.5	-0.5	-0.4	-0.4
a. Loan Absorption	2.1	1.5	1.0	1.0	1.3	1.0	1.2	0.9	0.8	0.7
b. Amortization	-0.9	0.9	-0.6	-0.8	-2.0	-1.8	-1.7	-1.4	-1.2	-1.1

Table 5
NEED OF INVESTMENT AND SOURCE OF FINANCING (trillon Rupiah)

Indicator	Realization				Estimation	total	Medium Term Projection					total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09
Need of Investment(trillion Rp)	**297.2**	**375.1**	**380.7**	**405.3**	**430.7**	**1,888.9**	**529.3**	**625.9**	**805.5**	**962.0**	**1,123.4**	**4,073.0**
a. Government	41.6	48.6	55.2	68.2	75.1	288.7	86.9	101.6	113.6	135.2	162.9	600.1
Percentage to GNP(%)3.2	3.0	3.0	3.4	3.4	3.2	3.4	3.6	3.6	3.8	4.1	3.7	
b. Society(include change of stock)	255.5	326.5	325.5	337.1	355.6	1,600.2	442.5	551.3	691.9	826.8	960.5	3,472.9
Percentage to GNP(%)	19.7	20.1	17.7	16.8	16.0	17.8	17.6	19.5	21.7	23.3	24.4	21.7
Source of Financing(trillion Rp)	**297.2**	**375.1**	**380.7**	**405.3**	**430.7**	**1,888.9**	**529.3**	**652.9**	**805.5**	**962.0**	**1,123.4**	**4,073.0**
1. Domestic Saving	351.2	450.2	441.0	465.6	491.7	2,199.7	570.9	666.3	808.8	954.4	1,100.7	4,1010
Percentage to GNP(%)	27.1	27.7	23.9	23.1	22.1	22.4	22.7	23.6	25.5	27.0	28.0	25.6
a. Government	30.3	36.0	16.1	3.4	45.2	131.0	61.7	76.9	97.3	126.2	160.9	523.0
Percentage to GNP(%)	2.3	2.2	0.9	0.2	2.0	1.5	2.4	2.7	3.1	3.5	4.1	3.3
b. Society	320.9	414.2	424.9	462.2	446.5	2,068.7	509.2	589.3	711.5	828.3	939.8	3,578.1
Percentage to GNP(%)	24.7	25.5	23.1	22.9	20.0	23.0	20.2	20.9	22.5	23.4	23.9	22.3
2. Foreign Saving	-54.0	-75.1	-60.4	-60.3	-61.0	-310.7	-41.6	-13.4	-3.3	7.5	22.7	-28.0
Percentage to GNP(%)	-4.2	-4.6	-3.3	-2.9	-2.7	-3.5	-1.6	-0.6	-0.1	0.2	0.5	-0.2
Saving-Investment(S-I)												
Ratio to GNP(%)	4.2	4.6	3.3	2.9	2.7		1.6	0.6	0.1	-0.2	-0.5	
a. Government	-0.9	-0.8	-2.1	-3.2	-1.3		-1.0	-0.9	-0.5	-0.3	-0.1	
b. Society	5.0	5.4	5.4	6.2	4.1		2.7	1.3	0.6	0.0	-0.5	

NGO 소개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가 설립된 지도 만 5년이 지났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세계 각지의 재난현장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NGO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5년 2월 현재 회원단체는 모두 39개이며(회원단체 일람표 참조) 지난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국내의 재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로부터 가입문의를 받고 있다. 기존 구호단체들은 이제 우리도 전문기술을 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해원협이 구심점이 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국내 각종 재난구호 사업을 해 온 단체들은 이제 점점 커져가는 자원봉사 욕구를 해외로 뻗어나가 보려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은 민주화 운동이나 여성, 환경, 소비자운동 등 다른 분야의 시민운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수원국 국민이 돼 본 흔치 않은 경험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 활동하던 유수의 국제적 NGO들이 한국전쟁 후 한국에 와서 구호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들이 지금의 국내 복지단체들에 의해 잘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이들 단체들의 역사나 활동 상황에 대해 제각기 따로 접근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해원협의 회원단체의 역사와 유형을 일괄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개발 NGO의 뿌리를 더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개발 NGO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회원단체의 역사와 유형

1. 한국 개발NGO의 발달배경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후 각국 정부로부터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수많은 원조를 받았다. 동시에 외국의 많은 NGO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였다. 이들 외국NGO중 일부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발 NGO의 한 축이 되었다.

1950년대 세계각지로부터 들어온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은 1952년 외국민간원조단체한국연합회(KAVA :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를 결성하였으며 68년에는 111개 단체에 이르다가 75년 93개, 85년 79개, 93년 60개를 유지하다가 해체하였다.[31]

기독교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해왔던 이들 외원단체들은 현재 대부분이 철수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선교활동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려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확산되었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해외선교, 개발 NGO활동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굳이 개발NGO를 연대별로 정리하자면[32] 제1기는 1970년 이전까지로 주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기. 제2기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자립기 또는 준비기로서 한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는 줄어들어 외원단체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려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들이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제3기는 90년대, 지원기. 경제력 향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성이 확대되고 세계화, 국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의 확산을 배경으로 제3세계에 진출을 꾀하려는 새로운 NGO가 생기고 지원규모도 늘어났으며, 때마침 소말리아, 르완다 내전 등으로 제3세계 빈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개발NGO가 뿌리를 내린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NGO와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협력단)과의 관계 면에서 보자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아프간에 3년간 총 지원금 4,500만불 중 250만불, 이라크의 경우 2003년도 지원금 6천만불 중 약 450만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개발 NGO는 정부가 중요한 기부자가 되었고 협력단을 통해 민간단체의 사업이 시행되고 국제NGO에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도 협력단의 민간협력팀에서 연 100만불 정도 규모로 한해 약 20여개 단체의 해외사업에 50 대 50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이라크 아프간 사업의 경우 자금의 규모면에서 획기적으로 NGO의 활동, 그 중에서도 긴급구호활동을 키우는 배경이 되었다. 90년대 중반기의 개발NGO의 활동이 국민 모금을 통한 개발사업 위주였다면 2001년 이후에는 정부의 기금이 큰 비중이 되어 국제기구 및 수원국 현지NGO 혹은 현지인과의 협력을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전환한 특징이 있다.

31) 서경석, 개발NGO의 실태와 발전방안,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98,p18.
32) 서경석, 전게서, p27.

2. 회원단체의 유형[33]

(1) 수원국에서 지원국 NGO가 된 단체

6.25 이후 외국에서 들어왔던 단체 중 현재 남아 있는 기관들은 대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국내 복지사업을 실시했던 관계로 상당한 규모의 국내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부와 협력하고, 북한사업부는 또 따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가입하여 통일부와, 끝으로 해외사업부는 우리 해원협을 통해 협력단과 활동한다. 따라서 모체가 되는 단체 자체는 조직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미국의 밥 피얼스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1950년 한국에서 처음 설립된 월드비전은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는 국제적 단체가 되었다.

외국의 기금으로 국내지원을 하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지원으로 전환하여, 사랑의 빵, 아동결연,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북한, 제3세계 빈곤 국가를 돕고 있다.

국제조직이니 만큼 긴급구호 현장에서는 본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각국 지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활동지침이나 행동강령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역시 1950년 세계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유니세프의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위해 수많은 사업을 시행해온 UN기구였다. 88년부터 해외지원단체로 전환을 준비하여 93년 UN기구는 완전 철수하고 9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후 다양한 모금사업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158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양, 보건, 식수 및 위생, 교육, 긴급구호 등 유니세프의 어린이 구호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 뉴욕본부를 통해 4천만 불(약 440억원)의 해외

33)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세계빈곤지역의 한국NGO, 2003년 민간단체활동자료집 참조.

사업 실적을 냈으며 그중 약 20%는 한국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수혜국(북한, 몽골,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이디오피아, 중국 등)에 지원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1948년 미국 기독교아동복리회(Christian Children Fund)의 지원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시작해 1986년 한국기관으로 독립하였고 현재 전국 16개 지부와 19개 지역사회복지관, 5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되었다. 1994년 법인명칭을 한국복지재단으로 바꾸고 1995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해외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대한제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하면서 고종황제칙령 47호에 따라 발족한 단체로서 위의 세 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국제적십자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점과 국내사업의 규모 등의 면으로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에 따라 재조직 된 이 단체는 세계의 긴급구호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원조사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 전상자 구휼, 국내외 재난 발생시 구호대책 수립과 재난자 구휼, 의료, 혈액, 간호, 안전사업, 자원봉사 및 청소년적십자 사회교육, 이산가족 재회 주선 및 남북적십자회담 운영, 적십자 이념 및 국제 인도법 보급, 기타 국민 복지 증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1956년 헝가리 민중봉기 때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으로 현금 4,200불과 구호품 32,000불을 보냄으로써 역사적으로 한국의 NGO가 해외원조를 한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2002년 현재 진행 중인 해외사업은 스리랑카,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등지에서 보건, 응급처치 등의 사업과, 몽골 청소년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쇄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캄보디아의 혈액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 재해국이 생기면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2) 우리나라 빈곤퇴치 사업의 해외진출

빈곤퇴치 사업의 주요 사회지표인 인구조절, 보건, 농산물 개량 등의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기생충박멸협회, 결핵협회 등의 성공적인 활동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발전해온 단체였으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에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하여 같은 해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1988년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1996년 한국성문화연구소를 개소하고, 1998년 가족계획과 생식보건국제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제협력의 길을 열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역시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시작해 1966년 기생충질환예방법이 공포되었고, 1971년에는 제1차 전국장내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86년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개칭하고 1996년에 한 · 중기생충협력 5개년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한 · 라오스 기생충 퇴치 5개년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북한 기생충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단체로서 뒤에 다루게 될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농촌운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으로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항에 넣게 되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복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신개혁과 생활혁명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적, 물질적 빈곤을 퇴치함으로써 가나안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3) 종교적 이념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들

1956년 적십자사의 헝가리 원조 이후 우리나라는 별다른 해외 원조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이후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제3세계에 진출했던 초기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 탁아소, 병원 등의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방글라데시에 등록한 **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와 전두환대통령의 케냐 방문 시 지원한 30만 불을 기반으로 케냐 정부에 NGO로 등록한 **제4의 물결** (FORTH WAVES), 그리고 1993년 네팔에 등록한 **호산나**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34]

한편 국내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으로도 몇 손꼽히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 고유의 복음주의, 선교의 일환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3월 방글라데시 구호, 개발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첫 개발NGO라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3년 소말리아 난민구호, 1994 르완다 난민구호 시 현지에서 UNHCR에 NGO로 등록하고 긴급의료봉사와 2년여에 걸친 상설사무소 운영으로 난민 자립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받은 NGO가 되었다. 1995년에는 미국에 현지법인 등록을 하고 북한 신의주 어린이 급식사업을 함으로써 북한돕기 사업에도 진출하였고 젖소보내기, 양계장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해내었다. 1999년 코소보 난민, 터키 지진 참사에 긴급의료봉사단 파견, 2000년 르완다 현지 법인등록, 2001년 아프간 긴급구호 1~8진 파견 등 우리나라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에 한국 자생단체로서 획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선한사람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국내외 불우이웃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하던 중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3세계를 위한 구호와 개발사업을 위해 1999년

34) 이일하, 한국의 개발 NGO활동 현황과 발전방향, 해원협 개발 NGO 실무자 교육 교재, 2004, p.2

설립한 단체이다. 2000년에 중국 경신진병원을 개원하고, 2001년에는 베트남컴퓨터교육센터, 2002년 인도 탈레가온 학교 기공식, 케냐 의료봉사활동 및 아프간, 코트디브와르 난민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는 1983년 설립되어 전통적인 빈민구제, 자선사업 보다는 인문, 사회, 종교, 예술, 문화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 교류와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국가간 상호이해와 관계증진 도모를 주력하고 있다. 알타이문화권과 중앙아시아 및 중국소수민족 연구를 바탕으로 1989년 국내 체류 인도차이나 반도 난민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구호활동을 펼치다가 1991년 쿠르드난민의 의료 진료와 1992년 시베리아, 몽골 단기 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장미회는 1965년 미국 감리교 로빈슨 선교사와 유재춘 목사에 의해 인천기독교사회관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중 서울기독의사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장미회를 설립 1974년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 간질환자 진료를 중점으로 국내순회 진료하였다. 1985년 네팔에도 장미회를 설립, 가우리상카 병원을 건립하였고, 1995년에는 네팔 국립직업기술훈련센터를 위탁받아 미용과, 양재과, 전기과, 컴퓨터과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호산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저개발국에 개발사업, 의료사업, 보건, 교육사업 등 각종 구호사업을 위하여 네팔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사단법인으로 외교부에 등록하였고 현재 네팔에서 어린이 복지센터인 Joy House, 도티 수정병원, 수정영재학교 다댈두라 보건대학, 미얀마의 농업개발, 이집트 글로리기술학교, 케냐, 베트남의 유아교육, 멕시코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1991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시작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1995년에는 한민족통일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대북의료지원사업을 하다가 1996년 **한민족복지재단**으로 재탄생하였다. 1999년 러시아의 고려인을 위한 보건, 의료지원사업을 개시하여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위해 보건의료전문 봉사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육, 보건, 여성,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활동영역 역시 확장하였다. 카불 외곽의 테진에 수로를 건설하고 양계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등 사업 내용도 다양화 하였다. "보건의료전문 NGO"를 목표로 2002년 4억5천원이던 사업실적을 2003년 예산 24억 5천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1년 미국인 래리워드(Larry Word)박사에 의해 창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적인 선교구호단체라는 점에서 월드비전과 성격을 같이 하지만 우리나라 원조를 위해 들어온 단체가 아니라 1989년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계의 기아문제에 관심을 갖고 설립하여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파트너쉽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위 단체와는 달리 국제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본격적인 구호개발단체가 되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2개국이 기아대책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등 7개국에서 사업을 시작였고 1992년 소말리아 내전에 의한 난민촌에 식량을 전달하였고, 우간다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 및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츠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지역,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소말리아.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등에 긴급구호와, 어린이 후원, 수자원개발, 학교건축 등의 교육사업, 농업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무료급식사업, 영적개발사업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본격적인 개발NGO이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경우에도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위 기아대책과 같은 성격의 단체이다. 집 없는 가정을 위해 최저 건축비를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형식과 자원봉사 노역을 통해 집을 지어준다는 이 국제헤비타트운동은 현재 전 세계 83개 나라에서 십만 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사업영역과 목표가 전문화 되었다는 장점을 지닌 이 사업은 자원봉사 영역을 확장하고 모금액의 10%는 다른 나라의 집을 짓는데 지원한다는 정신으로 해외개발사업에 진출하였다.

위대한 종교가 모두 그렇듯이 이웃을 돕는다는 기독교의 박애정신은 불교의 자비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국제이티에스(JTS)**는 법륜스님이 1991년 인도의 불교성지 순례 중 · 캘커타에서 우연히 만난 모녀를 돕지 못한 미안함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국제구호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1993년 캘커타 근교에서 의료캠프를 개설하고 94년에는 초등학교인 수자타 아카데미를 개교하였다. 이후 스리랑카, 북한, 조선족,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에서 느리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역시 불교에 기반을 두고 만물공존과 자비정신을 토대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기아/발병/아동 구제기구를 목표로 1996년 창립하였다. 1997년 네팔에 현지법인 'Nepal Budda Sewa Kendra' 를 설립하고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 을 지어 공동작업장, 의료지원 문맹퇴치, 화장실 건립 등 보건사업 농작물 연구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였다.

한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가톨릭에 기반을 두고 국내외 가난한 이를 도와 영원한 생명운동, 나눔운동 등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로 1988년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한마음한몸운동의 정신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장기기증운동과 참생명학교 등의 생명운동과 함께 해외사업으로 몽골, 중국, 짐바브웨, 콜롬비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의료봉사, 유아원, 청소년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4) 자생 개발NGO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1998년 설립된 단체이다. 베트남 허떠이

성에 한 · 베협력센터를 건립하고 직업훈련과, 농촌개발, 교육, 보건의료 활동을 통해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자르갈란트 지역에 친환경 축산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젖소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지역에서는 빈민아동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국, 이라크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개발NGO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는 1975년 세계대학총장회에서 더 좋은 인류사회를 위해 제창된 보스턴 선언에 따라 1978년 설립되었다. 1997년 연변 자치구 화룡시에 소50마리를 사 준 것으로 시작하여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면양 150마리와 버섯 재배장을 마련해 주는 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의류와 신발 등을 수집하여 인도에 보내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용정시와 카자흐스탄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예정이다.

세계청년봉사단은 젊은이들과 중 · 장년층 전문가, 퇴직자 등을 세계 각국의 NGO 및 비영리기관에 국제자원봉사자로 파견,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9년 사업개시 이래 세계 27개국 60여 개 NGO에 총410여명의 단원을 파견하였고, 인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에 해외 코디네이터를 두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청년봉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중 · 장년층 봉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여행을 통한 NGO봉사체험과 해외시민운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003년 9기 봉사단을 보내기 까지 총 27개국 20여개 단체에서 아동, 노인보호, 지역사회구호, 방역, 조사, 통계, 건축, 수자원, 농기계정비, 농촌개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5) 전문직단체의 해외봉사

개발NGO에 있어 기독교 선교가 큰 축인 것처럼 전문직 단체가 자신들이 가진 전문기술을 가지고 빈곤지역을 돌보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의과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단체로서 주로 턱 부위의 선천적, 후천적 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의 학술단체이다. 1962년 창립하였으나 해외봉사는 1995년 베트남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어 1996년부터 중국 연변대학 내 복지병원과 베트남의 토순구개열(언청이) 환자 무료시술을 해오다가 2001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터시 구강악안면외과 제5병원에서 봉사하였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1993년 한의사 몇 분이 뜻을 모아 네팔에서 처음 의료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카자흐스탄, 사할린, 이디오피아 등지로 점점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값비싼 의료장비 없이 진맥과 침으로 진료가 가능한 한의학의 우수성이 빈곤지역의 의료사정이나 단기의료봉사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현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1997년), 몽골한방병원(2001), 한-캄보디아 한방병원(2001)등을 개원하였다. 개발도상국의료지원과 남북공동의료봉사사업, 세계의료시장 진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활동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

3. 협의회 주요 역할

(1) 역량강화의 구심점

이상으로 해원단체를 유형별로 정리해 봄으로써 해원협 구성원들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위에 적은 외에도 국제봉사기구, 어린이육영회와 같은 단체들이 있고, 새마을중앙회, 아프리카어린이를돕는모임, 덴탈서비스 등의 단체들이 새로 가입을 하게 되어 해외개발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 명실공히 해원협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4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역량 면이나 사업규모 면에서 그리고 운영 철학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큰 단체는 큰 단체대로 막강한 모금력과 인력, 해외 전문 개발 NGO와 연계 등에 의해 늘어가는 업무량에 쫓기면서도 구호현장의 전문성에 비추어 한국의 다른 NGO들과 업무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대를 꾀하고, 작은 단체는 또 작은 대로 기술, 인력, 자금 상의 열세를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해 보려는 욕구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긴급구호 사업과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지진사태, 그리고 용천의 폭발 사고에 이르기 까지 짧은 시간에 세계적 재난지역에 동참해 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막대한 ODA 자금을 가지고 〈Japan Wind〉나 〈Platform〉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일본을 본받아 우리도 경쟁적인 관계를 접고 정보공유와 중복을 피해 한국의 이름으로 전문화해 가야 한다는 인식도 깊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원협과 같은 구심점은 꼭 필요하다.

해원협으로서는 평시에는 월드비전 등의 국제NGO, UNHCR, 혹은 영국의 협의체인 BOND, 호주의 ACFOA 등 국제적인 단체의 오랜 기술이나 프로그램, 강사진 등을 연계하여 실무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무자 교육 외에도 최근 국내에는 유학이나 국제대학원의 설립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자원봉사 운동의 역사도 10여년에 이르면서 이제는 다종다양한 수준의 해외 지원봉사를 원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해원협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여 국내 개발 NGO의 동참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 속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KOICA의 지원 아래 영국의 BOND 등의 강사를 모셔와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평가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워크샵을 하는 한편, 긴급구호 현장과 개발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번역해 공급하고, 현장 경험을 서로 나누며 인적 정보망을 구성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활동을 한다. 실

무자는 교육의 수강자이자 강사이며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먼저 자료를 구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구호활동전문가 스스로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긴급구호 현장은 늘 위험이 따른다. 특히 전쟁 난민이나 정치적 반군이 있는 지역에는 언제나 적이 있고 총기가 있는 지역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현재 해외사업부에 많아야 4~5명, 적게는 1명의 실무자가 모금, 홍보, 현장지휘 등 모든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현재의 사정으로는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신변안전 문제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해원협은 평소에 해원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아직 한국의 NGO는 활동가의 안전을 위해 훈련이나 안전지침 없이 심지어 생명보험조차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N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안전대비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개발사업은 대개 해외선교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주로 이슬람국가에서 활동하다가 현지인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2) 개발NGO의 대외 창구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OECD 가입과 더불어 제3 세계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정부와 학계, 기업 등에서 일어나면서 개발NGO와의 협력에 대한 요구도 일어났다. 해원협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각계의 의견조율이나 정보공유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의와 감시 역할을 할 때에도 회원단체의 힘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도 GNI대비 0.06%에 불과한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관련 정부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고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도 국내 복지사업에 치중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활동분야이며 시장개척과 투자가능지로서의 제3 세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설립된 각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의 개발협력과정의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 학술적으로나 경험학습장으로서 관심이 매우 크다. 이 모든 대외적 관심에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여러모로 부적당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쓰나미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해원협이 창구가 되지 않았다면 정부나 다른 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시간적으로나 인력 면에서 많은 낭비가 있었을 것이다. 해원협은 신속히 관련 정보를 회원단체에 알리는 한편 회원단체의 활동상황을 일일별로 정리하여 정부와 언론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현지 도로가 유실되어 구호물자가 항구에 묶여 있을 때 IOM(국제이주기구)에 연락해 무사히 반다아체의 회원단체 직원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긴급구호 현장의 후발주자라는 열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네트워킹에 주력해서 적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교통정리를 할 주체로서 해원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단체들이 재건복구를 위한 개발사업을 준비해가는 이 시점에서 해원협은 기왕에 마련된 민관협력 채널의 업무 내용이나 성과도 따져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자료 혹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모처럼의 경험이 사장 되지 않고 언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길은 우선 자료 축적과 정보 공유, 그리고 평소의 전문가 훈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NGO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에도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번 쓰나미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 복구지원금 5000만 달러, 대한적십자사의 170억원, 그 외 다른 단체에서도 적지 않은 모금을 통해 모처럼 자금이 많아서 사업비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와중에도, 평상시 긴급구호 전문가의 교육이나, 구호활동의 핵심 요건인 구호물자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번 '쓰나미 특수'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 단체들은 여전히 대비 없이 영세한 NGO로서 다음 재난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긴급구호의 특성과 기존 법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미리 관계요로에 알려 개선하는 일도 해원협의 주요사업이 된다.

4. 맺는 말 – 협력단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과거 세계로부터 받은 빚을 갚아야 한다든가, OECD 가입국가로서 평균 권고안의 약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ODA를 늘려야 한다는 것,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교역량 12위의 산업국가 한국의 할 일 등을 국민과 국회,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요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할 것인가는 정부, 좁게는 협력단과 해원협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일일 것이다.

지난 1월 경제부총리께서 해마다 약 0.01%씩 2009년이 되면 GNI 0.1%에 도달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현을 위해서는 역시 민간단체가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ODA 중에서도 무상원조의 비율을 점차 늘려서 ODA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해원협과 협력단이 한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원협의 현재 행정력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진정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원조를 할 때에는 현재 협력단이 하고 있는 정부 대 정부 간 원조로 하는 방식 외에 NGO와 함께 하는 방식을 찾아서 '얼굴 있는 원조'를 통해 한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협력단이 지어 준 병원에 NGO의 의료진이 파견 된다든지. 협력단이 지어 준 학교에 NGO가 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한국과의 친선도 꾀하며 동시에 우

리 NGO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 대 NGO 사업은 민간협력팀의 약 100만 불 규모의 예산에 가둬 두고 이라크, 아프간 사업처럼 그때 그때 특별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지혜를 불러모으는 방식에서 벗어나 NGO를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우하고 방향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협력단의 NGO 봉사단 파견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한 혁신사례가 된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보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인데 기존의 정부 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업에 드디어 NGO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다각화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NGO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의욕만큼 대규모 봉사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현재 8개 단체에서 33명을 9개 국가에 파견하였고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협력단은 NGO와 협력하여 사업을 다양화한 한편 우리 NGO는 현지 사업소에 훌륭한 수준의 봉사단원을 수급하고 정부와 함께 관리해 봄으로써 행정력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쨌거나 5살박이 해원협은 회원단체와 협력단의 관심 속에 인력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NGO는 속성 상 구성원의 능력이나 관심 사항에 따라 사업효과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확장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원협은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방향 설정을 잘 해나감으로써 협력단의 명실상부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명단

2005년 2월 현재

No	단체명	대표자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1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김범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01-34 제중빌딩 302호	137-063	588-4848	588-0075
2	경희국제의료협력회	정인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병원 정신과	130-701	958-8550	957-1997
3	광성	이완택	서울 강남구 청담동 38-24 천우빌딩 3층	135-100	557-1516	557-1546
4	국제개발협회	이남웅	서울 구로구 개봉3동 349-5호	152-093	2625-9998	2625-9906
5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수산동 301호	138-160	408-9423	448-8780
6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서울 마포구 창전동 5-5 동복이세빌딩 5층	121-880	337-0958	3673-4839
7	굿네이버스	이일하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4층	121-828	338-0144	338-1102
8	글로벌케어	김병수	서울 양천구 목1동 405-33	158-806	2654-7260	2654-7263
9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최선정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66-19	143-223	467-8201	467-1394
10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기택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회관 207호	133-160	468-0085	468-0084
11	대한적십자사	이윤구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100-043	3705-3664	3705-3667
12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호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9 파인빌딩 6층	135-909	2051-2500	2051-0129
13	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양유식	서울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상가 305호	135-865	511-1040	511-1049
14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곽선희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1310-10 사랑의 복지관 10호	135-080	561-2445	566-1450
15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손재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6-26 4층	110-380	741-2274	741-2275
16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수성	서울 강남구 대치동1008-4	135-851	2600-3663	2600-3656
17	새세대육영회	김태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2	138-732	443-1273	443-3841
18	선한사람들	이병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제2교육관 903호	150-010	783-2292	783-2294
19	세계청년봉사단(KOPION)	금창태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 9층	100-151	733-1387	737-1083
20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배근	서울 마포구 창전동 169-2	121-881	336-5242	336-6232
21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강석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3호 IACD	140-240	795-9140	795-9141
22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조정제	서울 종로구 원서동 129-4	110-280	2272-5196	743-5567
23	월드비전	박종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50-010	783-5161(421)	782-0727
2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현승종	서울 종로구 창성동 17-1	110-034	735-2310	738-8504
25	이웃을 돕는 사람들	배 휴	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100-150	3147-2600	779-260
26	장미회	신상철	서울 종로구 부암동 175-1 부원빌딩 301	110-021	394-2325	394-2169
27	정해복지	이충범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4-1 현대리빙텔 301호	465-032	031)795-0066	031)795-8966
28	지구촌공생회	송월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65-5 태원빌딩 7층	138-828	3432-6770	3432-6771
29	지구촌나눔운동	강문규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002호	110-350	747-7044	747-7046
30	태평양 · 아시아협회	김상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번지	135-909	563-4123	563-4126
31	플랜 한국위원회	노영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702호	135-952	3444-2216	3444-2276
32	하나로	이일재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340호	110-320	747-3991	747-3994
33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순형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097번지	157-704	2601-6144	2602-3816
3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정정섭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1번지 기아대책회관	135-100	544-9544(211)	544-3013
35	한국국제봉사기구	하성수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4 경일빌딩 803호	110-550	543-9411	543-9412
36	한국복지재단	김석산	서울 중구 무교동 95 한국복지재단빌딩 1101호	100-170	757-2915	318-5681
37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정근모	서울 중구 신당1동 393-38 대금B/D 5층	100-832	2267-3702(200)	2272-1067
38	한국자유총연맹	권정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1-6	100-392	2248-0993	2252-4166
39	한국제이티에스	유 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137-073	587-8756	587-8998
4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운회	서울 중구 명동 2가 가톨릭회관 4층	100-809	727-2264	776-7879
41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1 에덴빌딩 3층	137-875	3471-9814	3471-9822
42	헬프에이지	조기동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9-3ㅂ	150-033	2631-3212	2631-3215
43	호산나	권식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135-280	501-7074	568-7696
44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사무국	윤현봉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 9층	100-151	3210-1705~6	3210-1707

연구자료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 행	2005년 3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